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명아·구본준·윤상윤

지역법제 연구 14-16-④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명아·구본준·윤상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study of Korean and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연구자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Myoung-Ah

구본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Koo, Bon-Jun

윤상윤(건국대 상경대학 조교수)

Youn, Sang Youn

2014. 10. 2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우리 국민이 관광, 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은 중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안전 및 편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
- 중국 「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국 국민출입국관리법이 폐지되었음.
 - 「출입국관리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관리자 및 가족들의 중국 출입국에 적용되고 있음.
- 중국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사증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상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으나, 사증발급기관이 발급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사증체류기간의 상한을 180일까지로 단축하였으며, 거류증의 최장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편, 거류증 심사

기한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출입국이 잦은 외국인
거류자들의 출입국과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중 경제협력 확대와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에 대한 상세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중 간 자연인의 국경 이동
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체류관리, 국적취득, 난민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중국의 법제와 비교
하고자 함.
-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
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
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사증(Visa)을 필요로 함. 다만,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
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관광·방문 등을 위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

- 국민의 경우 출입국의 자유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범죄나 세금 미납 등과 관련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정지)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허가 받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외교(A-1)부터 방문 취업(H-2)까지 36가지 종류이며,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해야함.
-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되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을 해고하는 등의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그가 가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하여 새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인은 강제퇴거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함.

□ 「난민법」에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따른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국적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국적상실사유와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귀화허가 등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수반취득(미성년 자녀가 부모 또는 모에 수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이 있음.
 - 외국인이 귀화, 국적회복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 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음.
 -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됨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폐지하면서 2013년 7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임.
- 중국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범위는 크게 국민의 출입국(경), 외국인의 출입국(경),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거류의 관리,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경)에 대한 심사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 국민이 출입국(경)을 위해서는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 증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국 국민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출입경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아닌 별도로 절차의 통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함.
 - 중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6가지의 출국 제한사유를 정함.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구법에 비해 사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항구사증을 포함하여 17가지 사증으로 그 종류를 확대함.
- 사증발급의 면제는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한 거류증(거주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중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종래 24시간까지 무사증 경유를 허용하였으나 국무원 승인을 받은 주요 도시(현재 9개 도시)는 72시간무사증경유정책을 채택하였고 앞으로 다른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심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은 체류 및 거류를 18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장기거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의 목적이 크다고 봄. 180일을 초과하여 거류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거류증으로 전환하여 발급받아야 함.
- 체류, 거류에 구분없이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서 주숙등기를 하도록 하는 주숙등기제도를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존치시키고 있음. 주숙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함.

- 거류증은 취업류 거류증과 비취업류 거류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중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류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함. 특히 중국 내 불법취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개정 출입국관리법에는 중국관 그린카드 제도(영구거류제도)를 법제화하였음. 국제적 인재,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구거류제도를 설립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영구거류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음.

□ 중국은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국내법으로서의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난민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관한 처리를 하고 있음.
- 2014년 7월 2일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난민은 138명이고 410명이 난민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임. 탈북자의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유엔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국적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 모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음.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중국국적은 취득되지 않아 복수국적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

- 가족법상 인지제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등을 통해 실무상 인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는 국적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영구거류증을 포함하고 있어 영구거류증의 취득이 전제조건이 되며, 영구거류증 취득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에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국내적 전속관할권으로 인정되는 영역(예컨대 사증발급, 입국심사)에서부터 타 법과의 연계성이 강한 영역(예컨대 국적법, 난민법)까지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 방법으로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체류교민들의 현지 법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우리 정부의 한국 체류 중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주제어 : 국민, 외국인, 국적, 출입국, 외국인의 체류관리, 영주권, 영주권 전치주의, 난민인정, 불법체류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China is a country where Korean nationals travel most for the various purposes of tourism, business, study and in this context,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管理法) is the law which has the biggest impact on an entry to China, safe stay and convenience.
-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July 1, 2013, and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ntrol of the Entry and Exit of Aliens* and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ntrol of the Entry and Exit of Citizens* has been repealed.
-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as a sub-rule of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ffective from September 1, 2013 and is being applied to the immigration of managers and family members of the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to China.

-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 specify six kinds of situations in which the issue of visa is not permitted, but legal clarity is not secured because it is not required to mention the regulatory reasons in case of denied visa by the concerned authority.
- In addition, the upper limit of the visa period of stay was reduced by up to 180 days, while the longest period of validity of five years residence permit, residence permit review period of 15 days are prescribed in the Immigration, having a profound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and immigration.
-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deriv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ersonnel and to scrutinize Immigration Act through a detaile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nsure the legal clarity and smooth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nations

II. Main Contents

- This report covers details of *Immigration Act, Nationality Act, Refugee Act* concerning immigration control of nationals and

foreigners, management of foreigners' legal residence, nationality acquisition and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mmigration Act stipulates matters regarding safer border control through immigration control of nationals and foreigners, and management of foreigner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Possession of a valid passport is required of both foreigners and nationals who wish to enter into or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For foreigners, the type of visa mus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ntry. However, a foreigner may enter without a visa for tourism or visitation if he/she is a national of: (i) a country that has signed a Visa Waiver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us becomes a subject of visa exemption, or (ii) a country that is granted visa-free entry permission by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principle, Korean nationals have the right to enter or leave the country, and foreigners have the right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hibit the departure of a person who is deemed inappropriate to leave the country for pending criminal trial/investigation or tax default.

- Foreigners are granted rights to activities permitted under the status of stay, and may stay as long as their granted period of stay. Eligible applicants and scope of activities are specified by status type (36 in total), ranging from Diplomacy (A-1) to Working Visit (H-2).
- If a foreigner intends to be employ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erson shall obtain the status of stay where employment is allowed. A foreigner who has obtained such status of stay shall be employed only at the designated place of work.
- No one shall employ, recommend, or place a person in jobs without the person being permitted to work under his/her status of stay. Those who have hired a foreigner eligible for employment shall report to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if any circumstantial changes occur such as dismissal no later than 15 days from the date he/she gains awareness thereof.
- If a foreigner intends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90 days from the date of entry, the foreigner shall register as an alien with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When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corresponding to other status of stay than the granted one, the person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in advance, in order to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parallel with those allowed under the granted status of stay. In principle, a foreigner must leave the Republic of Korea and obtain a newly issued visa, if he/she no longer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under the granted status of stay but instead commence activities permitted by other status of stay. However, those who find themselves in the aforementioned case and intend to change their status of stay accordingly, can make such applications without leaving the country.

- Violation of *Immigration Act*, i.e. illegal entry, failure to maintain a lawful status and/or engaging in unauthorized employment after admission, provides ground for deportation. Immigration officers may investigate foreigners that are suspected of being subject for deportation. An immigration officer may detain a foreigner, if the person presents concern to flee.
- A case on an immigration offender may not be prosecuted without an accusation that is filed by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In a case involving an immigration offense for which no sentence of imprisonment will be imposed but penalties and fines,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may give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ffender to pay a penalty

equivalent to fine. Criminal procedures are not required in such cases. Under the protec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n immigration offender shall not be penalized for the same case if he/she has paid the penalty as notified.

Refugee Act is intended to stipulate matters on: (i)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pursuant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i)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and (iii)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 humanitarian status holder, and refugee status applicant. The Act also govern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fugee Committee and the operation of Refugee Support Center.

- An alien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wishes to attain refugee status may apply for refugee status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to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 The Minister of Justice has the authority to make a decision whether to recognize the applicant as a refugee. The Minister may, if deemed necessary, delegate such authority to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Nationality Act prescribes: (i) requirements for becoming a Korean national, (ii) requirements for foreigners to obtain

Korean nationality, (iii) procedures for multiple nationals to choose nationality, (iv) grounds for loss of Korean nationality, (v) administration on persons who have lost Korean nationality, (vi) adjudication of a person's nationality where it is unclear whether the person has acquired or is holding Korean nationality, and (vii) revocation of permissions, i.e. a person's naturalization.

-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right of blood) serves as a general rule, and the principle of *jus soli* (right of the soil) is only complementary. Children may automatically be Korean nationals at birth if his/her father or mother is a Korean national. *Jus soli* rule can be applied solely in those cases when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unknown or stateless.
- There are several paths to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for foreigners. Korean nationality can be granted by acknowledgment (where a person is born to a non-marital couple with one party being Korean national and the other foreigner), or through naturalization (subcategorized into general, summary, and special naturalization). Foreigners may also obtain Korean nationality through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or concomitant naturalization (where a minor child of a foreigner shall acquire Korean nationality at the time the Minister of Justice grants naturalization to his/her father if the child has concurrently applied for naturalization beforehand).

- A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or reinstatement shall renounce his/her foreign nationality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person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ose who have failed to do so before the specified period expires shall lose Korean nationality.
 - A person who acquired multiple nationalities at the time of birth shall choose a nationality before fully turning 22 years of age.
 - A Korean national who has voluntarily acquired a foreign nationality shall lose his/her Korean nationality at the time of acquiring a foreign nationality.
- In China,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enforced since 1 July 2013, with the two existing Foreign Immigration Act and National Immigration Act repealed.
-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 a kind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enacted on the basis of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ffective from September 1, 2013, but it applied only to foreigners.

□ Regulation range of *the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 may be summarized as screening for immigration of the nationals, foreign immigration, foreign residence, means of transportation.

- Chinese nationals must be in possession of a passport or other travel certificate to the immigration.
- Chinese citizens are also required to obtain a separate pass, not a regular passport, through the procedure in order to access the environment in Hong Kong, Macao and Taiwan.
- Chinese citizens hav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but six reasons for limiting the freedom exist.
- The law and the new ordinance of immigration compared to the old law subdivide the type of visa and expand its kind with 17 kinds of visa, including the port visa.
- The Law is strictly separate foreigner's stay and residence based on the 180 days. The reason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sidence and stay is to enhance the supervision of a long-term resident foreigners. If the residence in excess of the 180 days must obtain residence permit issued by conversion of visa.

- Current residence permit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ne for employment and the other for non-employment. It is also required to obtain a residence permit for employment in order to work in China.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oversight and sanctions for illegal employment in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 The law stipulates Chinese version of Green Card Scheme (Permanent Residence program). It's purpose is to accept a direct foreign investment, advanced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talented personnels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obtain permanent residence permit.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has acquired a permanent residence permit is not much yet because the acquisition conditions are very demanding.
- Although Chin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 national law on refugees does not enacted separately.
- But, according to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ers applying for refugee may be in possession of a temporary identity card issued by the public security organs during the period of stay to check the status of refugees in China precincts, and if foreign refugee status is identified by the public security organs, he or she is able to stay in China for residence by

possession of a refugee identity card, which substantially admit the entity of refugees.

- In practice, the treatment of refugees is conduct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stipulating Jus san guinis(right of blood) and complementary Jus soli(right of the soil). However, China has rejected the multiple nationalities thoroughly. For example, a person whose both parents and one are Chinese nationals and residing abroad, yet, if you hold a foreign nationality at the same your birth can not acquire citizenship.
- The family law system does not stipulate acknowledgement but in practice nationality can be granted through lawsuit of Father-son relationship confirming presence or absence. However, the Nationality doesn't have provision on Citizenship procedures by the cognitive process.
- The acquisition of a permanent residency is a prerequisite to acquiring the Chinese citizenship because permanent residency is included amo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hinese citizenship. After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one can apply for naturalization.

III. Expectation

-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related legis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y introducing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from the issues of 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 realms (eg, visa, immigration) to the scoops of strong linkage to other nations (eg, nationality, refugee law).

-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Korea government's retention management policies relating to the chinese staying in Korea as well a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local laws of immigrants among Korean nationals in china.

➤ Key Words : nationals, foreigners, nationality, Immigration, management of foreigners' legal residence, Permanent residency(Green Card), a prerequisite for a permanent residency,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llegal residenc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13
제 1 장 서 론	31
제 1 절 연구의 목적	3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35
제 1 절 총 설	35
제 2 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36
제 3 절 국민의 출입국	39
I. 국민의 출국	39
II. 국민의 출국금지	41
III. 국민의 입국	46
제 4 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48
I. 외국인의 입국	48
II. 외국인의 상륙	64
제 5 절 외국인의 체류	70
I. 외국인의 체류자격	71
II. 외국인의 취업	131
III. 외국인 고용의 제한	133

IV.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134
V. 외국인의 체류허가	135
제 6 절 외국인의 출국	145
I. 외국인의 출국심사	145
II. 외국인의 출국정지	147
III. 재입국허가	147
제 7 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49
I. 외국인의 등록	149
II. 사회통합프로그램	153
제 8 절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155
I. 출입국사범	155
II. 조 사	156
III. 보 호	156
IV. 강제퇴거명령	157
V. 출국명령	159
VI. 출국권고	160
VII. 과태료	161
VIII. 통고처분	163
IX. 고 발	164
제 9 절 난민인정제도 (난민법)	165
I. 개 요	165
II.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166
III.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176
IV.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177
V. 기타 사항	180

제10절 국적제도 (국적법)	182
I. 개 요	182
II.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83
III.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84
IV.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186
V.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193
VI.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94
VII. 국적선택제도	195
VIII. 국적판정제도	200
IX. 국적상실	202
X. 국적취득 현황 및 수수료	205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207
제 1 절 총 설	207
제 2 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208
I. 입법목적 및 개정배경	208
II. 중국의 출입국관리 주요 규제기관	210
제 3 절 국민의 출입국	213
I. 국민의 출국	213
II. 국민의 출국금지	223
제 4 절 외국인 of 출입국 및 상륙	224
I. 외국인의 입국	224
II. 사 증	226
III.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248
IV.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	256

V.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 심사	258
제 5 절 외국인 체류 및 거류	268
I. 개 요	268
II. 주숙등기와 체류증	271
III. 거류증	275
IV. 외국인의 취업과 취업거류증	292
V. 체류증·거류증의 휴대의무 및 검사에 응할 의무	296
VI. 외국인 진입제한구역	297
VII. 영구거류	299
제 6 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05
I.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강제조치	305
II. 행정처벌	317
제 7 절 국적제도	327
I. 출입국관리와 국적 제도	327
II. 국적법	327
III. 국적법 관련 규정	329
IV. 영주권의 취득	332
V. 국적의 회복	334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335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335
1. 출입국관리기관의 조직과 구성	335
2. 국민의 출국금지	336
3.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337
4. 사증과 거류증	338

5. 외국인 취업	339
6. 영주자격	340
제 2 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359
1. 한국과 중국의 국적법 관련 규정 비교	359
2. 한국과 중국의 난민법 관련 규정 비교	366
제 3 절 시사점	371
1. 행정강제조치의 규범화와 인권존중	371
2.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간 이동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 및 외국인고용 정책	381
3. 난민 보호	384
제 5 장 결 론	387
참 고 문 헌	389
별 첨	393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393
별첨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41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국은 우리 국민이 관광, 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중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속도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그 인적 교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으로의 입국을 통하여 중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광·유학·전문가교류 등 여러 형태의 인적 교류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 및 체류 안전 및 편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중국의 「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이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은 2012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동법 시행을 통하여 「국민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과 「외국인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이 폐지되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중국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출입국관리제도에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그 하위규정으로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를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관리자와 그 가족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가 함께 적용된다.

다만, 중국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사증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상황에 대하여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사증발급기관이 발급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사증체류기간의 상한을 180일까지로 단축하였으며, 거류증의 최장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편, 거류증 심사기한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출입

국이 잦은 외국인거류자들의 출입국과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 경제협력 확대와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중 간 자연인의 국경 이동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해당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출입국 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법제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중FTA 서비스분야 중 자연인 이동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하며, 주요 분석 대상은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관련 법제 연구로 한다.

제1장에서는 서론을, 제2장에서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어 제5장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변화를 통

한 향후 협력강화와 인력이동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관련 법제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시하도록 한다.

즉,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기본법인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管理法)」과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는 외에도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등의 관련 법규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법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실무 및 법제도의 정확한 분석과 소개를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무부, 대학기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부연구위원은 제1장 서론과 제3장 중국 국적법 내용, 제4장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집필을 담당하였으며, 법무부의 구본준 사무관이 제2장 한국 출입국관리제도를, 건국대학교의 윤상운 조교수는 제3장 중국 출입국관리제도의 소개와 관련 법제의 분석을 담당하였다. 보고서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연구진 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차 검토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및 법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서 각 지역별 법제 전문가를 워크숍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중간 Review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적인 비교법제연구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법령분석과 실태조사,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워크숍 개최 내용>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주제	발표자
한·중 양국의 외국인등록 제도 현황 및 쟁점	윤성혜(원광대학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한·중 양국의 국적법 관계	이기흠(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변호사)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한·중 협력 방안	장은정(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강사)
한·중 양국의 영주권 제도 현황 및 쟁점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주제	토론자
종합토론	차규근(법무법인공존 변호사)
	이재형(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구본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윤상윤(건국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제 1 절 총 설

출입국관리행정의 고전적 의미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관리 중심의 전형적인 규제위주의 국가행정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최근에는 과거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행정이 중요시되고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개념이 새롭게 부각된 종합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행정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환경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민국가나 비이민국가를 막론하고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 정책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출입국관리업무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공항만을 통해 출입국하는 내외국인 관리를 위한 출입국심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자, 불법입국 알선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사범처리, 보호 및 강제퇴거 등 국경관리 측면에서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영주권자·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귀화자 등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업무, 난민신청자의

증가에 따른 난민지원 업무, 새로운 국민으로 편입하는 귀화자의 증가에 따른 국적업무 등 새로운 영역의 업무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제 2 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국적취득, 난민인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다.

그 중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법 제1조).

난민의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등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난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 특례 등 일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 향후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장 총칙에 이 법의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조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로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하며,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입국”이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영공 또는 영해 내에 입국심사장이 없고 영토 내 공·항만에서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입국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오는 시점에 입국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이 입국하는 때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이 여권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신분증명서나 출입국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입국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국가가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사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출국”이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는 국민의 경우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외국인의 출국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여 외국인의 출국제한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출국금지’ 대신 잠정적 의미의 ‘출국정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는 국적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증명서 등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중전의 호적부나 호적등·초본) 등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국적법은 제11조의2 제1항에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도 국민에 해당된다.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그의 국적국과 우리나라와 체결된 별도 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국민이며,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지 아니한 무국적자는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입국관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국관리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체류관리”란 출입국관리법이 국민의 체류관리가 아닌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류”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외국인의 영구적 거주(permanent residence)와 일시적 거주(temporary reside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시적 거주에는 장기 체류(long-term stay) 및 단기 체류(short-term stay)가 포함된다. 영구적 거

주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체류를 말하며 그 외의 체류는 일시적 체류로 분류하고,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의 구분은 외국인등록 요건인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에 관한 정의는 우리나라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다가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 3 절 국민의 출입국

I. 국민의 출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¹⁾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라 함은 전국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를 통칭하는 것이나,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심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국에 소재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를 의미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종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4년 3월 18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 섰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

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기기에 의한 출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i)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ii) 법무부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iii) 출

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난민·사회통합 업무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란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바꾸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iv)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 v)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자동출입국심사 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마친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II. 국민의 출국금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고 할 것이나,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법률로써 일정한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의 출국금지에 관하여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벌금 1천만원 이상이나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³⁾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4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 기관의 장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따라서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으로 볼 때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하여야 한다.

◆ 출국금지 관련 판례

출국금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판시사항】

- [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령의 출국금지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나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출국을 금지해야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로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③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에 대한 출국의 제한으로는 「여권법」의 여권 등의 반납 및 직접 회수,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여권의 효력 상실 및 사용 제한 등(여권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과 「병역법」의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제70조) 등이 있다.

Ⅲ. 국민의 입국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의 출국사실 등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조)

이는 국민에 대한 정확한 출입국기록 유지 등을 위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통해 타인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 그 자체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여권법에 의한 실체적 제약,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적 제약이 정해져 있지만,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분 확인 등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적 제약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권리에 대하여 실체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절차적 제약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국민의 여권에 입국 심사인을 날인하여 행하며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입국심사인 날인 없이 입국심사로 갈음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출입국자의 여권에 출국심사인과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있으며,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출입국심사의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은 물론 출국심사인과 입국심사인 날인도 생략하고 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 [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제 4 절 외국인입국의 입국 및 상륙

I.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이라 함은 “외국인의 신체가 대한민국의 국가영역인 영토·영공·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륙허가는 승무원이나 난민,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입국심사시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규정으로는 외국인의 입국(제7조), 허위초청 등의 금지(제7조의2), 사증(제8조), 사증발급인정서(제9조), 체류자격(제10조), 입국의 금지 등(제11조), 입국심사(제12조),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제12조의2), 선박등의 제공금지(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제12조의4), 조건부입국허가(제13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외국인의 입국 요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여권”이라 함은 여권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여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여권을 말한다. 형식적 요건이라 함은 여권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며,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여권이 표상하는 대상과 소지한 외국인의 동일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여권으로는 각국 정부가 발급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권위있는 여행문서로서 외교관여권·관용여권·일반여권이 있으며, 그 밖에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홍콩특별행정구 여권(Passport,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마카오특별행정구여권(Passport,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권, 동티모르 임시여행증명서, 각국 정부가 자국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는 여행문서로서 소지인의 신분사항 및 동일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발급국가 또는 제3국에의 입국이 가능한 여행증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여권은 위조여권, 변조여권, 위명여권, 타인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등이 있다.

위·변조여권 등 불법적으로 발행된 여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여권으로는 대한민국과 미수교 중인 국가의 여권, 마카오의 “Passaporte para Estrangerios”, 모리타니아·잠비아·어퍼볼타·에콰도르·쿠웨이트·예멘 등 6개국이 설립한 민간국제단체(World Service Authority)가 발급하는 WORLD PASSPORT 등이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이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증명으로서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주재국 영사 등으로부터 여권의 유효성을 심사받고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입국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증명과 확인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증(Visa)은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전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

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시행규칙 제9조)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을 위임하고 있다.

위에서 재외공관에 위임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발급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전자사증’이라고 하며, 전자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①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②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사증 발급대상은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940호)에 따로 정하고 있으며, 휴넷코리아⁴⁾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3), ②특정활동(E-7)[다만, 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1 또는 2번 직종에 한함]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3), ③단기 의료관광(C-3-3),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장기 의료관광(G-1-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4) “휴넷코리아(HuNet KOREA, 이하 ‘휴넷’이라 한다)”라 함은 온라인으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증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정보를 DB화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visa.go.kr로 한다.

이 중에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따로 받지 않고 전자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은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자격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⁵⁾이며, 그 외에 특정활동(E-7), 유학(D-2) 등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인정번호를 가지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을 한 후 스티커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사증(Visa)에는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이 있다.

단수사증은 그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이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하며, 체류기간 90일 이하와 91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증발급 심사수수료를 차등하여 받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 60일인 단수사증을 발급 받았다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한 후에는 60일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증으로 30일간 한국에 체류하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30일을 더 체류할 수는 없으며, 그 경우에는 새로운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복수사증은 그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이다.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년, 5년, 협정상의 기간 등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⁶⁾ 복수사증 중에

5) 외국인 환자 중 전자사증 발급 대상은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이며, 그 외의 외국인환자는 온라인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을 받은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지침인 ‘전자사증발급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 등)

-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 ②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외교(A-1) ~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 1의2.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는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과 2회까
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를 ‘더블사증’이라 일컫는다)이 있으며,
사증발급 심사 수수료도 차등하여 받고 있다.(시행규칙 제71조)7)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증은 입국추천 행위로서 사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
정에서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사증 견본>



3. 상호주의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기간
-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①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단수사증
 -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의 금액
 -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2.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③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④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등이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을 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때에 출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아도 입국을 보장한다는 허가증(Re-Entry Permit)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재입국허가제도는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

8) 시행령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어진 체류허가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사증의 소지를 면제 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0개국이다.(65쪽 일람표 참조) 각 국가는 입국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상호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통상적으로 관광 또는 단기 체류 하려는 사람 등 일정한 범위의 상대방 국가의 국민에게 사증의 소지를 면제시키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통상 사증면제협정은 단기간 (90일 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관광·통과·방문·학술·상담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의 발급을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에게 사증의 소지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에게도 친선이나 관광 활성화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증의 소지를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친선 등을 위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국가로 49개국을 현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의 국민에 대하여는 따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2쪽 일람표 참조) 또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의 소지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중 일시적인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 통과 무사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받고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난민여행증명서는 난민이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부터 여권 등의 여행문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입장인 점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을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그 인정을 받은 국가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3.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초청자가 대리하여 국내 소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통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한 장기 사증의 발급은 관광 및 방문 목적의 단기 사증에 비하여 국내 고용사정, 초청자의 적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그 적격심사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국내에서 초청자와 해당 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서류심사, 실태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사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증발급의 효율성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개정 시에는 신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으로 하되,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은 사증을 발급받은 피초청 외국인에게 직접 미치는 반면 피초청인을 고용하려는 초청인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초청자가 국민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면

이를 권리로써 받아들여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한편, 초청인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①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②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4. 입국심사 및 입국허가

(1) 입국심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입국을 허가한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함), ② 입국목적에 체류자격에 맞을 것, ③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④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등이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입증책임이 외국인에게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위 사항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로서 입국심사 시 국가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위변

조 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저지하고 여권 위변조, 입국목적 불분명, 초청자 불분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증(Visa)은 입국추천행위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2) 입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 제11조)

-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⑤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a. 일본 정부
 - b.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c.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⑧ 기타, 위 각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2조의2) 이 제도는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거나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분 세탁을 통해 재입국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테러범 등 국제범죄자의 입국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 5월 14일 도입(2010. 8. 15. 시행) 되었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17세 미만인 사람,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③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⁹⁾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있었던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다.

또한 입국심사시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이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외국인, 즉

9)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가.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 나.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불법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면 경찰청에서 자료를 일괄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보유·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4) 불법입국을 위한 선박등의 제공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

만약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93조의2 제2항),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3조의3)

한편, 외국인을 집단이 아닌 개별로 불법입국 시키는 등으로 법 제 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4조제4호)

이 규정은 97년 신설된 제도로 2000년대 들어 불법입국이 알선 브로커 등에 의해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사회는 발리회의 실무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밀입국 및 국제적 인신매매 관련정보의 교류 및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해 왔다. (1997.12.13. 신설, 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강화
<2001.12.29.>,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개정 2002.12.5.>

불법입국과 관련하여 입국의 시점은 입국심사를 하는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에 진입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판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위반의 기수 시기는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공 또는 영해 내에 입국심사장이 없고 영토 내 공·항만에서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입국’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오는 시점에 입국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401)

(5) 조건부 입국허가

외국인이 입국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입국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을 불허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하에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건부 입국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입국하려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제13조)

- i)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ii) 입국금지 대상자(법 제1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부합(법 제12조제3항제2호)하지 않는다고 의심이 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iii) 기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탑승 당시에는 여권을 소지하였으나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이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온 경우에 입국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 자국 공관에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임시조치로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72시간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한 날을 입국일로 하여 입국심사를 하고, 조건부 입국허가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II. 외국인의 상륙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륙허가는 승무원이나 크루즈 관광승객, 난민,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외국인의 입국심사 보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은 일본의 국가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고, 상륙은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유효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여 입국과 상륙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허가나 상륙허가는 장소적으로 볼 때 모두 공항만의 입국심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허가 대상이 다를 뿐이며, 외국인의 입국 시점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온 때 즉,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진입한 때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상륙에 관한 규정은 승무원 상륙허가(제14조), 관광상륙허가(제14조의2), 긴급상륙허가(제15조), 재난상륙허가(제16조), 난민 임시상륙허가(제16조의2)로 구분하고 있다.

1. 승무원의 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승무원’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승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외국인 승객과 마찬가지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등의 승무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승무원의 국제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소하게 상륙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따라서 국제 화물·여객수송에 종사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에 대한 출입국에 있어서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일반 외국인의 입국허가와

별도로 승무원 상륙허가제도를 두어 일반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비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관광상륙허가

관광상륙허가 제도는 관광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한국을 기항지로 하여 머무는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공하고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¹⁰⁾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입항신고를 하거나 입항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승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외국인 승객과 마찬가지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도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해당 크루즈 선박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야 한다.

- i)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ii)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 iii)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 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iv)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 ii)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i)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긴급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긴급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긴급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재난상륙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조법」에 따른 구조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의 상륙 중 생활비 등에 관하여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재난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5. 난민 임시상륙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¹¹⁾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11) 난민법 제2조제1호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절 외국인 의 체류

외국인이 입국허가를 받고 나면 국내에서 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허가받은 체류의 유형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체류자격을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36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에는 체류자격까지 표시되나 이는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허가시 체

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류자격에 대한 허가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은 “입국”에 대한 추천행위이지만, 공항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허가는 “입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자 “체류”에 대한 허가까지 의미한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체류자격”이란 체류와 활동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자격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며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체류자격”을 정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활동범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입국 및 체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적합하게 정한 것이다. 외국인은 그가 허가 받은 체류자격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활동을 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체류자격에 대응하여 정해진 체류 기간 내에서 체류가 보장된다.

I. 외국인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서 36가지 유형의 외국인 체류자격과 각 유형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1에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부여된 체류자격에 의해 인정되는 일정한 활동을 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면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은 체류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총 36종)

비 취 업 자 격 (18)	A계열 (3)	① 외교(A-1), ② 공무(A-2), ③ 협 정(A-3)
	B계열 (2)	① 사증면제(B-1), ② 관광·통과(B-2)
	C계열 (2)	① 일시취재(C-1), ② 단기방문(C-3)
	D계열 (10)	① 문화예술(D-1), ② 유학(D-2), ③ 기술연수(D-3), ④ 일반연수(D-4), ⑤ 취재(D-5), ⑥ 종교(D-6), ⑦ 주재(D-7), ⑧ 기업투자(D-8), ⑨ 무역경영(D-9), ⑩ 구직(D-10)

취 업 가 능 자 격 (16)	C계열일부 (1)	① 단기취업(C-4)
	E계열 (9)	① 교수(E-1), ② 회화지도(E-2), ③ 연구(E-3), ④ 기술지도(E-4), ⑤ 전문직업(E-5), ⑥ 예술홍행(E-6), ⑦ 특정활동(E-7), ⑧ 비전문취업(E-9), ⑨ 선원취업(E-10)
	F계열 일부 (4)	① 거주(F-2), ② 재외동포(F-4), ③ 영주(F-5), ④ 결혼이민(F-6),
	H계열 (2)	① 관광취업(H-1), ② 방문취업(H-2)

기 타 (3)	F계열일부 (2)	① 방문동거(F-1), ② 동반(F-3)
	G계열 (1)	① 기타(G-1)

2.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시행령 제12조 별표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7. 삭제	<2011. 11. 1.>
8.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9.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0.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13. 일반연수 (D-4)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취재 (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15. 종교 (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17. 기업투자 (D-8)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18. 무역경영 (D-9)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p>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8의2. 구직 (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21.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23.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5의2. 삭제	<2007.6.1>
25의3. 비전문 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5의4. 선원 취업 (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p> <p>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27. 거주 (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p>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28. 동반 (F-3)	<p>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28의2. 재외동포 (F-4)	<p>「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28의3. 영주 (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 민 (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9. 기타 (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1. 방문취업 (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p> <p>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p> <p>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p> <p>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p> <p>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p> <p>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p> <p>나. 활동범위</p> <p>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p> <p>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p> <p>가) 작물 재배업(011)</p> <p>나) 축산업(012)</p> <p>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p> <p>라) 연근해 어업(03112)</p> <p>마) 양식 어업(0321)</p> <p>바) 소금채취업(07220)</p> <p>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p>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 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p>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옥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 위 표는 2014.10.28.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였음

3.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에게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상한까지 체류한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1)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2. 공무(A-2)	공무수행기간	18의2. 구직(D-10)	6개월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19. 교수(E-1)	5년
		20. 회화지도(E-2)	2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21. 연구(E-3)	5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2. 기술지도(E-4)	5년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6. 일시취재(C-1)	90일	23. 전문직업(E-5)	5년
7. 삭제<2011.12.23>		24. 예술홍행(E-6)	2년
8. 단기방문(C-3)		25. 특정활동(E-7)	3년
9. 단기취업(C-4)		25의2. 삭제 <2007.6.1>	
10. 문화예술(D-1)	2년	25의3. 비전문취업 (E-9)	3년
11. 유학(D-2)	2년	25의4. 선원취업 (E-10)	1년
12. 기술연수(D-3)	2년	26. 방문동거(F-1)	2년
		27. 거주(F-2)	3년
		28. 동반(F-3)	동반하는 본인 에 정하여진 기간
		28의2. 재외동포 (F-4)	3년
13. 일반연수(D-4)	2년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28의4. 결혼이민 (F-6)	3년
14. 취재(D-5)	2년	29. 기타(G-1)	1년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5. 종교(D-6)	2년	30.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16. 주재(D-7)	2년	31. 방문취업(H-2)	3년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4. 체류자격별 주요 내용¹²⁾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목적에 따라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

(1) 외교(A-1)

외교(A-1) 사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12) 아래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 내부지침 등을 종합 정리한 “사증발급편람”과 “체류관리편람”을 참조한 것임

-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영사기관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됨

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에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에는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③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2) 공 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⑥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 ⑦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3) 협 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현재 실무상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한미군(현역 및 예비군)
- ②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 ③ 상기자의 가족

※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군속 및 그 가족에게 A-3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은 아니다.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도 협정상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불법체류, 취업활동 등이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 적용대상,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 (2014. 10. 31. 현재 100개국)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수첩
ALGERIA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
ANGOLA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
ANTIGUA-BARBUDA 안티구아바부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AUSTRIA 오스트리아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18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ARGENTINA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
ARMENIA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
BAHAMAS 바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BANGLADESH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90일	○
BARBADOS 바베이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BELARUS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
BELGIUM 벨기에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ELIZE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
BENIN 베냉	외교, 관용	90일	×
BOLIVIA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 수첩
BRAZIL 브라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BULGARIA 불가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CAMBODIA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CHILE 칠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HINA 중국	외교	30일	×
COLOMBIA 콜롬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STARICA 코스타리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ROATIA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일반(B-2, 30일)	×
CYPRUS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
CZECH 체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DENMARK 덴마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MMONWEALTH OF DOMINICA 도미니카연방	일반, 외교, 관용	90일	○
DOMINICA REP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외교, 관용	90일	×
ECUADOR 에콰도르	외교, 관용	관용:3개월, 외교:무제한	×
EGYPT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제 5 절 외국인인의 체류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 수첩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ESTONIA 에스토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RANCE 프랑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INLAND 핀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GABON 가봉	외교, 관용	90일	×
GEORGIA 조지아	외교, 관용	90일	×
GERMANY 독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GREECE 그리스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 관용:무제한	×
GRENADA 그레나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GUATEMALA 과테말라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HAITI 아이티	일반, 외교, 관용	90일	○
HUNGARY 헝가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CELAND 아이슬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NDIA 인도	외교, 관용	90일	×
IRAN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 수첩
IRELAND 아일랜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SRAEL 이스라엘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ITALY 이탈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JAMAICA 자메이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JAPAN 일본	일반, 외교, 관용	일반:B-2 90일, 외교·관용:90 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KAZAKHSTAN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
KIRGIZSTAN 키르기즈스탄	외교, 관용	30일	×
LAOS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
LATVIA 라트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ESOTHO 레소토	일반, 외교, 관용	60일	×
LIBERIA 라이베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
LITHUANIA 리투아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UXEMBOURG 룩셈부르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AYSIA 말레이시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 수첩
MALTA 몰타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EXICO 멕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OLDOVA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
MONGOLIA 몽골	외교, 관용	30일	×
MOROCCO 모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ETHERLAND 네델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NEW ZEALAND 뉴질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ICARAGUA 니카라과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ORWAY 노르웨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AKISTAN 파키스탄	외교, 관용	3개월	×
PANAMA 파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ARAGUAY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
PERU 페루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HILIPPINES 필리핀	외교, 관용	무제한	×
POLAND 폴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수첩
PORTUGAL 포르투갈	일반, 외교, 관용	60일	○
RUMANIA(D. O. S.) 루마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RUSSIA 러시아	외교, 관용, 일반60일	90일	×
SINGAPORE 싱가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LOVAK 슬로바키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SPAIN 스페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T. KITIS NEVIS 세인트킷츠네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T. LUCIA 세인트루치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T. VINCENT 세인트빈센트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URINAM 수리남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WEDEN 스웨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WITZERLAND 스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ADZHIKISTAN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
THAILAND 태국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
TRINIDAD-TOBAGO 트리니다드토바고	일반, 외교, 관용	90일	○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 간	선원수첩
TUNISIA 튀니지	일반,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TURKEY 터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30일	×
U.A.E 아랍에미레이트	일반, 외교, 관용	30일	×
UKRAINE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주재공관원 재임기간	×
UNITED KINGDOM 영국	일반, 외교, 관용	90일	×
URUGUAY 우루과이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ENEZUELA 베네주엘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IETNAM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은 아니다.

상호주의·국가이익에 의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총 49개국이며, 이들 국가 국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현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바레인,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 등 8개 국가 및 지역의 국민은 90일, 캐나다 국민은 6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장기체류나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사증 입국 허용국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47개국)

대륙구분	국가명 및 지역
아시아	일본(90일), 홍콩(90일), 마카오(90일), 타이완(90일),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90일) [11개국]
북아메리카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2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5개국]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90일),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1개국]
오세아니아	호주(90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군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13개국]

대륙구분	국가명 및 지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 이집트 [5개국]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2개국)

대륙구분	국 가 명
아시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증 및 체류자격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②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③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사람 (지사 설치 후 취재활동을 위해 계속 체류하려는 사람은 취재 (D-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7) 단기방문(C-3)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종전에는 이 경우 단기상용(C-2)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단기종합(C-3) 자격과 통합하여 2011년 11월 1일

부터 현재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변경하여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②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음

세부 자격	구 분	대 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의료관광지침에 별도 규정)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도착비자 등 한시적 시행)

세부 자격	구 분	대 상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동포지침에 별도 규정)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8) 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흥행 활동

- 예술흥행(E-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90일 이하 단기취업 하려는 사람

② 광고·패션활동

- 예술흥행(E-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90일 이하 단기취업 하려는 사람

③ 강의·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려는 사람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기방문(C-3)에 해당됨

④ 연구·기술지도

-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90일 이하 단기취업하려는 사람

⑤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90일 이하 단기취업 하려는 사람

⑥ 용역제공

-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단기간 근무하려는 사람

⑦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직종으로 국내에서 단기취업하려는 사람은 단기취업(C-4) 사증을 받을 수 없음

(9)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장기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①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②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예를 들면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10) 유 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

즉,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학위과정이 아닌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은 유학 (D-2) 사증 발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세부자격	대 상	세부자격	대 상
D-2-1	전문학사과정	D-2-4	박사과정
D-2-2	학사과정	D-2-5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
D-2-3	석사과정	D-2-6	교환학생

(11)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 ②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 ③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12) 일반연수(D-4)

일반교육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②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③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④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3) 취 재(D-5)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 ①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②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③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함

(14) 종 교(D-6)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 ①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 ②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③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④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⑤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되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

(15) 주 재(D-7)

- ①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 ※ 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 ※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6) 기업투자(D-8)

-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㉞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㉞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세부자격	대 상
D-8-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사람
D-8-2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D-8-3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
D-8-4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기술창업자

(17)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②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③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④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세부자격	대 상
D-9-1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D-9-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자
D-9-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D-9-4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18) 구 직(D-10)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 ②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

(19) 교 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
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②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학술기관의 장 및 교수·부교수·조
교수, 초빙교수 등
- ③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
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
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
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②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
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21) 연 구(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②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③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④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려는 사람
- ②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려는 사람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할 사람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할 사람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

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② 최신의학 및 첨단기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③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려는 사람
- ④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⑤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

(24)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②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③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④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세부자격	대 상
E-6-1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예)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예)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E-6-3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예)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체류자격이다. 따라서 국민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①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②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사증·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 ③ 국민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종으로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

는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임금요건·업체별 쿼터 설정 등을 통해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도입직종의 유형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전문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3, 4)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6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의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1개 직종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준전문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4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의 서비스 종사자

③ 숙련기능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해삼양식 기술자 등 3개 직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조선용접공 등 5개 직종의 숙련 기능공

(26) 비전문취업(E-9)

이 자격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관리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이를 일명 ‘고용허가제’라고 하며,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E-9 사증을 발급해 주는 외국인력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의 체류기간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자의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그의 체류가 허용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에서 최종심의·의결하며 매년 이를 조정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분야는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어업·농축산업 등이다.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사업장 변경은 총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상해 등의 사유로만 사업장 이동이 된 경우에는 총 4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하여야 한다.

이 고용허가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5개국¹³⁾과 MOU를 체결하여 해당 국가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허용업종	세부자격	적용범위
제조업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건설업	E-9-2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E-9-3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E-9-4	- 연안어업·근해어업 ※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 양식어업
		- 소금채취업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13) MOU를 체결한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15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27) 선원취업(E-10)

「해운법」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¹⁴⁾에 해당하는 자
-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②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및 제41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③ 순항여객선원 (E-10-3)

-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14) 부원은 船長, 航海士, 機關長, 機關士, 通信長, 通信士, 運航長, 運航士 등 직원과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海員)을 말함

(28) 방문동거(F-1)

여기에 해당하는 사증이나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 ④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9) 거 주(F-2)

거주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고액투자자, 전문인력 등으로 일정기간 장기체류한 자, 숙련생산기능인력, 공무원

으로 임용된 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에서의 장기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설정된 준영주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과전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⑤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 ⑥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함
- ⑦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

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⑧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⑨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⑩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⑪ 위의 ⑧ 또는 ⑨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세부자격	대 상
F-2-1	(구) 국민의 배우자
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4	난민인정을 받은 자
F-2-5	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3년 이상)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세부자격	대 상
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8	부동산 투자이민자
F-2-9	영주자격 상실자
F-2-10	(구)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F-2-11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F-2-12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F-2-13	공익사업 투자 이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71	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81	부동산 투자 이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99	기타 장기체류자

(30) 동 반(F-3)

이 자격은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설정한 체류자격이다.

동반(F-3) 사증이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4),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가족동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1) 재외동포(F-4)

이 자격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현재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는 동포와 그 후손들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보다 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설정한 체류자격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하면 재외동포자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후손은 2대까지 한정하고 있음

(32) 영 주(F-5)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을 단계별로 구분한다면 최상위에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F-5) 체류자격을 받게 되면 중대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무제한 주어진므로 별도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외국인으로서의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②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④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⑥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 (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⑧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⑨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⑪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⑫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⑬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⑭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⑮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세부자격	대 상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5	고액투자자로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9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F-5-10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	특별공로자
F-5-13	연금수혜자
F-5-14	방문취업자격 4년이상 제조업종 근무자
F-5-15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F-5-16	점수제로 거주(F-2)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F-5-17	부동산 투자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18	점수제로 거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5-19	부동산 투자자로 영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5-20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21	공익사업 투자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

세부자격	대 상
F-5-22	공익사업투자자로 영주자격 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5-23	은퇴이민 투자자로 투자상태 유지 등 요건을 갖춘 사람
F-5-24	법인창업(D-8-4)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등 요건을 갖춘 사람

(33) 결혼이민(F-6)

이 자격은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지속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체류자격이나, 혼인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 종전에는 거주(F-2) 자격 유형 중의 하나로 관리하였으나,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할 필요성이 있게 됨에 2011년 11월 1일 개정하여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결혼이민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배우자
-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¹⁵⁾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

1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98므961, 1998.12.08.)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4) 기 타(G-1)

이 자격은 외국인이 특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체류자격이다.

기타(G-1) 자격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②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 ③ 각종 소송 수행중인 자
- ④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 ⑤ 난민신청자

- 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⑦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 ⑧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⑨ 외국인 환자
- ⑩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 ⑪ 기타 국가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자

세부자격	대 상
G-1-1	산재보상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G-1-2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자
G-1-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G-1-5	난민신청자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G-1-10	치료, 요양하고자 하는 자 및 동반가족
G-1-11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G-1-99	기타

(35) 관광취업(H-1)

이 자격은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이며, 관광취업사증협정 체결국의 신체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하여 인정된다.

관광취업사증 협정체결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광취업협정 등 체결현황

연번	국 가	시행 (발효)일자	협정 등 합의방식 및 내용
1	호 주	1995.7.1.	취업관광사증 양해각서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2	캐 나 다	1996.1.1.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3	뉴질랜드	1999.5.1.	취업관광사증 교환각서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4	일 본	1999.4.1.	취업관광사증협정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
5	미 국	2008.10.31.	한-미 대학생 연수생취업사업(WEST) 양 해각서 교환 체류기간 1년 6월, 유효기간 1년 6월의 복수사증
6	프 랑 스	2009.1.1.	취업관광사증협정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7	독 일	2009.4.19.	취업관광을 위한 공동성명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8	아일랜드	2010.3.9.	관광취업 양해각서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9	스 웨 덴	2010.11.1	취업관광프로그램 협정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0	대 만	2010.11.23.	취업관광 양해각서 체결 (비조약)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연번	국 가	시행 (발효)일자	협정 등 합의방식 및 내용
11	덴 마 크	2011.1.1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2	홍 콩	2011.1.1.	취업관광 양해각서 체결 (비조약)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13	체 코	2012.6.1.	취업관광프로그램 협정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4	영 국	2012.7.9.	상호주의에 의해 청년교류제도(YMS) 및 관광취업프로그램 참여 허용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5	오스트리아	2012.9.17.	관광취업을 위한 공동성명 체류기간 6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6	헝 가 리	2013.7.8.	취업관광프로그램 협정 체결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36) 방문취업(H-2)

이 자격은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중국동포 등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자율구직 허용 등 선택적 취업이 가능하고, 근무처 변경 시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취업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을 허용하고,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쿼터제로

입국을 허용한다.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시에는 체류기간 1년 및 3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하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대상은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11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서 접수 시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그 대상이다.

방문취업(H-2) 자격의 활동범위는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견학,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과 한국 표준작업분류표에 의한 38개 업종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이 허용된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취업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문취업 자격에서 정한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②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 ⑤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⑥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⑦ 위의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세부자격	대 상
H-2-1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H-2-2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H-2-3	2006년 자진출국자
H-2-4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자
H-2-5	한국말 시험 등으로 선발된 자
H-2-6	무연고동포 연수 후 자격변경자
H-2-7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H-2-99	기타(자격변경자 포함)

II. 외국인의 취업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 (H-2)의 체류자격을 말하고, 이 경우 “취업활

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는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소지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전문외국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국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가지는 체류자격을 말하고, 방문취업(H-2)은 방문취업제에 따라 입국한 중국 및 CIS 지역에서 온 외국국적동포가 가지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체류 활동이 그 성격상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경영이나 투자활동으로서 취업활동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아니더라도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근무처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로서 근로 계약에서 고용주로부터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장소를 말하며,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2010. 5. 14.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우수 전문인력에게는 사후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Ⅲ. 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8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4조) 다만, 위의 금지사항 중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5조)

IV.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1. 고용주의 신고의무

외국인을 고용한 자(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는 ① 외국인을 해고한 때, ②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③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④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고용계약기간, 고용주나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의 이전 등)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한편,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센터에도 신고를 해야 함으로써 고용주는 법무부와 고용부 양쪽기관에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주가 한쪽 기관에만 신고해도 모두 신고한 것으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외국인유학생 관리자의 신고의무

유학(D-2)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재학하는 학교장,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습득중인 외국인이 재학하는 학교장은 해당 외국인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한 때,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이나 연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4)

V. 외국인의 체류허가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0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이 각급 대학이나 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의(E-2), 영화나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 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본래의 자격인 외교(A-1) 자격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을 받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종전의 활동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서로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단기사증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경우 또는 본래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보다 자격외 활동으로 근무하려는 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근무처 변경 · 추가 허가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¹⁶⁾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다. (법 제21조)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 ·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11-510호)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홍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 [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나, 국적 상실,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으로 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법 제23조)

종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국내 출생자의 경우 30일의 기간이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어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으면 되도록 2010년 5월 14일 법 제23조를 개정하여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국하여 새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류자격변경 허가는 체류활동 내용이 바뀌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하여 새로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당연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즉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등으로 그 신분이 변경된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

5.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에 부여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려면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각 체류자격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25조의2)

(2)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32조)

(3) 출국기한의 유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기한을 유예 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3조)

(4)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종전에 체류하고 있던 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단서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로 신설한 규정으로 이 규정이 없던 때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 출국기한 내에 출국을 하도록 통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종전의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 것이다.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 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종전의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

(5)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38조)

(6)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출입국관립법령에 규정된 각종 신고나 신청 및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4조)

- i)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 ii)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iii) 본인의 외국인등록 신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 iv)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이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

관한 규정, 법무부고시 제2013-247호)하고 있으며,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은 아래 표와 같다.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외 교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공 무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협 정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일시취재 (C-1) 취 재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상용 (C-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방문 (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단기취업 (C-4)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 (E-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화예술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유 학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종 교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주 재 (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업투자 (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무역경영 (D-9)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재외동포 (F-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결혼이민 (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에 해당 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 6 절 외국인 의 출국

I. 외국인 의 출국심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28조). 출국심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의무로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심사장이 설치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위·변조된 여권이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출국할 수 없다.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행사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하려는 등 출국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야 출국할 수 있다.

출국심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 등에 출국심사인을 날인함으로써 완성된다. 외국인의 출국도 ‘국민의 출국’ 규정을 준용하여(시행령 제35조)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국 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출국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관한 효력이 소멸한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이 그 허가받은 기간이나 면제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면 기존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유효하다.

외국인의 출국심사도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출국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 ② 결혼이민(F-6), 거주(F-2), 영주(F-5) 자격 소지자, ③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④ 복수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 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승무원, ⑤ 양해각서·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이 중 양국간 합의에 의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간 서명한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따라 양국 국민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G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 특별행정구 이민청장간 서명한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e Channel)'가 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희망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지문취득 및 얼굴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취득한 바이오 정보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바이오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II.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국민의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법 제29조)

이는 ‘국민의 출국금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나,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출국이 제한됨을 규정한 것이다.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는 없으나 출국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출국의 자유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수사, 재판, 세금 납부 등)를 거친 후 출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III. 재입국허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장기체류 자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법 제30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때에 종전에 그가 가진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은 소멸하므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입국에 앞서 재외공관에서 체류 목적에 합당한 사증을 다시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종전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유효하므로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입국하는 것이 인정된다.

재입국허가 제도는 외국인등록(면제자 포함)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이나 제3국을 일시 방문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1월 16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2년까지 가능하며,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 문화예술(D-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머물다가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나 면제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제 7 절 외국인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I. 외국인의 등록

1.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등록 제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지, 체류목적, 체류기간, 근무처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체류외국인을 관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체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기방문(C-3)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외국인등록사항으로는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③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④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⑥ 입국일자 및 입국항, ⑦ 사증에 관한 사항, ⑧ 동반자에 관한 사항, 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있다.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에게는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17세 미만은 제외)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강제로 보관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 견본>



(앞면)

- 외국인등록번호 : 앞 6자리 숫자 (생년월일) - 뒤 7자리 숫자(고유 번호)
-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
- 발급일자 : 전송일자를 발급일자로 표기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당시의 체류기간을 허가한 일자
 - 만료일자 : 체류기간만료일자
 - ※ 영주자격(F-5)은 ‘신분존속기간’으로 표기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
- 체류지
 - 신고일 : 최초등록시에는 등록일자를, 체류지변경시에는 체류지변경일자를 표기
 - 체류지 : 체류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

(뒷면)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위의 사항 이외에도 체류자격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추가에 관해,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사항에 관해, 방

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해 관해,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에 관해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범칙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최초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국민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범칙금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6조) 여기서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

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지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위해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동포법도 개정하여 2015. 1. 22부터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5. 등록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등록을 한 외국인은 입국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과는 별도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함께 10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사회통합프로그램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 평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하여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 ① 국적필기시험면제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 ②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③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5점) 부여
- ④ 영주(F-5)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⑤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⑥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3.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정보, 기초적인 법과 제도, 본국의 가족 등의 초청에 관한 사항, 영주자격 및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요령 등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교육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제 8 절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I.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벌칙 조항(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II. 조 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함)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즉, 법 위반의 성질이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다.

III. 보 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다.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 등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IV. 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강제퇴거의 기본적 성격은 “행정” 처분이므로 형사사법 절차와는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밀입국 또는 위변조 여권으로 불법입국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한 사람, 허위초청에 의해 입국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제7조를 위반한 사람
- ②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 ③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④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 ⑤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⑥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⑦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⑧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⑨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 ⑩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⑪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⑫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은 내란죄, 외환죄,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의 중범죄를 범하지 않는 강제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의 국적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의 국적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출생지가 있는 국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V.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강제퇴거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법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가 등이 취소된 사람
- 법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출국기한과 함께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항공기편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지방출입·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다.

VI. 출국권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가벼운(10일 이내)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외국인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이고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출국권고를 받고도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다. 출국권

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권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항공기편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야 한다.

VII. 과태료

출입국관리법에는 행정벌에 해당하는 벌칙규정 외에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벌은 법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지만, 과태료는 신고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 과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저촉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및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법 제19조 위반)
-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동 외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19조의 4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근무처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후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체류자격 해당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 단서 위반)
-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실로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 또는 제37조 위반)
-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각종 허가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의 부모 등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 제79조 위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위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하면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거짓 사실을 보고한 사람

VIII.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법 위반의 심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행정청에서 행하는 준사법적 행위이다. 즉, 사법부(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것을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통고처분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범칙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의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처분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되며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는 없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고발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을 양정할 때에는 용의자

의 연령, 환경, 범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 양정기준표와 달리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범칙금양정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하거나 범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이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는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인해 당사자는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IX. 고 발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여기서 「고발」이라 함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검사로 하여금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소추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출입국사범에 대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가벼운 사건은 통고처분에 의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한 사건은 고발하도록 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였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 9 절 난민인정제도 (난민법)

I. 개 요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동안 독립된 법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부분적으로 난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가하는 난민신청자 수와 난민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난민의 권익신장과 난민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은 총 6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난민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구체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난민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강제송환의 금지 등),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3장 제3장 난민위원회 등(난민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제4장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5장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6장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난민법은 난민, 인도적체류자, 재정착희망난민 등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I.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1. 난민인정 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신함),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의 난민업무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10.31. 현재, 단위 : 명)

연도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8,819	438	668	4,335	1,461
1994~20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연도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143	60	31	558	187
2013	1,574	57	6	523	331
2014년 10월	2,176	61	491	1,400	297
※ 심사대기 1,917명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1) 의 의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출입국항 입국과정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위 ‘보트 피플’ 등 대량난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출입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일반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토록 하고 있다. 만약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으로 결정되면 입국을 허가(또는 조건부 입국허가)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불허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송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 요 건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가능 시기를 “입국심사를 받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6조제1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⑥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⑦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3) 효 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난민인정 심사

(1) 개 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

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난민법 제8조제3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2) 난민심사관 제도 도입

난민법은 난민인정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심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도록 하였다(난민법 제8조제4항).

난민심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난민법 시행령 제6조).

(3)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방편으로 활용하는 등의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②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③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난민법 제12조, 제13조).

(5) 통역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난민법 제14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사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①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또는 ②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 신청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6)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난민법 제16조).

(7)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난민신청자나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난민신청자나 동석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4. 난민의 인정과 제한

(1) 난민의 인정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

다. 반면에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이와 같은 난민인정 및 불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난민인정의 제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난민법 제19조).

- ①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③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④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절차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난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 행정심판과의 관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난민법 제21조제2항).

(3) 심리의 비공개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난민법 제23조).

6.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난민법 제22조제1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난민법 제22조제2항).

-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②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④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⑤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⑥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Ⅲ.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1. 의 의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예를 들어 태국·시리아·수단·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등의 난민캠프에 수용 중인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재정착난민을 우리나라에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제도는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의무 부담차원에서 이들을 우리나라로 입국시켜 난민지위 및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요건 및 절차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난민법 시행령 제12조).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고, 난민심사관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게 된다.

3. 효 과

재정착희망난민이 국내 정착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난민인정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난민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난민법 제24조 제1항).

IV.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1. 난민인정자의 처우

(1) 의 의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민인정자 처우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

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0조).

(2)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된다(난민법 제31조).

또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난민법 제32조).

(3) 교육보장 및 사회적응지원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 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난민법 제33조제1항). 그리고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36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난민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난민법 시행령 제15조).

(4) 가족결합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7조).

2.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난민법 제39조) . 인도적체류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방법으로 취업허가를 한다.

3. 난민신청자의 처우

(1)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난민법 시행령 제17조).

(2) 취업허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방법으로 취업허가를 한다.

(3) 교육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43조).

(4) 주거시설 및 의료 지원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난민법 제41조, 제42조).

(5)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신청자 처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다음과 같은 처우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V. 기타 사항

1.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난민지원시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이 구비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및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시설)는 부지 31,143㎡(9,437평)에 건물 3개동을 지어 본관(행정시설), 교육관(교육시설), 생활관(주거시설)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관 적정 수용 규모는 82명이다.

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② 난민인정 신청자 중 입국 후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상태에서 지원센터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난민신청자, 임신 중인 난민신청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①·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910호)을 2013년 10월 24일 제정하였다.

3.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난민 관계 법령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4. 벌 칙

난민법 제17조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난민법 제47조).

제 10 절 국적제도 (국적법)

I. 개 요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외국인이 국민의 신분으로 또는 국민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귀화요건에는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것이 주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적업무는 2006년 2월부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당국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국적법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다’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되는 요건과 그에 관한 제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국적법은 어떤 한 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정하는 준거법이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은 부모양계 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생 당시에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취득하게 된다.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되어 외국국적만 남게 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킴으로써 본래의 국적인 외국국적만 남게 된다.

또한 1998년 6월 13일 이전에는 가족이나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혼인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였으며, 외국인 가족 중 가장(家長)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와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98년 6월 14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족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II.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어떤 사람들이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 그 기준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에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 ①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혈통주의를 그중에서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보충적 출생지주의)도 가미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무국적 방지를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Ⅲ.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 의 의

인지(認知)라 함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인지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859조)

자녀를 출생한 생모는 분만사실 그 자체로 친모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지는 통상적으로 생부가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모자(母子)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생모도 인지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라 함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그 자녀는 한국인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외국인 생모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려면 먼저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외에 출생한 자녀를 한국인 남성인 생부가 민법에 따른 인지신고를 먼저 한 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민법에 따른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할 뿐이며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및 효과

1) 유효한 인지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인지됨으로써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2) 미성년 일 것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성년의 경우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할 수 없으며, 특별귀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3)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인지를 한 생부 또는 생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그 자녀가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후 외국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할 수 없으며, 특별귀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당시에도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인지된 자녀가 출생 당시에는 그 생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그 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생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5)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인지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참고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던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시행한 국적법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혼인 외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한국인 남성이 인지신고를 하면 별도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절차 없이 민법 및 호적법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IV.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1. 귀화제도 개요

1) 귀화의 개념

귀화란 출생이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반면에 국적회복은 과거에 어떤 경위로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은 있으나, 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이다.

귀화는 한 개인이 후천적 사유로 국적을 변경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귀화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는 것으로 그 허가는 주권행위이자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2) 귀화의 종류

귀화의 유형은 요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적·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반면,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내거주기간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등에 관하여 일반귀화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일반귀화

1) 의 의

일반귀화는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민과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와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지연적 관계에도 있지 아니한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체류한 사람에 대해 그의 신청에 의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요 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국내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 국내 거주기간 중 체류허가 기간 내에 외국을

출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나, 출국하여 외국에 있었던 기간은 공제하고 국내에 실제 있었던 기간이 5년을 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화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행이 단정할 것

귀화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포용하는 것이므로 귀화자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위협하여서는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귀화 신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범죄를 범한 사실은 없는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는 별도로 신원조회, 체류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자신의 자산이나 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을 국민으로 새롭게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생계유지 능력 여부는 귀화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로 판단한다. 현재 3천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신청자가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와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귀화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상응하는 수준의 대한민국 역사·정치·문화·국어 등 기본소양에 대하여 출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다. 면접심사는 애국가, 한국어 능력,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을 평가하여 적합평가를 받은 사람을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귀화허가를 하게 되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 거주지 현지조사 등에 따른 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이귀화

1) 의 의

귀화신청자 본인이 혈연관계, 지연관계 등에 있어 일반 외국인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일반귀화보다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간이귀화는 위의 일반귀화 5가지 요건 중에서 국내 거주기간에 관한 요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4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간이귀화에는 그 대상에 따라 거주기간에 관한 요건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2) 3년 간이귀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고 그 사망당시 외국인이었다 하더라도 생전에 한 때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과거 한 때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자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함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자

- 귀화신청자 본인 및 그의 부(또는 모)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한화교 후손이나 선교사 후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의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을 말하며, 거주기간은 입양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미성년 당시에 입양된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함

3) 혼인귀화 (2년 또는 1년 간이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③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특별귀화

1) 의 의

부 또는 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두고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보다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귀화는 일반귀화나 간이귀화와 비교하여 일정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귀화신청을 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성년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특별귀화를 할 수 있고, 생계유지능력을 문제삼지 않는다.

2) 특별귀화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 연령(성년), 생계유지능력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수반취득제도는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귀화심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부 또는 모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수반취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독자적으로 국적취득이라는 공법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함께 가족단위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희망한다면 부 또는 모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그 미성년 자녀는 별도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필요도 없이 부 또는 모에 동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V.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1. 의 의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사유(외국국적 자진취득, 외국국적포기의무 불이행,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등)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적회복과 귀화는 공통점이 있으나, 귀화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고, 국적회복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대상자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자 등이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

3. 국적회복의 제한

국적회복 대상자라 하더라도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다(국적법 제9조제2항)

VI.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 의 의

외국국적 포기의무란 외국인으로서 귀화, 인지,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국적을 1년 내에 포기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법 제10조제1항).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나라 중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2010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1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외국국적의 포기의무 기간인 1년의 기산시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외국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2010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서 우리 국적취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라 한다)을 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

- ①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④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에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가 그 후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자
- ⑤ 해외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
-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VII. 국적선택제도

1. 개 요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적선택제도는 1997년 제4차 개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대한민국 국민 중 적법하게 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도 함께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국적법이 정한 기한 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국적을 선택한다고 함은 문언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선택구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적선택제도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까지는 복수국적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한편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상태를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는 양면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개정 전까지의 구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년 개정 국적법에서는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된다.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달라진 국적선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2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 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지나고 병역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서 체류하던 재외국민의 자녀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 내에 먼저 외국국적부터 포기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된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둘째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복수국적자는 그 서약한 취지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2세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하거나, 22세가 지났다면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치고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에 출생한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할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선택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할 의사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국적법에서는 국적이탈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나 장소에 제한이 없으나, 우리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된다.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되는데 다만 국내에서는 그 신고를 할 수 없고 재외공관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요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2010년 개정 전의 구 국적법에서는 국내 거주자도 국내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2010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시기를 지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에 한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해소(병역이행, 제2국민역에 편입, 병역면제처분)된 때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국적이탈의 신고절차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뜻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게 되며,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시행령 제18조).

4. 국적선택명령제도

2010년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 되는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는 절차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을 정리하고 하나의 국적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5. 국적상실결정제도

국적상실결정제도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일탈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빼앗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0년 개정 국적법에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국적상실결정은 국적박탈이나 다름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상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국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또한 복수국적자 중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I. 국적판정제도

1. 의 의

국적판정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 판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적판정제도는 1997년 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2. 대 상

국적판정의 주된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 또는 북한적 소지자 등 대한민국과 일정한 혈연·지연 관계를 가졌거나 그러한 관계의 개연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3. 절 차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판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시행령 제23조), 법무부장관은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여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신청인이 판정시점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시행령 제24조).

4. 효 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판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된다.

IX. 국적상실

1. 개 요

대부분의 국적 입법례는 자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입법례에 따라 국적법 제15조는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이다.

특기할 점은 우리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자진취득과 비자진취득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자진취득의 경우에는 자진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국적법 제15조제1항), 비자진취득의 경우(혼인, 입양, 인지, 외국국적의 수반취득 등에 의하여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진취득으로서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제2항).

2. 국적의 상실사유 및 상실시점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사유와 그 상실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의 경우

외국인이 귀화, 인지, 국적회복, 수반취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0조 제3항).

2010년 개정 국적법 이전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였으나, 2010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 준비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외국인이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일은 국적취득 허가를 받은 날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포기의무 기간이 지난 때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1년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제2항).

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의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첫째,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

둘째,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4항).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제1항).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비자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제1항).

3. 국적상실자의 신고의무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관서와 주민등록관서에 신고자의 국적상실 사실을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X. 국적취득 현황 및 수수료

1. 국적취득 현황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신청한 현황과 심사를 거쳐 국적을 취득한 현황을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10.31. 현재, 단위 : 명)

연도 \ 종류	총 계		귀 화		국 적 회 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09년	23,846	26,756	22,849	25,044	997	1,712
2010년	25,350	17,323	24,099	16,312	1,251	1,011
2011년	26,785	18,355	24,034	16,090	2,751	2,265
2012년	24,290	12,528	21,121	10,541	3,169	1,987
2013년	21,266	13,956	18,291	11,270	2,975	2,686
2014년 10월	13,989	11,820	11,623	9,198	2,366	2,622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 국적 관련 수수료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귀화허가 신청	30만원 (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
국적회복허가 신청	20만원 (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

제 2 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국적취득 신고	2만원 (1인당)	법 제3조 관련
국적재취득 신고	2만원 (1인당)	법 제11조 관련
국적이탈 신고	2만원 (1인당)	법 제14조
국적보유 신고	2만원 (1인당)	법 제15조제2항 관련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2천원 (1통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2천원 (1통당)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2천원 (1통당)	인지·귀화·국적회복·수반취득·재취득 등 법 제3조~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국적상실·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국적이탈 사실증명서

귀화허가 신청, 국적취득 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국적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1998년 이후 최근까지 한 번도 상향한 적이 없어 그 동안의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4. 6. 18.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귀화허가 신청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국적취득 신고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명서 발급의 경우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4. 7. 21.부터 시행하였다.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제 1 절 총 설

중국이 1949년 성립된 이후에 제정된 출입국관리법규는 1964년에 국무원이 제정한 “외국인출입국거주여행관리조례(外国人入境出境居留旅行管理条例)”이다. 78년 개혁개방이전에는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국관리업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규의 제·개정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과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민과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1985년 국민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을 하였고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과 관련부서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등의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에 두고 있었다.

그 후, 2012년 6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과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을 동시에 폐지하였다. 그간 외국인과 중국 국민의 출입국관리법을 분리하여 2원적으로 운영하던 체제를 벗어나 양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률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 행정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2013년 7월 3일 제

정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는 외국인의 출입국에만 적용하고 있다.

제 2 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I. 입법목적 및 개정배경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출경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출입국관리법 제1조). 여기서 출경, 입경은 출입국경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법에서 출경은 중국내지(中国内地,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본토)에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향하는 것과 중국내지에서 홍콩, 마카오로 향하는 것과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⁷⁾ 그 반대의 경우가 입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境)”이란 국경과 변경을 포괄하며 국경(国境)과 변경(边境)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국경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변경은 좁은 의미로는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¹⁸⁾ 중국 형법 제 318조에서도 국경과 변경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입경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 내지로 진입하는 것,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지로 진입하는 것, 대만 지역에서 중국대륙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

17) 출입국관리법 제8장 부칙 제89조 출경은 중국 내지에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향하는 것, 중국 내지(内地)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향하는 것, 중국 대륙(大陆)에서 대만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내지는 중국 본토를 홍콩·마카오와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고 대륙은 중국 본토를 대만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18) 편집부,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理解与适用, 法制出版社, 2005, 185.

경에서의 “경(境)”은 국경과 변경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출국,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입국도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범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와 홍콩·마카오 지역 간의 출입경,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출입경도 이에 포함된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범위는 크게 (1) 국민의 출입국(경), (2) 외국인의 출입국(경), (3)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거류의 관리, (4)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경)에 대한 심사로 나눌 수 있다.

국민의 출입국은 본법 제2장 제9조 내지 14조에서 원칙적이고 대략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권신청, 발급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권법(2006년 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입국은 본법 제3장 제15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제2장 입국(제6조 내지 12조), 제5장 출국(제22조 내지 24조)으로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던 체계에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으로 통합하고 다시 사증과 출입국을 나누어 규제하는 편제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의 체류·거류관리에 대해서 조문을 대폭 보강하여 외국인의 체류·거류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류와 거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180일을 기준의 단기체류, 장기거류의 개념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체류 및 거류관리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180일을 초과하는 거류의 경우에는 거류증을 받도록 하는 수속과정에서 지문정보를 남기도록 하여 장기거류자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이른바 삼비(三非), 즉 불법입국(非法入境), 불법체류거류(非法停留居留), 불법취업(非法就业)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고 특히 불법취업은 중국인의 취업기회를 빼

아아 중국에서의 고용률 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향후 집행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의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불법취업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물론 이러한 불법취업이 중국 내 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국의 임금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위안화 평가절상이 맞물리면서 불법취업자의 증가의 우려가 있고 그간 중국 내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허술하였기 때문에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I. 중국의 출입국관리 주요 규제기관

1.公安部

공안부의 출입국관리 직책은 국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거류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공안부 산하에는 출입국관리국과 변방관리국이 설치되어 양 기관의 성격과 권한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공안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出入境管理局)²⁰⁾은 전국 공안의 출입국관리업무를 총괄 지도하고 중요지역의 출입국관리업무를 실시하며 변방관리국(边防管理局)²¹⁾은 현역제 변방관리기관의 출입국국경심사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변방검사기관은 편제상으로는 현역제의 무장경찰부대²²⁾의 속해있고 공안부의 관리에 예속되는 형식을 취했으나 1998

19) <http://world.people.com.cn/n/2014/0623/c1002-25189263.html>

20) <http://www.mps.gov.cn/n16/n84147/index.html>

21) <http://www.mps.gov.cn/n16/n80254/index.html>

22)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행정부),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의 양 기관의

년에 직업화개혁을 하여 현재는 일반 공무원 신분의 직업제와 무장경찰 소속의 현역제로 이원화하였다. 9개 지역(북경, 상해, 천진, 광저우, 선전, 샤먼, 주하이, 산터우, 하이커우)의 변방검사소(边防检查总站)는 직업제를 실시하며公安부의 수직적 지휘를 받지만 그 밖의 출입국관리기관은 현역의 무장경찰조직으로서公安부 변방관리국의 지휘 하에 놓여 있고 업무상으로만 출입국관리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公安부 내의 변방검사국은 형식적으로公安부 산하의 국(局)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인민무장경찰변방부대(中国人民武装警察边防部队)이며 실질적으로는 무장경찰조직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²³⁾

[그림 3-1] 출입국관리의 지휘체계²⁴⁾



영도를 받으며 내부안전보위, 황금, 산림, 수력전기, 교통 등의 부대와公安부 영도의 변방, 소방, 무장보위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23) <http://www.mps.gov.cn/n16/n80254/n80271/index.html>

24) <http://www.mps.gov.cn/n16/n84147/n84165/1291517.html>

공안기관이 책임지는 출입국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공민의 보통여권, 출입경통행증 등 국제여행증서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통행증서의 발급사무, ② 외국인의 항구사증 발급, 사증연장 수속, 거류증·영구거류증의 발급사무, ③ 경내 외국인의 체류·거류관리 사무, ④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국경심사 사무, ⑤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의 처벌. 이 중에서 ①, ②의 사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공안부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사무를 위탁하였고 ③의 사무는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고유사무이다. ④의 사무는 출입국국경심사기구에서 담당하고 ⑤의 사무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국관리기구, 출입국국경심사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누어 행사한다.

2. 외교부

외교부 및 지방외사부서는 사증사무와 여권 등 출입국증서의 발급과 외교·공무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사증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하는 그 밖의 기구 등 사증발급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여권관리에 있어서는 외교여권을 발급할 권한이 있고 외교부,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무여권발급의 책임을 진다. 외교사증, 공무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증연장과 같은 관련증서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절 국민의 출입국

I. 국민의 출국

1. 홍콩, 마카오, 대만 이외의 지역으로 출국

중국 국민이 출국을 위해서는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국민이 발급받는 여권은 일반여권, 외교여권, 공무여권으로 나뉜다. 일반여권은 출입국관리기구 또는公安부가 업무를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公安기관 출입국관리기구 및 중국의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그 밖의 해외기구에서 발급한다. 외교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하며 공무여권은 외교부, 중국의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그 밖의 해외기구, 외교부가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인민정부 외사부서에서 발급한다.

“그 밖의 여행증서”에는 다음이 해당된다. (1) 단기 출국한 국민이 국외에서 여권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해외공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그 밖의 주외기구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中华人民共和国旅行证), (2) 국민이 변경무역, 변경여행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또는 변경여행을 하는 경우公安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公安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중화인민공화국통행증(中华人民共和国通行证), (3) APEC 상무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등.

현재公安기관이 발급하는 출입국증서는 20여 종에 달한다. 여권, 출입국통행증, 홍콩·마카오 왕래통행증, 홍콩·마카오 거주민 내륙왕래통행증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중국 국민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도착국의 사증 또는 그 밖의 입경허가증명(入境许可证明)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다만, 중국정부와 다른 국가의 정부와 상호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의 규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증이 없이도 출국을 할 수 있다. 사증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 현황은 [표 3-1]과 같다. 또한 도착지의 국가가 일방사증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입국 후 사증발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중국국민이 선원신분으로 출입국하고 국외선박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선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법 제25조에 의하면, 교통부가 위탁한 해사관리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선원증(海员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증은 중국국민의 특수한 출입국증서에 해당된다.

[표 3-1] 사증면제협약 체결국가 현황(2014년 3월 29일 현재)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슬로바키아	외교·공무(특별)여권	1956.06.01.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과 체결한 협약적용
알바니아	외교·공무(특별)여권	1956.08.25.	
북한	외교·공무여권	1956.10.01.	
북한	공무일반여권, 공무단체여권	1965.01.01.	
세르비아	외교, 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因公)” 표기있는 일반여권	1980.01.09.	남슬라브사회주의공화국과 체결한 협약적용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외교·공무·공무일반여권, “공무(因公)” 표시있는 일반여권	1980.01.09.	남슬라브사회주의공화국과 체결한 협약적용
루마니아	외교·공무여권	1981.09.16.	
몰디브	외교·공무여권	1984.11.27.	
산마리노	외교·공무여권, 일반여권	1985.07.22.	
칠레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86.05.07.	
에콰도르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87.07.11.	
파키스탄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87.08.16.	
콜롬비아	외교여권	1987.11.14.	
볼리비아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87.11.15.	
파키스탄	공무일반여권	1988.04.30.	
우루과이	상대방국가에 상주하는 공관인원이 소지한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88.11.07	
에콰도르	공무일반(특별)여권	1988.12.25.	
쿠바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반여권	1988.12.23.	
몽고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1989.04.30.	
베네수엘라	외교·공무여권	1989.07.13.	
이란	외교·공무여권	1989.07.12.	
라오스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유효공무사증을 부기한 일반여권	1989.11.06.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방글라데시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반여권, “정부공무(政府公務)” 또는 “무료(免費)” 표시있는 일반여권	1989.12.18.	
터키	외교·공무(특별)여권, 공무일반여권	1989.12.24.	
키르로스	외교·공무여권	1991.10.02.	
콜롬비아	공무(공무원)여권	1991.11.14.	
베트남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1992.03.15.	
헝가리	외교·공무여권	1992.05.28.	
폴란드	외교·공무여권, 해원증, 항공기 승무원증서	1992.07.27.	
리투아니아	외교·공무사증, 해원증(선박편)	1992.09.14.	
몰도바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公務)”라는 표기가 있는 일반여권, 단체여행	1993.01.01.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公務)” 표기가 있는 일반여권, 단체여행	1993.02.01.	
벨로루스	외교·공무여권, 단체여행	1993.03.01.	
요르단	외교·공무(특별)여권	1993.03.11.	
타지키스탄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公務)” 표기가 있는 일반여권	1993.06.01.	
아르헨티나	외교·공무(특별)여권	1993.08.14.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베냉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증명”이 있는 일반여권	1993.11.06.	
우루과이	외교여권	1994.01.01	
카자흐스탄	외교·공무여권	1994.02.01.	
그루지야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단체여행	1994.02.03.	
아제르바이잔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1994.02.10.	
아제르바이잔	단체여행	1994.05.01.	
마케도니아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因公)” 표시있는 일반여권	1994.07.19.	
슬로베니아	외교·공무여권	1994.07.01.	
아르메니아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공무(因公)” 표기가 있는 일반 여권	1994.08.03.	
크로아티아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95.04.09.	
자메이카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95.06.08.	
수단	외교·공무여권, 특별·공무원 여권	1995.10.26.	
멕시코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98.01.01.	
미얀마	외교·공무(공무원)여권	1998.03.05.	
가이아나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 반여권	1998.08.19.	
러시아	단체여행	2000.12.01.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러시아	외교여권, 공무집행을 위한 국제열차승무원, 지정된 정기항공기승무원, 해원증을 소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선원	2001.05.25.	
우크라이나	외교·공무여권, 해원증	2002.03.31	
키르기스스탄	외교·공무여권	2003.06.14.	
태국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3.10.18.	
페루	외교·공무(특별)여권	2004.05.12.	
브라질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4.08.10.	
필리핀	외교·공무(공무원)여권(임시방문에 한함)	2005.02.28.	
브루나이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5.06.18.	
탄자니아	외교·공무여권	2005.07.11.	
인도네시아	외교·공무여권	2005.11.14.	
적도기니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6.01.01.	
캄보디아	외교·공무여권	2006.09.14.	
튀니지	외교·공무(특별)여권	2006.09.29.	
네팔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6.10.16.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06.11.23.	
이집트	외교·공무(특별)여권	2007.01.27.	
영국	외교여권, 일부공무여권	2007.10.25.	
코스타리카	외교·공무여권	2008.01.15.	
볼리비아	공무일반여권	2008.01.18.	
몰타	외교·공무여권	2008.03.06.	

제 3 절 국민의 출입국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그레나다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10.01.17.	
오만	외교·공무(특별)여권	2010.04.16.	
우즈베키스탄	외교여권	2010.07.09.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교여권	2010.11.27.	
사모아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11.02.18.	
싱가폴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2011.04.17.	
말레이시아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11.05.18.	
남수단	외교·공무·특별여권	2011.07.09.	
아랍에미리트	외교여권	2012.03.21.	
불가리아	외교·공무여권	2012.04.04.	1999년 공무 일반여권은 제외됨
통가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 반여권	2012.11.10.	
몬테네그로	외교·공무여권	2013.03.01.	
스리랑카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 반여권	2013.04.18.	
세이셸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일반여권	2013.06.26.	
대한민국	외교여권	2013.08.18.	
모리셔스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일반여권	2013.10.31.	
나이지리아	외교·공무여권, 공무일반여권	2014.02.01.	

체결국	사증면제 여권종류	효력발생 시기	비고
바하마	외교·공무(공무원)여권, 공무일 반여권, 일반여권	2014.02.12.	
모로코	외교·공무여권	2014.03.06.	
도미니카연방	외교·공무(공무원)여권	2014.03.29.	

2.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으로 출경(出境)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출경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아닌 통행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에는 특별한 출입경제한이 없었으나 1951년 2월에 홍콩, 마카오로 들어가는 지역에 국경심사소를 설치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홍콩·마카오 왕래여행객에 관한 관리규정(关于往来港澳旅客的管理规定)”을 실시하여 “출입통행증”을 발급받아 출입경하도록 하였다. 1956년에는 “홍콩·마카오왕래(출입)통행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82년에公安부는 홍콩·마카오로 출경하는 목적, 즉 거주(편도)와 단기친지방문(왕복)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1986년에는 국무원이 “중국국민개인사유 홍콩·마카오지역왕래 임시관리방법(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或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을 공포하여 대륙 국민의 홍콩·마카오지역 왕래와 홍콩·마카오 거주민의 대륙왕래에 관해 규정하였다.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는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의해 각기 출입경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입경조례”는 홍콩거류권이 있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거류권 없는 자는 대륙거주민이라고 하여도 거류권 없는 외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1987 국무원 관공청에서 “대만동포 조국대륙 친지방문여행 영접방법에 관한 통지(关于台湾同胞来祖国大陆探亲旅游接待办法的通知)”를 공포하였고 1991년에는 국무원이 “중국국민대만지역왕래관리방법”을 공포하여 대륙거주민의 대만출입경과 대만거주민의 대륙출입경에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절차, 통행가능항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대만거주민이 대륙에 입경할 때에는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여행증에 소지하고 개방된 또는 지정된 출입경항구로 출입경하도록 하였다. 1985년에는 중국국민출입경관리법에서 중국국민의 홍콩·마카오지역의 출입경을 규제범위에 포함시켰고 세부규정의 제정은 국무원에 입법위임시켰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도 홍콩·마카오·대만의 출입경에 대해 제10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은 국무원이 제정하도록 입법위임하고 있다.

[표 3-2]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 간 왕래 시 필요한 출입경증서

구 분	출입경(국) 목적		여행증서의 종류	근거법규
대륙(main land) 거주민(호적)	출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여권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홍콩 마카오 방문	상무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상무표기(签注))	중국국민개인사유로 인한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 왕래 입시관리방법(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或
		가족방문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친지방문표기)	
		취학, 취업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체류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구 분	출입경(국) 목적	여행증서의 종류	근거법규
		(逗留)표기)	者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
	개인여행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여행표기)	
	단체여행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단체여행표기)	
	기타 사무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기타표기)	
	긴급사유	홍콩마카오왕래통행증(往来港澳通行证)(급행발급)	
	대만 방문	대륙거주민대만왕래통행증(申请办理大陆居民往来台湾通行证)	중국국민대만지역왕래관리방법(中国公民往来台湾地区管理办法)
홍콩마카오거주민	대륙 단기방문	홍콩마카오거주민내지왕래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중국국민개인사유로 인한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 왕래 임시관리방법(中国公民
	긴급한 사유로 대륙방문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통행증(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通行证)	

구 분	출입경(국) 목적	여행증서의 종류	근거법규
			因私事往来 香港地区或 者澳门地区 的暂行管理 办法)
대만거주민	대륙방문	대만거주민대륙왕래통 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 通行证)	중국국민대 만지역왕래 관리방법(中 国公民往来 台湾地区管 理办法)
	대륙입경 후 계속거류	다차 대륙왕래표기 또 는 거류표기(多次来往 大陆签注或居留签注)	
	대륙으로 거주지이전	대만거주민대륙정주수 속(台湾居民来大陆定居 手续)	

II. 국민의 출국금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이지만 중국 헌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근거로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이전의 자유(迁徙自由权)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출국의 자유도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위생 또는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5년 국민출입국관리법 제8조에서는 5가지 출국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었고 1995년 출입국검사조례 제8조에서도 8가지 출입국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6가지의 출국제한사유를 규정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심사를 거절, 회피하는 경우이다.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서와 입국하려고 하는 국가의 사증 등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되고 법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거절하거나 또는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1조에 의해 법률책임을 지는 것과 더불어 출입국이 금지된다.

둘째, 출국하려는 자의 형벌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범죄혐의인인 경우이다. 범죄혐의인에는 범죄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사재판에 계류(係屬) 중인 사람으로서 인민법원이 출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이다. 출입국관리 주관부서가 법원의 출국 금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민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외국인에 대한 출국불허(제4절 II.)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넷째, 국(변)경²⁵⁾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출국, 불법거류, 불법취업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송환되어 출국이 불허되는 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 4 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상륙

I. 외국인의 입국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으나, 개념상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의 입국과 크게 다르지

25) 국경(国境)과 변경(边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용어이다. 국경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理解与适用, 法制出版社, 2005, 185면.

않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하여 ‘입경(入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역외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입국’이 아닌 ‘입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과 입경의 큰 차이점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이란 중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중국의 국적제도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중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중국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하였어도 중국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국민이어도 외국에 거주하고 본인이 출생 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중국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은 중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중국주민신분증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취득한 중국국민이다. 둘째, 화교, 즉 외교에 거주하여 비록 국내의 신분증은 없으나 중국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은 중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셋째, 홍콩·마카오거주민 중의 영구거주민이다. 넷째, 대만지역의 거주민이다. 대만에서는 대만거주민에게 별도로 대만여권을 발급하고 있지만 일부국가에서는 대만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여권이 아닌 다른 증서, 예를 들면 입국 해당국가가 발행한 여행증서를 요구하거나(브라질) 여권이 아닌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자메이카). 또한 대만의 외교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도 존재한다(뉴질랜드, 불가리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대만거주민은 중국이 대만여권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거주민대륙왕래통행증(台灣居民來往大陸通行證)을 발급받아 입경(入境)할 수 있다.²⁶⁾

상술한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이고 중국정부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받게 된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중국의 제외공관(사증발급기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국 후 항구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증면제협약에 따라 사증이 면제되는 국가의 국민이 입국하는 경우, 임시입국수속을 하는 경우,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II. 사 증

1. 사증의 종류

(1) 외교·예우·공무사증

외교사증(外交簽證)은 외교적 이유로 입국(入境), 경유(過境) 및 중국 내 상주(常駐)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중국에 방문하는 국가원수, 정부대표, 공적인 업무를 위해 중국에 입국·경유·상주하는 외국정부의 고급관료, 주중 대사·공사·영사관의 외교관, UN기구 중 외교사증을 발급하는 데 요건이 부합하는 자 등이다. 또한 상술한 외교사증 발급대상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도 외교사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외교사증은 외교주채사증, 외교입국사증, 외교경유사증으로 나누어진다. 이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일정한 외교적 예우를 받음은 물론이다.

26) 실제로는 대만거주민대륙왕래통행증과 중화민국(대만)여권을 소지하여 심사기관에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사증은 공무를 이유로 입국하여 중국내 상주하는 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주중 대사관중 공무여권²⁷⁾을 소지한 행정기술인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UN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관 중 공무사증을 발급조건에 부합하는 인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임시공무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정부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무사증도 공무주재사증, 공무입국사증, 공무경유사증으로 나뉜다. 다만, 공무여권을 가진 사람만 공무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여권(普通护照)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 측 보증에 의해 공무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예우사증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예우를 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현직에 있지 아니한 정계의 중요인물, 주요 외빈, 야당대표와 유명인사 등은 예우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입국하는 외교여권을 가진 외교관에게도 예우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예우사증을 받은 외국인도 일정한 외교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사증

일반사증(普通签证)은 비즈니스, 학업, 친지방문, 여행 등 외교, 공무 이외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사증을 가리킨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중국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이하, 출입국관리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사증발급기관은 출입국관리조례를 근거로 외국인의 신분, 중국입국목적에 따라 여권종류를 참고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사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한다.

27) 공무여권(公務护照)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관용여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입국사유에 따라 일반사증은 12개 종류로 나뉜다. 2013년 7월 개정이전의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8종의 사증종류만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 4월 개정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12종으로 4종의 사증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출입국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사증종류별로 발급대상, 제출서류 등을 살펴본다.

[표 3-3] 입국사유별 사증유형 및 종류

구조례		신조례	
사증유형/ 종류	발급 조건	사증유형/ 종류	발급 조건
D사증	중국 장기거주자	D사증	중국 장기거주자
Z사증	취업사증	Z사증	취업사증
X사증	학생사증	X1사증	장기 학생사증
		X2사증	단기 학생사증
F사증	방문사증	F사증	방문사증
		M사증	상업, 무역종사자 사증
L사증	여행사증	L사증	여행사증
		Q1사증	장기 가족방문
		Q2사증	단기 가족방문
		S1사증	장기 개인사무/가족방문 사증
		S2사증	단기 개인사무/가족방문 사증
G사증	경유사증	G사증	경유사증
C사증	승무원사증	C사증	승무원사증

구조례		신조례	
J1사증	상주 기자 사증	J1사증	상주 기자 사증
J2사증	임시 기자 사증	J2사증	임시 기자 사증
		R사증	인재사증

1) C자 사증

C자 사증(C字签证)은 열차·비행기·배 등에서 승객을 위한 제반 업무, 즉 승무(乘務)와 항공 및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해상운송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과 국제육상운송을 행하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출입국관리조례 제6조 1호). C자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등에 사증종류에 관계없이 제출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²⁸⁾(이하, 사증발급신청서류) 이외에 외국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또는 중국내 관련단위(单位)에서 발급한 초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D자 사증

D자 사증(D字签证)은 입국하여 중국에 정착하고 영구거류하려고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동조례 제6조 2호). D자 사증은 신청할 때에는 사증발급신청서류 외에 중국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표(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 또는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의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정주승인증명서(定居批准证明)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출입국관리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중국경제·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영구거류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28) 이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및 사진과 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가리킨다.

는 영구거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신청과公安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거류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 D자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영구거류자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F자 사증

F자 사증(F字签证)은 교류, 방문, 현지조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이고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F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바자발급신청서류와 함께 중국 내의 초청주체가 발급하는 초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G자 사증

G자 사증(G字签证)은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환승 여객표를 가지고 국제항공기, 선박, 열차에 탑승하여 중국으로부터 제3국 또는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 3호에 의해 사증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중국 내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²⁹⁾ 따라서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을 최종의 목적지로 하지만 중국 내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G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목적지 국가(지역)의 일시, 좌석이 확정된 환승항공기, 선박, 열차여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J사증

J자 사증(J字签证)은 외국국적의 기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하는 사증이다. J자 사증은 기자의 소속기관, 체류기간에 따라 J1사증과 J2사증으로 나뉜다. J1사증은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²⁹⁾ 지역에 따라서는 72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장 6. 사증발급의 면제에 상술한다.

언론기구의 기자(특파원)을 대상으로 하고 J2사증은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외국의 언론기구는 2008년 10월 17일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상주 외국언론기구와 외국기자 취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采访条例)” 제2조에 따르면 외국언론기구가 중국 국내에 설립한 뉴스 취재·보도 업무를 하는 支社(分支机构)를 가리킨다.

J자 사증은 관련부서(외교부신문司)의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하다.³⁰⁾

6) L자 사증

L자 사증(L字签证)은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단체의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단체L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여행계획, 일정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L자 사증은 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M자 사증

M자 사증(M字签证)은 상업적 무역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이 사증은 2013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조례에 신설된 사증이다. M자 사증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의 비즈니스, 무역활동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간편하고 용이하게 사증발급을 하기 위함이다. M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 내에 있는

30) J1사증은 중국외교부 관련부서(중국 외교부 신문司)가 발급한 (사증)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J2사증은 중국외교부 관련부서 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被授权单位)의 사증발급 통지서 및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작성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중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서류 제출 전에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수속을 먼저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신청자의 중국 측 합작상대방(파트너)이 발급하는 초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Q자 사증

Q자 사증(Q字签证)은 Q1사증과 Q2사증으로 나뉘는데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조례에서 신설된 사증이다. 이 사증은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화인(华人)³¹⁾의 친지방문에 입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증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화인이 이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Q1자 사증은 중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이 가족동거(家庭团聚), 양육위탁(寄养) 등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여기서 가족구성원(家庭成员)의 범위는 중국 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이다.

Q2자 사증은 단기로 친지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 내의 중국 국민의 외국국적 친족과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외국국적 친족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친족의 범위는 상술한 가족구성원 이외의 친족을 말한다.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서³²⁾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³³⁾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31)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화교(华侨)라 하고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중국 혈통을 지닌 사람을 화인(华人)이라고 칭한다.

32) 초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② 방문 관련 정보 :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 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③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33) ① 초청인의 중국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 ② 신청

위탁 등의 원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⁴⁾

9) R자 사증

R자 사증(R字签证)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외국의 고급인재와 긴급한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인재사증). 중국정부 관련 담당부처에서 확정된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는 초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제시된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외교부 등의 담당부처는 아직 세부적 요건에 관한 지침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10) S자 사증

S자 사증(S字签证)은 S1자 사증과 S2자 사증으로 나뉜다. S자 사증도 2013년 출입국관리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사증종류이다. 이 사증은 X1자 사증과 Z자 사증으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이다. 이 사증이 추가된 이유는 그간 X사증 또는 Z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에게 입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S1자 사증은 중국 내 업무(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무로 중국에서의 거주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비교적 장기간(180일 초과) 방문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 증명 서류(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34) ①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 ②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원본과 사본 ③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 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S2자 사증은 단기간(180일 이하)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중국 내 업무(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및 그 밖의 개인사무로 중국에 거주에 필요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증이다. S2자 사증은 S1자 사증과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 입국·거주의 목적, 발급대상자는 동일하다.

S1자 사증과 신청할 때에는 업무, 유학 등 사유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초청서³⁵⁾,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개인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입국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⁶⁾ S2자 사증의 필요서류도 S1자 사증 필요서류와 동일하다.

11) X자 사증

X자 사증(X字签证)은 구 출입국관리조례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사증이나 신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X자 사증을 X1사증과 X2사증으로 세분화되었다. X1자 사증과 X2자 사증의 차이점은 체류기간의 장단, 즉 장기(180일 초과)와 단기(180일 이하)에 따라 사증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다.

X1자 사증은 중국 내에서 장기로 유학하는 외국인을 발급대상으로 한다. X1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학생모집단위(대학 등의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입학통지서와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⁷⁾ X2자 사증은 X1자 사증과 달리 입학통지서 등

35)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② 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 ③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

36) 이에 필요한 서류는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18세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원본과 사본이다. 개인사무로 인해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7)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 국내의 학생 모집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② 외국인 유학생 중국사증 신청서(JW201 또는 202표)의 원

의 입학증명서류만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12) Z자 사증

Z자 사증은 중국 내에서 취업(근무)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이다. Z자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허가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증발급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밖의 신청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³⁸⁾

13) 항구사증

항구사증(口岸签证)은 상술한 사증과 달리 입국이전에 발급받는 사증이 아니라 입국 이후 항구에서公安부가 사무를 위탁한 항구사증발급기관(이하, 항구사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항구사증은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인의 입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한 특수사증제도로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국가안전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외국인의 입국편의, 여행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국외 선진의 인재와 자금의 유입을 위해 존치하자는 견해가 우세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삭제되지 않고 존치되었다.

본 및 사본

38) Z자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발급한 외국인취업허가증 및 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또는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② 중국외국전문가국(中国外国专家局)이 발급한 외국전문가중국입국근로허가증(中国专家来华工作许可证) 및 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③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및 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④ 중국문화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문화예술공연허가서(중국에서 상업 목적의 공연을 하려는 신청인에 해당) 혹은 관련 성(구, 시)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 발급한 초청장(被授权单位邀请函) 혹은 초청확인서(邀请确认函), ⑤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 석유 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邀请信)

항구사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 인도적 사유로 인해 긴급히 중국에 입국하여 긴급상무(商务), 긴급수리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입국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주관부서가 항구에서 사증발급 처리를 하는데 동의한 증명서류의 소지이다. 이 증명서류는 단순 초청서가 아닌 긴급사무를 처리하는데 입국이 필요하다고 증명하는 주관부서의 동의서를 말한다. 셋째, 국무원이 승인한 항구사증업무 처리할 수 있는 항구에서 공안부가 사무를 위탁한 항구사증기관에 항구사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항구에서 항구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01년 3월 공안부와 외교부가 하달한 “항구사증업무 처리 신청조건을 명확히 하는 통지(关于明确开展口岸签证业务申请条件的通知)”에 의하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연 5만명 이상의 대외개방항구는 항구사증발급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무원의 승인을 거친 항구는 총 42개 성시의 62개 대외개방항구이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항구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항구사증 발급이 가능한 항구인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여행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단체여행사증을 항구사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은 2001년 10월 “항구사증기관의 단체사증권 수권에 관한 통지(关于授予口岸签证机关团体旅游签证权的通知)”을 승인하였다. 이 통지에서는 중국 국가여행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된 국제여행사에 한해 여행사 공문과 “단체여행사증명단표”를 첨부하여 항구사증기관에 항구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항구사증을 발급받는 경우보다는 단체여행으로 항구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수속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항구사증발급의 신청 또는 등록된 여행사에 의한 신청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차수는 1차에 한하고 입국 후 최장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사증을 발급받은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로 입국은 불가능하다.

[표 3-4] 일반사증의 종류에 대한 신구법 상세비교

구 분	구 법	신 법	비 고
C자 사증	○	○	신법에서 국제도로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추가
D자 사증	○	○	.
F자 사증	○	○	.
G자 사증	○	○	.
J자 사증	○	○	기자의 체류·거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J1자 사증과 J2사증을 구분함.
L자 사증	○	○	신법에서는 단체사증 신청가능인원(중전 9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M자 사증	×	○	신법에서 신설.
Q자 사증	×	○	신법에서 신설.
R자 사증	×	○	신법에서 신설.
S자 사증	×	○	신법에서 신설하면서 체류·거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S1자 사증과 S2자 사증을 구분하여 규정.
X자 사증	○	○	구법에서는 중전 6개월 이상 거류하는 경우에만 X자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신법에서는 X1자 사증과 X2자 사증을 구분하면서 6개월 미만의 경우의 X2자 사증을 추가하였음.
Z자 사증	○	○	.
항구사증	○	○	.

2. 사증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1) 사증종류

사증에는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일반사증인지에 따라 사증의 종류(category)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사증의 경우에는 일반사증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를 L, F, X, Z 등으로 표시한다.

(2) 입국유효기한과 입국차수

입국유효기한(enter before)은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국하여야 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입국차수가 어떠한냐에 무관하게 유효기간 전에 입국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전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차수(entries)는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사증유효기한 내에 중국 내로 입국할 수 있는 차수를 말한다. 사증의 입국차수는 1차, 2차, 6개월 다차(多次, 복수사증)와 1년 다차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2년 다차, 3년 다차 또는 5년 다차로 발급할 수도 있다. 입국차수가 다차사증인 경우에는 유효기한 내에 차수의 제한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증종류에 따라 다차사증을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체류기한, 발급일 및 발급지

체류기한(停留期限)은 사증소지인이 매차 중국에 입국한 후 체류할 수 있는 최장일수를 말한다. 경유사증은 일반적으로 7일이고 취업, 학습, 정주, 상주기자 및 외교관 등의 체류기한은 “000”으로 표시되나 입국 후에 거류(거주증) 수속을 할 때 거류기한을 확정한다. 그 밖의 사증은 체류기한이 일반적으로 30일이고 필요할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증에는 사증이 발급된 발급일과 발급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소지인의 관련정보

소지인의 성명,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UN통행증 포함)의 번호, 성별, 출생일시 등의 정보가 사증에 표시되어야 한다.

3. 사증발급의 신청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증발급기관(주한중국영사 등)에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서, 신청사유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수속을 처리하고 인터뷰(面談)를 받아야한다. 사증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각기 다른 물론이다. 사증별 구체적 서류는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인터뷰는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증발급기관이 사증신청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실시하게 된다. 면담은 창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상황 또는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는 사증신청인의 신분, 방문목적 등에 질문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해 사증발급의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입국을 위해 사증신청시의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4. 초청서

사증의 종류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발급하는 초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초청서는 통상적으로 피초청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및 중국의 방문사유, 입국시간, 체류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초청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또한 초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사증발급기관이 초청서와 신청인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연락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초청서는 그 초청서를 발급한 단위 또는 개인이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즉 초청서의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초청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초청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청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초청서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발급한 경우,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초청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한다(출입국관리법 제74조 1항). 개인이 아닌 단위가 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모두 몰수하며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하며 그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4조 1항에 의해 처벌한다.

5. 사증발급의 불허

사증발급 불허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첫째, 강제출국 또는 송환출국조치를 받은 외국인이 입국금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이다.³⁹⁾ 강제퇴거 또는 송환출국을 받은 외국인이 입국금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면 사증발급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사증신청자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거나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대한 위해, 사회공공질서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위법범죄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넷째, 사증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중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사실과 다른 초청서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증발급을 거절할

39) 강제출국과 송환출국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재산을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그 증명이 부족하여 중국 내에 합리적인 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사증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섯째, 사증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여섯째, 사증발급기관이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이 사증발급이 거절되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사증발급은 주권국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증발급 불허사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응답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6. 사증발급의 면제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서는 사증발급의 면제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각 면제사유별로 살펴본다.

(1)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정부와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에 적용되는 외국인

중국이 2014년 1월 현재까지 상호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81개 국가에 달한다.⁴⁰⁾ 중국은 상호사증면제협정을 다수의 국가와 체결하였으나 내용을 보면 외교, 공무여권, 공무로 인해 입국하는 일반여권에 대해서 면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히 일부의 국가, 예를 들어 산마리노와는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단체여행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러시아, 그루지야 등과 체결하였다.

(2) 유효한 외국인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공안기관이 발급하는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사증발급이 면제된다. 유학, 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인, 상

40) 자세한 내용은 표 3-1 참조. <http://money.163.com/14/0128/19/9JMU99LU00253B0H.html>

주외국기자는 입국 후에 공안기관에 외국인거주수속을 거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서는 차수에 관계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고 입국 시에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3)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면제받는다. 경유는 직접경유와 간접경유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경유는 외국인이 공항, 항구 등에서 떠나지 않고 법정시간 내에 경유국의 동일 공항, 항구에 진입하고 출국하는 행위를 말하고 간접경유는 외국인이 공항, 항구 등을 떠나 일정한 구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법정시간 내에 다른 공항, 항구에서 출국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경유는 사증이 면제되나 간접경유의 경우에는 경유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경유로서 사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하게 국제여객운송을 하는 항공기, 선박 또는 열차 등 국제여객운송 교통수단으로 경유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 대륙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의 유효한 여객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 내에서 경유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국무원이 승인한 특정구역 내에서는 24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법정경유면제의 경우와 달리 국무원이 승인한 특정구역 내(베이징, 상하이 등)에서는 24시간 이상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 상하이시는 일부국가의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여행증서, 최종도착국의 사증과 출국일시 및 좌석이 확정된 여객표를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공항을 이탈하여 상하이에서 72시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을 면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체류시간 내에 상하이 홍차오 또는 푸둥 공항에서 출국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72시간무사증경유정책(72小时过境免签政策)은 2013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국무원

에 허가를 신청하고 있고 국무원도 이 정책을 확대적용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까지는 베이징, 상하이(푸둥공항, 홍차오공항 포함), 광저우, 청두(成都)⁴¹⁾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2014년 10월 현재까지 다롄(大连), 충칭(重庆), 구이린(桂林), 시안(西安), 쿤밍(昆明)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무한(武汉)시도 현재 국무원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조만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사증정책 범위에 들어가는 국적⁴²⁾을 가진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여행증서를 소지하고 최종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입국조건을 갖추고 있고 확정된 출국일과 여객좌석이 있어 72시간 내에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출국할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72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관광산업과 여행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증없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를 경유하여 1~2일 해당 지역의 관광을 하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등을 최종의 목적지로 하는 관광상품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4) 국무원이 규정한 그 밖의 사유

국무원 주장삼각주지역과 해남도의 여행은 일정한 상황에서 사증발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의 일반여권을 소지하였고 이미 홍콩과 마카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홍콩

41) 청두는 2003년 9월 1일부터 72시간무사증경유를 승인한 4번째 도시가 되었다.

42) 현재까지는 다음의 51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http://www.bcia.com.cn/server/notice/72visafree/72visafree_policy.shtml

과, 마카오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 주장삼각주지역(광둥, 셴젠, 주하이, 푸산, 동관, 중산, 장먼, 자오칭, 후이저우시)에 단체여행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6일까지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다. 둘째, 일부국가⁴³⁾의 일반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중국국가여행국(여유국)의 허가를 얻어 해남에 등록된 국제여행사의 단체여행(5인이상, 한국·독일·러시아는 2인이상)으로 입국하여 해남성에서 15일까지(한국·독일·러시아 국민은 21일까지)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다.

APEC상무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인 2개월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APEC상무여행카드는 3년 다차(多次)사증에 상당하며 이 카드와 일치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다만 유효기간 내에 중국에 여러차례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사증발급을 받을 필요없이 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7. 사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

(1) 사증의 연장

중국 출입국관리법조례에 의하면 사증은 유효기한(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의 연장을 위해 사증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사증의 체류기한은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할 수 있다. 체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소지하고 있는 사증이 사증체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 제20조 4항의 항구사증(口岸签证)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연장이 불가능한 사증은 체류기한을 연장할 수 없고 체류기한 만료이전에 출국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43)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일본, 싱가포르, http://www.gov.cn/fwxx/content_2269730.htm 참조.

둘째,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류기한 만료되는 날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9월 30일이 체류기한 만료일이라면 기간역산을 하여 만료일의 7일 전인 9월 23일 이전(9월 23일 불포함)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셋째, 체류지의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체류연장의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만약 공안기관이 기한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만료 전 출국하여야 한다. 일반사증의 사증 체류기한의 연장 불허결정은 최종결정이므로(출입국관리법 제37조) 불허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가 결정한 사증 체류기간 연장은 해당 입국시기에만 적용되며 사증의 입국차수와 입국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체류 연장기한은 사증의 체류기한(사증기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즉 기존 사증에 180일의 체류기한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연장되는 사증은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 사증의 체류기한을 연장한 후, 외국인인 사증에서 규정한 사유와 연장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2) 사증의 변경발급

사증은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증의 변경발급(焕发)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사유의 변경, 입국 편의의 제공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새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단체사증으로 입국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단체를 이탈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지방 현(縣)정부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의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이 분실·훼손·도난당했을 경우, 지체없이 체류지 지방 현(縣)정부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

구 출입국관리기구에 사증의 재발급(补发)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훼손이란 소지인의 과실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물리적 형태상 손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하고 유실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그 점유를 상실하였고 다시 점유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도난은 제3자의 행위(절도 등)로 인해 소지인이 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훼손·유실·도난이 아닌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사유에 의해서도 변경발급,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예를 들어 단체여행사증으로 입국하여 입국사유가 변경되어 개인사증으로 변경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3) 사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

외국인이 사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외국인이 사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수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여권 혹은 그 밖의 국제여행사증이 사증발급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는 수리확인증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통지한다.

(4) 사증 및 기타 출입국증서의 무효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사증 및 기타 출입국증서가 훼손·유실·도난 또는 발급 후 증서 소지자가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기관은 해당 출입국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⁴⁴⁾ 또한 위조·변조·사취되거나 또는 상술한 것과 같이 증서 발급기관이 효력을 상실시킨 해당 출입국증서는 무효이다. 공안기관은 위조·변조·사취된 증서와 증서 발급기관이 효력을 상실시킨 증서 및 타인이 모용한 출입국증서를 말소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여기서 모용(冒用)은 타인의 적법한 증서를 자신의 증서로서 출입국에 활용한 경우를 말한다. 말소(注銷)는 공안기관이 출입국증서에 말소의 표시(“予以注銷”)를 하여 그 증서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증서의 진위여부 심사는 사증 발급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공안기관 출입국사무소에서 검정한다(출입국관리법 제69조).

8. 임시입국

임시입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는 특정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 또는 긴급한 사유로 중국 경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사증발급면제 규정과 달리 특정사유의 발생으로 임시입국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시입국이란 특정상황 하에서 입국이 필요하지만 사증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 출입국심사기관에게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항구소재도시에 상륙하는 경우이다. 외국선원이 상륙하여 숙박을 요구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심사기관에 서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심사 후

44) 후술하는 체류증, 거류증이 훼손·유실·도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원숙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증서를 받게 되면 항구소재도시에 상륙할 수 있다.

둘째, 상술한 중국을 직접경유하는 사증을 면제받는 경우(출입국관리법 22조 3항)에 공항 또는 항구를 떠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항 또는 항구에서 긴급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진찰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입국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긴급한 상황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입국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심사기관은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한 외국인 본인, 그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업무를 대리하는 단위에 필요한 보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에 임시입국수속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는 없다.

Ⅲ.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1. 외국인의 출입국 시 필요증서

(1)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기관에게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国际旅行证件, 이하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는 여권에 준하는, 출입국관리기관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APEC상무여행카드를 말한다. APEC상무여행카드의 소지인은 유효한 여권과 여행카드에 의해 3년 내에는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입국이 승인된 APEC 회원국 사이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또한 주요한 공항에서 출입

국 시, 출입국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등의 출입상의 편리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1961년 2월에 발효된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ILO 제185호 협약)(Convention Revising the Seafarere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⁴⁵⁾에 선원신분증명서는 여권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중국이 1995년에 가입한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효한 해원증은 해원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여행증서이므로 해원증도 국제여행증서에 해당된다.

(2) 사증 또는 그 밖의 입국허가증명서

사증에 대해서는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 밖의 입국허가증명서는 사증이 아닌 증서로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입국허가를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임시입국수속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는 임시입국허가증명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은 출입국 시 여권·사증 등을 제시하여 심사받을 의무가 있다. 여권은 여권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여행증서이고 사증은 외국인의 진입 또는 경유를 허가하는 증명서이므로 외국인이 입국 시에는 여권, 사증 등의 증서의 제시와 심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출입국심사기관은 제시와 심사를 통해 출입국이 불허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허결정을 할 수 있고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기관이 그 입국불허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2항).

45)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되었으며 발효일은 2005년 2월 9일이다.

출입국변방검사기간(出入境边防检查机关, 이하 출입국검사기관)⁴⁶⁾은 출입국심사 시 제시되는 증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 출입국허가를 할지 여부는 행정재량권에 속한다. 심사 시에는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국증서의 진위와 유효기한을 심사하고 외국인이 출입국 불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출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합법적인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입국 시에는 대외개방항에 설치된 출입국심사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입국심사기관은 항구한정구역(口岸限定区域)에서 관리의 주체이다. 항구한정구역이란 출입국심사·관리 등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출입국항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출입국심사를 실시하는 특정구역을 의미한다. 항구한정구역에 진입하여 출입국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검사기관의 관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출입국심사를 받는 사람은 줄을 서서 심사에 응하여야 하는데 줄을 서지 않고 출입국심사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항구한정구역의 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2조에 1항 1호에 의해 행위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하 10일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인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3.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첫째,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심사를 거절·회피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분실, 도난

46)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출입국변방검사소(出入境边防检查机关)가 이러한 출입국심사(边检)를 담당한다.

등의 사유로 소지하지 못한 경우, 무효의 출입국증서를 소지한 경우, 타인의 출입국증서를 도용한 경우, 위·변조된 출입국증서를 소지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타인의 출입국증서를 도용한 경우, 위·변조된 출입국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출입국심사를 거절·회피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이 불허됨은 물론이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된 사유(사증 발급불허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즉, 출입국을 하는 외국인이 (1)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송환출국되어 아직도 입국금지 기간 내인 경우, (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 전염병에 걸린 경우, (3)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가담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사증을 신청할 때 날조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 체류기간 소요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위의 4가지는 사증발급불허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증발급이 불허되므로 동법 제25조 1항 1호에 의해 유효한 사증이 없어 출입국이 불허될 것이다. 그러나 사증발급이 면제되어 출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상술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사증발급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사증이 발급되었으나 출입국 시 그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입국 후 사증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실제의 경우에는 여행사증 또는 유학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하여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증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속한다. 외국인이 체류·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한 내 출국을 명할 수 있고 그 외국인이 다시 중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넷째, 법률·행정법규가 입국을 불허하는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한 경우이다. 출입국관리조례에서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상술하였듯 출입국검사기관이 그 입국불허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여도 법률상 어떠한 불허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과정에서는 입국불허결정도 행정허가에 속하고 행정허가법에 의해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허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⁴⁷⁾ 입국불허결정이 일반사증 연장, 교체 및 재발급 거부,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 발급거부, 거류기간 연장거부 결정과 같이 그 결정이 최종결정이라는 규정(출입국관리법 제 36조)은 없으나 사실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4. 입국불허 후 귀국조치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국(返回)하여야 할 것이다. 출입국심사기관은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귀국을 명령하여야 한다. 귀국명령의 집행방식은 통상 입국불허를 고지하면서 외국인이 탑승했던 교통운송기구와 같은 종류의 교통운송기구로 탑승하여 귀국을 명령한다. 유효한 여권·사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항구에 도달하여 입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불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국을 명령할 수 있다.

귀국명령의 귀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강제귀국 조치를 한다. 이때에는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은 강제귀국되는 외국인이 교통운송수단에 탑승하여 귀국하는 것을 감독한다. 입국이 불허되어 귀국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지정된 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즉 입국이 불허되면 지체없이 귀국을 하여야 하지만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대기하는 등 지체없이 귀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 항구 등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47) 信春鷹 주편,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2, 68면.

5. 외국인에 대한 출국불허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2조 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하여 출국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유는 법정된 사유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퇴거)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요컨대 출국불허결정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법률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하여 취하는 임시적인 제한조치이다.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서는 출국불허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출국불허사유는 첫째, 형벌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외국인, 출국하려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범죄혐의인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당사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송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둘째, 민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자이므로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이다. 2007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법원의 출국제한조치를 삽입하였다. 2007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법원의 출국제한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아닌 구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출국제한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55조⁴⁸⁾에서는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국제한조치,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 의무불이행 정보를

48) 중국 민사소송법 제255조 被执行人不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的, 人民法院可以对其采取或者通知有关单位协助采取限制出境, 在征信系统记录、通过媒体公布不履行义务信息以及法律规定的其他措施。

언론매체에 공표 및 법률이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그 조치에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출국제한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제한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한 출국제한은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의무, 즉 민사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출국제한조치를 의미하지만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종결된 민사안건일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해 출국제한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법원심리 진행단계에서 중국 국적의 채권자가 외국인의 출국제한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외국인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법원은 외국 국적의 채무자에게 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출국제한을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재판의 확정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외국 국적의 채무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이다. 노동자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노동법과 형법에서 관련규정이 있다. 노동계약법 제30조(49)에 의하면 사용자(用人单位)는 노동계약과 국가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체없이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체불 또는 일부 임금만을 지급한 때에는 노동자는 법에 따라 해당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다. 또한 2011년 개정된 형법 제 276조 2항(50)에 의하면 재산이전, 은닉

49) 중국 노동계약법 제30조 用人单位应当按照劳动合同约定和国家规定, 向劳动者及时足额支付劳动报酬。

用人单位拖欠或者未足额支付劳动报酬的, 劳动者可以依法向当地人民法院申请支付令, 人民法院应当依法发出支付令。

50) 형법 제276조 2항 以转移财产、逃匿等方法逃避支付劳动者的劳动报酬或者有能力支付而不支付劳动者的劳动报酬, 数额较大, 经政府有关部门责令支付仍不支付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罚金; 造成严重后果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거나 또는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크고 정부 관련부서는 지불명령에 응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형, 벌금형 또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노동계약법과 형법의 규정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하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외국투자자의 이른바 비정상적 철수(非正常撤离)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외국투자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때에는 민사적,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사유로서 외국인(투자자)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때에는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비정상적 철수를 방지하여 임금체불의 민·형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법률·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다른 법률·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 결정기관의 외국인 출입국 불허 통지

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이 금지된 인원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 심사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 금지 상황이 해소된 경우, 결정기관은 출국, 입국 금지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출입국 심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여기서 결정기관은 인민법원, 국무원 주관부서 등을 말한다. 결정기관이 출입국 불허결정을 하게 되면 출입국 심사기관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출입국 심사기관이 출입국이 불허된 사람이 출입국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근거하여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출입국 시의 신체검사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기관은 출입국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피검사자와 같은 성별의 출입국 심사인원 2명이 진행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66조). 신체검사를 하는 목적은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의 유지이다. 신체검사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범죄혐의가 있는 자, 법률·법규에서 휴대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한 혐의가 있는 자, 휴대가 금지된 국가비밀문건·서류 등을 휴대한 혐의가 있는 자 등과 같이 출입국을 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 신체검사도 피검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검사자와 성별이 같은 심사인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IV.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

1. 불법출입국 행위

불법출입국 행위는 (1)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 사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한 경우, (2) 타인의 사증을 도용하여 출입국을 한 경우, (3) 출입국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4) 기타 방법으로 불법 출입국하는 경우이다. 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2. 불법출입국을 방조하는 행위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방조한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

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한다(출입국관리법 제72조 1항). 타인의 불법출입국의 방조는 불법출입국을 하는 사람에게 위·변조된 여권, 사증 또는 타인의 여권, 사증 등의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타인의 불법출입국을 방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방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방조행위로부터 위법소득이 있는 때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單位)가 이 행위를 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때에는 몰수하고 이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2조 1항에 의해 처벌한다.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수용, 은닉한 자(자연인), 불법입국을 하는 외국인의 심사 회피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자는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제79조 1항). 단위가 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제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불법출입국에 사용한 교통운송수단 등에 대한 압수

타인이 불법출입국하는 것을 조직, 운송, 방조하는데 사용된 교통기관 및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은公安기관에서 압수한다.

심사 중에 획득한 금지물품(예를 들어, 권총 등의 무기류, 폭발성 물질 등), 국가 기밀문서·자료 및 출입국관리위반에 사용된 도구는公安기관에서 압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⁵¹⁾

51)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으로는 公安部가 발표한 “公安部关于实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中检查、监护和阻止出入境等问题处理办法的通知”가 있다.

V.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 심사

1. 개 요

출입국관리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국국민출입국관리법에서는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여권·사증 및 그 밖의 증서에 대한 심사·발급 등에 중점을 두었고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심사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1995년 9월 1일에 제정한 별도의 행정법규, 즉 “출입경변방검사조례(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이하 출입국검사조례)”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신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제5장에서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심사라는 장을 신설하여 동법 제50조 내지 제57조, 총 7개 조문에서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해 규정하여 법률의 층위에서 이를 규율하여 근거법률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변방검사조례는 신 출입국관리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조례가 적용되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차 등 출입국을 위해 쓰이는 교통운송수단을 의미한다. 출입국항구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중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내륙의 변경지역의 출입국 장소도 포함된다. 항구(口岸)는 본래 국가가 지정한 대외통상을 위한 연해개방항구를 의미하였으나 항구이외에도 공항, 내륙의 변경출입국 지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서도 항구, 공항, 내륙의 변경출입국 지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심사를 받을 의무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에는 입출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국심사는 중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교통운송수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교통운송수단은 당연히 출입국이 금지된다.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심사를 하는 지점은 입국심사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달한 입국항이고 출국심사는 최종으로 출발하는 출국항에서 실시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중복의 출입국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항과 최종출국항에서 출입국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부산에서 선적하여 출발한 선박이 중국 우한(武漢)항에 도달하여 화물을 양륙하였고 양륙 후에 우한항에서 다시 선적한 후 출발하여 부산으로 오는 도중 상하이에서 일부화물을 선적하였다면 최초로 도착한 우한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출국항인 상하이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교통운송수단이 2 이상의 대외개방항구를 거치는 때에 교통운수관리부서 또는 기술적인 원인으로 최초 도달 항구에서 입국심사 수속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최후출발 항구에서 출국심사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관부서의 허가를 얻어 지정된 대외개방 항구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교통운송수단이 중국의 대외개방항구에서 출입국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여 임시로 대외개방항구 이외의 지점에서 출입국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때에도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출입국 하거나 출입국 항구를 변경할 경우,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출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출국심사를 받은 후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입국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출입국 심사기관이 규정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 또는 물품의 선적과 양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승하선, 선적 또는 양륙을 하는 때에는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에 대하여 5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절차

(1)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사전통보 의무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국 전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교통운송수단 출입국관리기관이 교통운송수단 및 적재된 화물과 승선한 여객 등에 유효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것이고 테러행위 또는 불법출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출입국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 주체는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의 대리인(대행업체)이다.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선장, 기장, 열차운행기관사 등의 교통운송수단 운행·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대리인은 교통운송수단의 도달 또는 출발하는 항구의 시간과 체류장소, 승무원, 여객, 화물 등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승무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의 진실한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에 대하여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통운송수단의 대리인, 즉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출입국 심사기관에 등록(備案)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속업체로부터 출입국 심사기관의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57조). 선박의 경우를 보면, 선박의 출입국 대행업체

는 교통부와 소재지 성급 교통(선박운송) 주관부서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격등기증(国际船舶代理经营资格登记证)”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대리업체의 영업허가증(营业执照), 등기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심사소, 성급 출입국심사부문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본 규정에 근거하여 각 운송수단의 특성 및 종류에 따라 신고의 방식, 신고시점, 신고내용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항공기의 경우에는公安부와 민항총국이 2008년에 제정한 “국제항공편 운송인정보 사전보고 실시방법 규정(国际航班承运人员信息预报实施办法的规定)”에서 출입국(출입항)과 관련된 사전통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항공회사는公安부 출입국관리기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국제항공전신 협회(SITA)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통보 정보를公安부 출입국관리기구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입국항공편 비행거리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회사는 입국항에 도달하기 1시간 30분 전에 관련정보를 사전통보하여야 하고 비행거리가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분 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출국하는 항공편은 항공회사나 항공편에 탑승한 여객, 승무원이 출입국 심사 수속을 하기 전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항공회사가 사전통보할 때 출입국 심사 공항과 중국 민영항공기 관리부서는 국제 항공편 및 탑승한 여객, 승무원의 출입국 상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심사협조의무 등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심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는 행정기관의 법정권한의 행사와 법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출입국업무 대행업체의 협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입국이 금지된 자를 탑승시킨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해당자의 귀환(載離)을 책임져야 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입국이 금지된 자를 탑승시켰고 입국이 거절된 경우 또는 거절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된 자는 당해 교통운송수단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를 귀환하여야 한다. 송환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법률위반행위로 인해 외국인의 본국으로 강제송환(遣送) 또는 강제출국과 달리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다. 또한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태우고 출입국을 한 경우, 매 1인당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합법적인 사전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3조 2항). 합법적인 사전조치란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출입국 전에 교통운송수단이 성실하게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객이 출입국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심사하였음과 출입국 금지되는 승객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3) 교통운송수단의 규정노선·항로 항행의무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선박, 항공기는 규정 노선과 항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외국의 교통운송수단은 중국 경내(영해, 영공, 영토 내)에서는 규정된 노선·항로에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각 교통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주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과 항로에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입국 선박, 항공기는 대외개방 출입국항구 이외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대외개방

출입국항 이외 지역에 진입한 경우에는 즉시 부근의 출입국 심사기관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감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도 모든 지역(항구)을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항구를 대외에 개방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대외개방항구 아닌 지역으로 선박, 항공기가 출입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하는 지역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기관의 관리 및 조치를 받아야 한다.

긴급상황 또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이유로 대외개방항구 이외의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1항 3호).

4.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감호

감호(监护)란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대하여 출입국심사기관이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행정규장에 따라 개방항구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된 장소의 출국·입국·체류 또는 통과를 할 때 선박, 열차, 차량 등의 교통운송수단 및 그것에 탑승 또는 적재된 승무원, 여객, 화물과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감독 또는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호제도의 의의는 감호를 행하는 기간동안에는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밀입국·도피에 교통운송수단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혁개방 이후, 1979년 2월에 공안부가 공포한 “외국선박 심사방법 간소에 관한 통지(关于简化外国船舶边防检查办法的通知)”에서는 외국선박의 정박지에서의 정박 또는 정박지에서 부두 사이의 항행기간에 대해 규정하였고 감호조치의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1995년 7월 20일에 공포된 출입국검사조례에서는 선박을 포함한 각종의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감호제도에 대해 규정하였다. 출입국검사조례 제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호를 하는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국경심사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에 감호를 할 수 있다. (1) 출입항을 출발, 도달하는 열차, 외국선박과 중국여객선은 출국심사 후로부터 출국전까지, 입국후로부터 입국심사 전과 심사기간, (2) 열차 및 기타 차량이 국(변)경선의 심사소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운행하는 기간, (3) 외국선박이 중국 내 하천에서 운행하는 기간, (四) 국경심사소에서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3조에서도 출입국변경검사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감호를 실시하는 상황에 열거하고 있다. 다만 출입국검사조례 제21조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고 향후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제53조에서는 “출입국 심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대하여 감호를 실시한다. (1) 출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출국심사를 시작한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하는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2) 외국선박이 중국 하천에서 항행하는 기간, (3) 감호를 실시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선박의 임시승선

물품적재 및 적하, 유지보수작업, 참관 등 사유로 인해 외국선박의 승선과 하선을 하는 사람은 출입국 심사기관에 승선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선증에 대한 발급을 통해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허가된 사람만이 외국선박에 승선하게 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외국선박에 승선할 때에 필요한 허가증이므로 국내선박의 승선시에는 승선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승선증은 외국선박승선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승선증은 승선허가증이라고도 불리며 2005년 공안부가 2005년 공포한 “출입경변방검사규범(出入境边防检查规范)”(이하, 출입국검사규범) 제12조에서 승선허가증의 발급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동 행정규장 동조의 승선허가증은 항구에 정박 중인 외국적 선박에 승선 시에 승선의 허가를 증명하는 증서이다. 외국 선박에서 작업을 위해 수시로 승선하는 사람(부두하역 노동자 등)은 소재단위 인사 또는 보위(保卫)부서의 심사를 받아 국경심사소에 신청을 하고 증서의 발급은 항구소재의 공안국에서 담당한다. 심사소는 유효기한 3개월 이상인 “승선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유효기한이 1개월 미만의 임시승선허가증도 발급할 수 있다. 임시승선허가증은 임시로 외국의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 에 대해서 1개월 미만의 또는 본 항차에만 유효한 승선허가증을 말한다. 일반 승선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3개월, 최장 1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임시허가증의 소지자는 본인의 확인을 위해 임시허가증과 함께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하여야 한다. 승선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선박에 승선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2조에 의해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6. 선박의 연결

중국선박과 외국선박 또는 외국선박 간에 연결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이나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심사기관에 선박 연결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54조 2항). 선박연결 허가는 승선허가증을 통해 외국선박에 승선을 통제하는 목적과 유사하다. 즉 선박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외국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 또는 물품이 옮겨질 수 있고 특히 국내선박으로 옮겨지게 되면 사람의 밀입국·도피 또는 물품의 밀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과 국내선박 또는 외국

선박과 외국선박 간의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005년公安부의 출입국검사규범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국내선박이 외국선박에 연결할 때에는 국경심사소는 선박증서, 선장 신분증과 외국선박연결신청표(搭靠外轮申请表)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심사후 외국선박연결허가증을 발급한다. 외국선박연결허가증의 사용범위, 유효기한 등은 승선허가증과 동일한 기준에서 발급한다.

교통운송수단이 중국선박이나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외국선박을 연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호에 의해 그 책임자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에 처한다.

7.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의 금지

교통운송수단이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을 금지하며, 이미 출입국항에 진입한 경우에는 귀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 “(1)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달 시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입국 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3) 출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탑승한 혐의가 있어 검색·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국가안전, 이익 또는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가 있어 검색·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출입국 심사기관의 관리를 거부하는 그 밖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해소된 후 출입국 심사기관은 관련 교통운송수단을 즉시 통행을 허용시켜야 한다. 또한 허가없이 출입국을 한 교통운송수단, 출입항을 허가없이 변경한 교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귀환명령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83조 1항에 의해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조 3호에서 출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출국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 국민이다. 여기에는 중

국 국민이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심사를 받는 것을 거절·회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중국 국민이 형사판결을 받아 형사벌이 처해졌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안건의 피고인, 범죄혐의인인 경우이다. 그리고 민사안건이 종료되지 않아 인민법원이 출국불허 결정을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민이 국경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출국, 불법거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강제퇴거되어 출국이 금지되는 규정된 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이다. 이 유형에는 외국인이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심사를 받는 것을 거절·회피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사유(사증발급의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입국 후에 사증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셋째, 출국이 허가되지 않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형사판결을 받아 형사벌이 처해졌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안건의 피고인, 범죄혐의인이 경우이다. 그러나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조약⁵²⁾에 따라 수형자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민사안건이 종료되지 않아 인민법원이 출국불허 결정을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불허 결정을 한 경우도 출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동조 5호에서 출입국 심사기관의 관리를 거부하는 그 밖의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교통운송수단 자체(선체, 항공기, 차량)에 대한 심사를 받지

52)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다.

http://mofaweb.mofat.go.kr/inter_treaty_real.nsf/0/f26f30cb749b858449257457000f6cd3?OpenDocument.

않은 경우, 교통운송수단의 탑승자의 증서 또는 휴대물품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선박에 대한 감호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을 가리킨다.

제 5 절 외국인인의 체류 및 거류

I. 개 요

(1) 의 의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장은 외국인인의 체류 및 거류라는 표제로 총 2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체류와 거류이고 제2절은 영구거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여 두 가지 체류형태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이 최초 제정될 때,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입법방식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도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기한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방식을 취하는 것이 외국인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주기한이다. 거주기한이 180일 이하는 체류로 보고 180일 초과는 거류로 본다. 180일 이하의 기한이 기재된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 그 체류기간 내에 중국에 체류할 수 있고 주숙등기 이외의 거류증을 발급받는 등의 별도의 행정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180일을 초과한 기한이 기재된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 그 거류기간 내에 중국에 거류할 수 있으나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사증의 연장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체류 및 거류사유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 진입하여 체류와 거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 또는 거류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사증에는 취업, 학습(유학), 친지방문, 여행, 비즈니스 활동, 인재유치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의 체류·거류의 사유와 기한은 중국 출입국주관기관의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 체류·거류하는 기간 내에서 하는 활동은 체류·거류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체류·거류기한 만료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 만약 체류·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고 계속 체류·거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의해 기한 내 출국에 처한다. 특히 유학사증 등의 비취업류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체류·거류하면서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이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취업류 사증의 소지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증을 발급 받아 취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외국인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절차

외국인 부모가 그 자녀를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국적법에서 중국이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도 체류 또는 거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증 또는 거류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출생자녀의 보호자의 체류 또는 거류증의 만료까지 체류 또는 거류할 수 있다.

중국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자녀출생 60일 내에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여 부모가 체류·거류

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체류·거류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자녀 출생등기 의무인은 그 자녀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의학증명서(出生医学证明)”를 가리킨다. 출생의학증명서란 중국의 모자보건법(母婴保健法)에 규정에 따르면, 의료보건기구와 조산사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의학증명서를 가리킨다.⁵³⁾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사망하면 외국인 체류·거류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하여 외국인 체류·거류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리 발급된다. 첫째, 정상적인 사망인 경우(자연사, 질병사 등)에는 의원 또는 사구(社区)⁵⁴⁾위생서비스센터 및 향진위생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이다. 둘째, 비정상적 사망(교통사고, 살해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공안기관 및 사법기관이 발급하는 사망증명서이다.

사망에 의한 체류·거류증의 말소 신고기한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입법적 불비로서 제76조 1항 3호에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등기, 사망신고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경고처분을 받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 또는 그 발생을 알게 된 후로부터 어느 때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어 벌칙규정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53) 중국 모자보건법(母婴保健法) 제23조 참조.

54) 우리의 동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단위이다.

II. 주숙등기와 체류증

(1) 주숙등기

외국인이 중국의 숙박시설 및 기타 장소에 거주 또는 숙박할 경우 주숙(住宿)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여 겪게 되는 행정적 절차로서 많은 외국인이 주숙등기를 통해 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를 발급받는 수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1985년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国人处境入境管理法)에서 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된 외국인 체류관리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1987년 국무원이 비준하고, 공안국이 공포한 《숙박업치안관리방법(旅馆业治安管理办法)》에도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주숙등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공안부는 “공안파출소 외국인 주숙등기 관리방법(시행)(公安派出所外国人住宿登记管理办法 (试行))”을 제정하고 중국 경내에서 주택구매 및 임대 거주 그리고 관련 기관 및 타인의 집에 숙박하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이 제도는 여전히 존치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서는 숙박업소와 외국인의 주숙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경내의 숙박업소(호텔, 여관, 초대소 등)에 투숙할 경우, 숙박업소는 숙박업 치안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1항). 그리고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주소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외국인이 별도로 주숙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그 밖의 장소(중국 국민의 집, 외국인 집 또는 외국 기관 등)에서 거주 또는 숙박하는 경우에는 투숙 후 24시간 내⁵⁵⁾에 본

인 혹은 유숙인(숙박장소의 제공자), 유숙기관(숙박장소의 제공기관)이 소재지의 공안 기관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조직관리조례(公安机关组织管理条例)”에 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숙등기를 접수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가 설치된 시(市)공안국은 공안분국(公安分局)을 설치하고 시, 현, 자치현 공안국은 공안파출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현재 공안파출소 외국인 주숙등기 관리방법(시행)에 따르면 공안파출소(공안파출소 호적실(户籍室))에서 주숙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사구(社区) 경무실(警务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⁶⁾

숙박업체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치안 관리처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에 거주 또는 숙박하면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전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서는 500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2000 위안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였다. 현재 외국인의 주숙등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주숙등기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주숙등기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⁵⁷⁾

55) 외국인출입국관리세칙 제38조에서는 농촌지역 숙박하는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주숙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56) <http://news.sina.com.cn/o/2012-05-28/184124493305.shtml>

57)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칭다오에서 최근 몇 년의 주숙등기 의무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300건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http://news.qingdaonews.com/qingdao/2013-07/05/content_9838823.htm 참조.

[그림 3-2] 중국의 임시주숙등기표

No. 0

临时住宿登记表
REGISTRATION FORM OF TEMPORARY RESIDENCE

英文姓 Surname	英文名 First Name	性 别 Sex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国 籍 Nationality	出生日期 Date of Birth
证件类型 Type of Certificate	证件号码 Certificate No.	签证类别 Type of Visa
签证有效期 Valid Visa	抵达时间 Date of Arrival	离开时间 Date of Departure
住房种类 Housing Status	住 址 Address	

派出所联系电话:

(2) 체류증

신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면서 이에 대등하여 기존의 거류증에 추가하여 체류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80일 이하의 체류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체류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거류증과 달리 체류증은 체류하는 외국인 일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체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유는 첫째, 사증이 면제되어 입국한 외국인이 외교·공무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증면제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서는 사증이 면제받는 사유를 4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2호에서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사증면제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고 동조 1호의 “중국정부와 그 밖의 국가정부가 체결한 상호사증면제협약에 따라 사증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와 동조 3호의 “환승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 항공기, 선박,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과해 제

3국이나 지역에 가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입국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구역 내에서의 체류시간(상하이, 베이징, 선전, 청두 등의 무사증 경유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72시간)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와 제4호 “국무원이 사증면제에 관해 규정한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유형에서 사증면제기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에는 외국인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외국선원 및 그 가족이 선박의 정박항 소재 도시를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의하면 외국 선원 및 그 동행 가족이 정박항 소재도시에 임시 상륙하는 경우에는 임시입국수속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임시입국을 허가받아 정박항 소재 도시에 체류하더라도 그 도시를 이탈할 때에는 임시입국허가와 별도로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그 밖에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상황이란 중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중국 경내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거류사유가 종료하였으나 인도적 사유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 국내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가 부모의 체류·거류사유가 종료하였으나 계속해서 중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체류증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체류증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권 및 국제여행증서가 체류증 발급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접수확인증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체류증서 신청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통지한다.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고 180

일을 초과하여 거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Ⅲ. 거류증

1. 의 의

외국인 거류증(거주증)은 주관기관(공안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거류(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문서를 말한다. 2005년 이전에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가 외국인 거류증과 임시거류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여권과 서로 분리되어 발급되는 독립된 문서 형식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부착식 거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거류허가 유효기한 내에서 중국 국내에 거류할 수 있고 출입국에 있어서도 복수의 횟수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출국 전에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장기(180일 초과)로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내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사증의 종류에 맞는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림 3-3] 외국인거류증



2. 거류증의 유형

2010년 6월 1일부터 공안부는 외국인 거류증 발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거류증의 종류는 총 5종류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거류증(工作类居留证件), (2) 중국 국내에서 장기 유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유학거류증(学习类居留证件), (3)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언론매체의 외국신문기자에 발급하는 기자거류증(记者类居留证件), (4) 가족방문을 위해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중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나 중국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또는 양육위탁 등을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가족방문거류증(团聚类居留证件), (5) 장기간 친척 방문, 취업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부모·만 18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부모 및 그 밖의 개인사무로 인해 중국에서 거류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개인사무거류증(私人事务类居留证件)이다.

취업거류증은 Z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거류증이고 유학거류증은 X1자 사증을 발급받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거류증이다. X2자 사증은 18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받는 사증이므로 180일을 초과하는 거류를 위해 발급받는 유학거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자거류증은 J1자 사증에 대응하는 거류증이고 가족방문거류증은 Q1자 사증에 대응하는 거류증이다. 개인사무거류증은 S1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거류증이다. 거류증은 장기거류를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므로 단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상술한 별도의 체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증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3. 거류증 등기사항(기재사항)

외국인 거류증의 등기사항은 첫째, 외국인의 기초정보, 즉 소지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다. 둘째, 거류사유와 거류기한이다. 거류사유는 외국인의 중국 내에서의 거류목적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거류 시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유학이 거류사유로 기재된 거류증을 가진 자는 취업이 제한되어 거류사유를 통해 외국인의 관리, 심사를 하게 된다. 셋째, 발급일과 발급지이다. 넷째,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 번호이다. 기재번호는 거류증과 거류증이 부착되어 있는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서의 상호 대조를 가능하게 한다.

거류증의 등기사항의 변경, 예를 들어 성명, 거류사유, 거류기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 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변경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고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4. 거류증의 신청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할 때에는 입국 후 30일 내로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사유와 관련 있는 서류 및 지문 등 생체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2항 1문).

신청사유와 관련 있는 서류는 표1에서와 같이 거류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표 3-5] 거류증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베이징시 공안국)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취업 거류증	베이징에서 취업한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② 거주지과출소 또는 숙박업소에 발급한 유효한 “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 ③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외국인사증증서신청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2촌(寸, 약 3.33cm) 백색배경의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사진 1장, 여기에는 고용단위의 인장이 날인이 있어야 함. ④ 베이징의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등기되었다는 증명, 단위의 성질에 따라 연간 정기심사를 받은 영업집조(허가증) 부분, 외국(지구)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 사업단위법인증서,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기구 대표처 영업허가증, 학교 설립허가증명서 등. ⑤ 인력자원사회보장주관부서 또는 외국전문가주관부서가 발급한 “취업증(就业证)”, “외국전문가증(外国专家证)”, “해외유학생취업거주증(海外留学人员工作居住证)” 등 취업이 허가된 증명서.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한 외국인은 문화체육주관부서가 발급한 연출허가서, 관련서류 및 명단. ⑥ Z자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은 자는 중국정부 관련 주관부서가 확정한 외국인 고급인재와 긴급히 필요한 전문가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 ⑦ 거류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외국인은 베이징출입국위생검역부서(베이징중국여행위생보건센터)가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身体健康证明)”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p>⑧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总队)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신청서류</p>
<p>개인 사무 거류증</p>	<p>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베이징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장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 또는 그 밖의 개인사무로 베이징에 거류가 필요한 외국인.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p>	<p>①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② 거주지파출소 또는 숙박업소에 발급한 유효한 “임시주숙등기표” ③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외국인사증증서신청표, 2촌(寸, 약 3.33cm) 백색배경의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사진 1장. ④ 가족방문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가족의 거류증을 제출하여야 함. S1자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국가 주관부서가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 입양증명서 또는 관련 파출소, 정부기구단위 인사부서, 소속국 주중대사관이 발급한 친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공증 등을 제출할 수 있음. S1자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가족이 발급한 중국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용과 중국법률준수담보서(피방문자가 만 18세미만인 경우 신청인 스스로 담보서 작성). 외국주관부서 또는 공증부서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1) 그 밖의 개인사무로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사무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S1자 사증으로 입국하지 않고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주관부서 또는 공증부서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p>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p>등을 제출하여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60세 이상의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적의 화교는 본인명의의 주택증명서 또는 공증을 거친 주택매매계약서, 자금출처증명서(본인명의의 인민폐 5만 위안 이상의 예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베이징에서 의료구제·진료를 받는 외국인은 현금 이상 또는 2급 甲등 이상의 의료기구가 발급하는 6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또는 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간병인은 신청인의 가족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술한 의료기구가 발급하는 간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⑥ 거류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베이징출입국위생검역부서(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가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p> <p>⑦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부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신청서류</p>
가족 방문 거류증	베이징에서 중국 국민, 영구거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외국적 가족구성원 및 외국적 화인, 화교가 위탁양육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② 거주지파출소 또는 숙박업소에 발급한 유효한 “임시주숙등기표”. ③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외국인사증증서신청표”, 2촌(寸, 약 3.33cm) 백색배경의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사진 1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관련국가 주관부서가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 입양증명서 또는 관련 파출소, 정부기구단위 인사부서, 소속국 주중대사관이 발급한 친족관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p>만 18세 미만의 외국적 자녀.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p>	<p>계증명서 또는 관련공증 등을 제출할 수 있음. Q1자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가족이 발급한 중국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용과 중국법률준수담보서(피방문자가 만 18세미만인 경우 신청인 스스로 담보서 작성). 외국주관부서 또는 공증부서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p> <p>⑤ 방문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실제 거주지 6개월 이상의 거주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국민을 방문하는 경우, 베이징시호적부 또는 임시거주증 및 주민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2. 화교를 방문하는 경우, 중국여권과 국외거주증명서 및 파출소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임시주숙등기표” 또는 베이징의 재직단위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업무증명서(재직증명서) 3. 홍콩, 마카오 거주민을 방문할 경우에는 홍콩마카오주민대륙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및 파출소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임시주숙등기표” 또는 베이징의 재직단위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업무증명서(재직증명서) 4. 대만거주민을 방문할 때에는 “대만주민대륙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中华人民共和国旅行证)” 및 파출소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 또는 베이징의 재직단위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업무증명서(재직증명서).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p>5. 중국에서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방문할 경우에는 “외국인영구거류증(外国人永久居留证) 및 파출소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 또는 베이징의 재직단위가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업무증명서(재직증명서).</p> <p>⑥ 위탁양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하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아동부모의 여권사본, 부모일방 또는 쌍방이 중국인인 경우에는 경외거주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공증을 거친 신청인부모의 위탁서, 위탁양육인의 수탁서, 수탁서에는 부양을 위탁하는 내용, 보호자(후견인), 위탁양육연한 등이 명기되어야 함. 3. 수탁인은 베이징시 호적부 또는 임시거주증명서 및 주민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다. <p>⑦ 거류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베이징출입국위생검역부서(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가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p> <p>⑧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부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신청서류</p>
유학 거류증	베이징에서 장기로 유학하는 외국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 ② 거주지파출소 또는 숙박업소에 발급한 유효한 “임시주숙등기표” ③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외국인사증증서신청표”, 2촌(寸, 약 3.33cm) 백색배경의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사진 1장, 여기에는 모집단위(교육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④ 모집단위가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⑤ X1자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사증신청표(JW201/JW202)”를 제출하여야 함. ⑥ 거류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베이징출입국위생검역부서(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가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总队)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신청서류

출처 : 베이징시 공안국 공식인터넷 사이트.

http://www.bjgaj.gov.cn/web/detail_getZwgkInfo_371474.html.

※ 각 지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정을 하고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한의 거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 2항 2문). 거류증은 후술하듯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류증을 발급하게 되지만 발급불허결정은 최종결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다.

중국에서 거류증 신청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또한 거류증 신청시 대기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상하시는 그간 일부 지역에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 통행증의 인터넷 접수를 외국인 거류증 신청에도 활용하여 거류증 예약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이 거류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 예약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정해진 예약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류증 신청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⁵⁸⁾ 물론 상하이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상하이시 인터넷 출입국관리 홈페이지(유학거류증 신청)

5. 거류증의 유효기한

출입국관리법 초안에서는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체계에서는 거류증의 최단 유효기한을 180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초안심사과정에서 단기 취업을 하는 외국에 대해서는 180일 미만의 거

58) <http://crj.police.sh.cn/>

류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취업류 거류증과 비취업류 거류증을 달리 규정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 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이고 최장 5년으로 하였고 비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으로 하였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 3항).⁵⁹⁾ 따라서 취업목적의 Z자 사증의 경우 180일 이하의 단기 Z자 사증이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거류증의 발급불허

거류증의 심사과정에서 거류증의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항 1호 내지 5호에서 그 불허사유를 정하고 있다. 첫째, 소지한 사증종류가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이다. 단지 180일 이하의 체류만이 가능한 사증일 경우 거류증의 발급은 거부된다. 둘째, 신청과정에서 허위 또는 위조한 경우이다. 여권 또는 사증 등의 출입국증서 또는 합격통지서 등의 증명서류를 위조하였거나 타인의 증서를 자기의 증서인 것처럼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거류증의 발급은 당연히 불허된다. 셋째, 관련 규정에 따라 과년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각 거류증 유형에 따라 거류증 발급목적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거류증은 발급이 거부된다.

넷째, 중국의 관련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국내에 거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다.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고 거류증 발급이 불허되지는 않을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3호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대한 위해, 사회공공질서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위법범죄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59) 규정상으로는 거류증 유효기간을 최장 5년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있다. 이 규정에 비해 중국의 법률·행정법규의 위반에 따른 거류 부적합결정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사적 불법행위 가능성이 없어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중국에 입국하여 거류증을 발급받기 전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중국의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예를 들어, 집회시위법 위반)를 한 경우에는 거류증 발급이 불허되면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거류증의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 출국이 사실상 강제되게 된다. 그러나 단순 행정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본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문이나 불허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곧 최종결정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다섯째, 거류증 발급기관이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밖의 경우이다. 이 규정은 전 각호의 이외의 사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급기관에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주는 포괄규정(兜底条款)이다.

7. 체류에서 거류로의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31조 2항에서는 일정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체류에서 거류로의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즉,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원인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를 거류로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은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국무원과 관련부처는 “국무원 관공청 공안부·외교부 등 부문의 외국적 고급인재와 투자자를 위한 입국 및 거류편리를 제공 규정을 전달하는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公安部外交部等部门关于为外国籍高层次人才和投资者提供入境及居留便利规定的通知)(이하, 전문인재 편리제공규정”⁶⁰⁾를 제정하여 외국적의 고급인재와 투자자에 입국 및

거류의 편의 제공하여 고급인재의 영입과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외국적 인재, 그 배우자 및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입국과 거류의 편리를 제공하여 여행·방문·유학사증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사증으로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류증의 발급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는 1년 이상의 거류증 발급이 어려운 반면 고급인재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2~5년의 비교적 장기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2항은 체류에서 거류로 변경을 허용하는 전문인재 편리제공규정의 법률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류에서 거류로의 변경이 가능한 외국인인 다음의 총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성(부)급 국가기관이 초청(초빙)한 고급고문 및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외국이 체결한 국가급과 성(부)급 과학기술 합작프로젝트·중점사업계약·인재교류프로젝트의 고기술·고급관리인원, ②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또는 특별한 공헌이 있는 사람 및 행정부 간 무상원조계약을 집행하는 사람, ③ 국가와 성(부)급 과학연구기구·중점고등교육기관에서 초빙한 학술·과학연구 석학 및 관련단위에서 초빙한 부교수·부연구원 이상의 직책 또는 그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술·과학연구 학자, ④ 기업·사업단에서 부총경리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고급관리인원과 중영전문기술인원, ⑤ 서부지역 또는 중부지역의 국가빈곤구체 개발사업 중점현(縣)에 1백만위안 이상을 투자하거나 또는 그 밖의 지역에 3백만위안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 및 전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 또는 그 밖의 경제조직에서 파견하여 중국에 온 관리인원 및 전문기술인원, ⑥ 국제 중요과학상을 수여받은 외국적 화교와 그 밖의 뛰어난, 중요한 외국적 화교.

60) 国办发〔2002〕32号.

체류에서 거류로의 변경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허가가 아닌 상위행정기관으로서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거류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취업거류증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비취업류 거류증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외국인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서 출국하여야 하지만 거류기간 내에 거류증의 거류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을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거류증의 기한만료 전 3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증의 체류기한 연장은 기한만료 전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거류증은 최소한 기한만료 전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거류증은 최장 5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류증의 연장심사에는 보다 장기의 시간이 필요한 점이 고려되었다.

둘째 거류증의 연장은 거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거류증에는 발급지가 기재되고 발급지는 일반적으로 거류지이다. 셋째,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신청사유와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류의 연장은 거류사유가 현재에도 존속하거나 또는 새로운 거류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거류를 연장하려고 하는 사유 또는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류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충분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류연장 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사증 체류기한연장 불허결정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의해 거류의 연장 불허결정은 최종결정으로 그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외국인이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명서 혹은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사무기구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또는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자가 진행해야 하는 수속 및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1차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사증이 사증발급을 위해 보관돼 있는 경우, 수리확인증에 의해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증과 거류증의 기한연장·변경발급·재발급이나 체류사증을 신청할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 가족, 관련전문서비스기관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①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 국내 체류·거류 기록에 이상이 없는 경우, ③ 초청한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

외국인의 거류증 신청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고급인재, 긴급히 필요한 전문가 및 전향 1호(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초청 단위와 개인, 신청자 가족, 관련 서비스기관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9. 거류증 등의 출입국관련증서의 부정발급

출입국관리법 제73조 1항에 의하면 사증, 체류·거류증 등 출입국증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 2천위안 이상 5천위안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출입국증서의 부정발급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중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출입국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증, 체류·거류증을 부정발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저 출입국증서는 사증, 체류·거류증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통행증, 홍콩마카오 동포 귀향증, 대만여행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권의 부정발급은 여권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여권법 제17조).

단위가 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 인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3조 1항에 의해 처벌한다.

10. 불법거류 및 그 방조

불법거류는 유효한 사증 또는 체류·거류증 없이 중국에 체류·거류하는 경우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거류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거류에 속한다.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만약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총액 1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거류 매1일당 5백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78조 1항).

미성년자의 불법거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 2항). 미성년자의 불법거류는 그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불법거류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한 후 특정한 사유로 인해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중국에 거류하게 하고 부모가 출국하였는데 거류증 수속을 밟지 않고 거류하였거나 거류증 갱신을 하지 않아 기한을 도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자나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

이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만 16세 이하 외국인이 불법거주 할 경우, 보호자와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1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경고처분을 받은 행위인이 위법행위를 개정하고 관련수속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병과되지 않는다.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의 수용 혹은 은닉,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의 심사회피에 대한 방조 또는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위법하게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 1항). 수용 또는 은닉은 행위인이 상대방이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은닉거소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입국·불법거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수용 또는 은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출입국증서에 대한 위법한 제공은 출입국증서의 매매, 임대, 위·변조 등의 방식으로 불법입국·불법거류자를 위해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불법거류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행위의 주체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될 수 있고 공문서의 위·변조행위, 교사행위 자체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단위가 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제79조 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IV. 외국인의 취업과 취업거류증

1. 관련 법규

(1)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

중국에서 취업거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허가를 받아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就业证)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 41조에서는 취업허가와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을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⁶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사용자(用人单位)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외국인을 위해 취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후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우선 취업류 사증(Z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을 하거나 또는 사증변경을 하여야 하고 입국 후 또는 사증변경 후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취업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취업류 사증을 소지하고 외국인 취업(허가)증 및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합법적 취업을 할 수 있다.

취업거류증을 받는 별도의 방법은 “외국전문가 재중취업허가절차규정(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办理规定)”⁶²⁾에 의해 외국전문가증을 취득하여 취업거류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전문가가 보다 편리하게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외국전문가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규범성문건이다.

61) 劳部发[1996] 29号, 이 규정은 1996년 1월 22일에 노동부,公安부, 외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가 공동으로 제정·공포하였다.

62) 外专发(2004) 139号, <http://www.safea.gov.cn/content.php?id=12742238>.

(2) 중국 국내 취업 지도목록

중국은 인구대국으로서 외국인의 국내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반 노동자의 국내취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국외 전문가, 고급인재에 한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2조 1항에서는 ‘국무원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서과 외국전문가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와 인력자원 수급상황에 근거하여 외국인 중국 국내 취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변화상황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취업지도목록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곧 제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³⁾

2.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거류증을 받을 수 있고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즉 학자금 조달(勤工助学), 인턴활동에 한하여 중국 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학자금 조달, 인턴활동을 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 경우, 유학생 또는 사용자 측에서 학교 측에 신청을 하여야 하여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조례 제22조). 동의를 얻은 후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유학거류증에 학자금 조달을 위한 노동 또는 인턴활동 장소·기한 등 정보를 기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학생의 제한적으로나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유학생은 학교의 동의와 공안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학 중인 학교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교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63) http://www.gov.cn/xinwen/2014-06/12/content_2699937.htm.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내 유학생들은 교내 근로를 통한 학자금 조달, 학내 연구소 또는 이른바 교변기업(대학벤처기업), 공식적으로 학교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한국기업에서의 인턴활동 등은 학업조건 개선, 경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2조 2항에서는 국무원 교육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 학자금 조달 취업관리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범위와 기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입법위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행정법규는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학생 학자금 조달을 위한 취업 관리방법(高等学校生勤工助学管理办法)”은 외국 유학생 학자금 조달 취업관리 규정의 제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동 방법에 따르면, 학자금 조달목적 근무처는 크게 교내근무처와 교외근무처로 나뉘는데 교내근무처에 관련된 규정만 살펴본다. 학교는 가계경제가 곤란한 학생은 월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학기 내의 전체 교내 매월 필요한 학자금 조달을 위한 근로의 총 근로시수를 예측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교내에 근무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그 근무처의 수는 학생의 근로시간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이 근로로 인해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주 8시간, 매월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을 명시하였다.

3. 외국인의 불법취업

(1) 의 의

외국인이 상술한 취업허가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취업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불법취업의 상황을 보면 첫째, 취업허가와 취업거류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노동을 한 경

우이다. 출입국관리법 초안에서는 취업허가와 취업거류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그 밖의 임금(劳动报酬)을 받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임금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것이 불법취업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 견해가 받아들여져서 제정법률에서는 취업허가와 취업거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노동을 한 경우, 임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취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⁶⁴⁾

둘째, 취업허가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한 경우이다. 외국인의 취업허가에는 취업이 허용된 근무처와 노동기한 등에 관한 일정한 범위가 지정된다. 외국인 취업허가에서 정한 그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을 한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학자금 조달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근무처 범위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노동을 한 경우이다.

(2) 외국인의 불법취업에 대한 벌칙규정

출입국관리법 제 80조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또는 법을 위반한 외국인 불법취업알선·고용에 대하여 외국인, 알선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다.

불법취업한 외국인은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한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자는 총액 5만 위안의 과태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한 사람 매 1인당 5천 위안, 알선 고용단위(업체)에 대하여는 총액 10만 위안의 과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한 사람 매 1인당 5천 위안의 과태료에 처

64) 信春鷹 주편,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2, 109면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은 몰수(沒收)된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단위(사용자)는 총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 매 1인당 1만 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그 위법소득은 몰수된다.

V. 체류증·거류증의 휴대의무 및 검사에 응할 의무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국내에서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 또는 외국인 체류증 또는 거류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휴대한 상태에서 공안기관의 검문(檢問)에 응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 38조). 그러나 사증이 면제되어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이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서이다. 반면 체류증과 거류증이 없는 단기 체류의 경우에는 사증이 부착되어 있고 체류증 또는 거류증은 여권에 부착되고 분리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의 휴대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공안기관의 검문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폐지된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 28조에서는 공안기관 외사경찰은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여권 및 그 밖의 증명서를 검사할 권한이 있고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거주민신분증법(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제15조에서는 경찰이 법에 의한 직무수행 시 몇 가지 사유⁶⁵⁾가 발생하면 법집행증서(執法证书; 경찰신분증)

65) 그 사유는 ① 위법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에 의해 현장관제를 실시할 때에 관련자의 신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사회치안을 위해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 관련자의 신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법률이 신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정황에 대해 규정한 경우이다.

를 제시하고 거주민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중국 국민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체류·거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고 외국인도 자신의 신분증인 여권 및 그 밖의 국제여행증을 검사받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의 중국 국내에 거류하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국내의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류증을 교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 2항). 문제는 폐지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조례 제24조에서는 매년 한차례 지정된 시간에 거류지 공안국에 외국인 거류증을 검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규정된 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을 매년 한차례 공안국 교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제76조 1항 2호에 있는 이에 대한 별칙규정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에 대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1항 1호, 2호).

VI. 외국인 진입제한구역

1. 의 의

중국에서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진입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 또는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류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하여 개방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할 때에는 공안기관에 여행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시장성(西藏省, 티벳)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티벳 입경허가증(Tibet Tourism Bureau)를 사전에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정기간⁶⁶⁾ 동안 티벳 입경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도 외국인의 진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의 거주지역과 외국기구의 사무실 설치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기한 내 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역시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라는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남용될 여지는 있지만 중국 시장, 신장 등의 서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 진입제한 구역의 진입행위에 대한 제재

외국인 진입제한 구역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외국인은 허가 없이 그 외국인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외국인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없이 외국인 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 관련기관은 즉시 퇴거를 명하게 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란 즉시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진입을 시도하거나 또는 제한구역 내에서 촬영, 기록 등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외국인이 불법 확보한 문자기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및 그 밖의 물건은 몰수 또는 폐기하고 이에 사용된 도구는 압수한다.

외국인 및 외국기구가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 이전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 및 강제이전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책임자를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조치한다.

66) 중국의 큰 정치행사, 예를 들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기간 또는 전후에는 일반적으로 티벳 입경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강제이전은 일종의 행정강제조치로서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 대집행에 해당될 것이다.

VII. 영구거류

1. 의 의

중국정부는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장기적인 또는 영구적인 거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외국에서 공급되는 노동인구를 최대한 억제하여 중국인의 안정적인 고용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외국 국적의 인재, 투자자 등의 용이하고 장기적인 중국거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도 외국인의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거주(영주)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외국인 재중국 영구거류 심사허가관리방법(外国人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이하, 영주심사허가관리방법)를 제정하여 이른바 중국판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등 일정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구거류자격을 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의 영주거류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구거류증 받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후 발급비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⁷⁾ 중국판 그린카드 제도가 활성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규범의 개정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7) http://finance.ifeng.com/a/20140626/12607790_0.shtml

2. 영구거류자격 취득요건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뉜다. 중국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을 것과 혼인 또는 불가피한 친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 영구거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중국경제·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영구거류조건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국가는 아니다. 미국과 같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에 비해 중국의 그린카드제도는 매우 엄격하다. 통상적으로 이민이 용이한 국가(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보다는 용이하게 그린카드를 신청·취득할 수 있다. 국제이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이 영구거류자격제도를 설립한 목표는 국제적 인재·자금 및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국사회에 일정한 공헌이라는 조건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공헌을 평가하기 이전에 신청자가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일정한 공헌’에 대해서는 2004년에 공포한 영구거류심사허가관리방법 제6조 제1항에서 다음의 열거한 조건(동조항 1호 내지 7호)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연속3년 투자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한 경우. 여기서 안정적 투자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실제 등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의 투

자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① 국가가 공포한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 68)에서 장려류(類)산업에 대한 합계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 ②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곤개발중점현(縣)에 합계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 ③ 중국 중부지역에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④ 중국에 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 (2) 중국에서 부총경리, 부공장지배인 등 직무이상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직함⁶⁹⁾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동등의 대우를 받는 자가 연속하여 4년을 그 직무를 담당하였고 4년 중 3년 이상을 중국에 거주하였고 납세기록이 양호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직책도 중국의 다음의 기업 또는 대학 등에 한정된다. ① 국무원의 각부문 또는 성급인민정부 부속의 기구 ② 중점고등교육 학교 ③ 국가중점프로젝트 또는 중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사업단위 ④ 고급 신기술 기업, 장려류(類) 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
- (3) 중국에 중대하고 특별한 공헌과 국가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 (4)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에 이전의 미성년자녀
- (5) 중국공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연속하여 만 5년동안 유지하였고 중국에서 연속하여 5년을 거주하였으며 매년 중국에서 9월 이상을 거주하는 자로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6)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하는 경우
- (7) 경외(境外)에 직계친족이 없고 경내(境內)의 직계친족에 의탁하

6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란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산업, 제한하는 산업, 장려하는 산업을 나누어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목록을 가리킨다.

69) 부고급직함(副高级职称)이란 副자가 들어가는 고급직함을 말한다.

는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중국에 연속하여 5년을 거주하였고 매년 9개월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가 있는 경우. 이 조건에서 말하는 기간은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본다.

3. 영구거류증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자는 영구거류증(永久居留证件)을 발급받게 된다. 이 영구거류증은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되어 중국민의 신분증과 같게 취급된다. 따라서 여권에 부착되는 거류증과 성격을 달리하며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는 중국민이 가지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같은 공법적 권리를 제외한 취업, 취학, 주택, 출입국, 각종의 사회보험 및 복지 등에 있어서 중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병역의 의무 외의 납세의 의무 등 중국 국민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자는 거주기한, 거주지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호구제에 의해 거주이전의 제한을 받는 중국 국민에 비해 영구거류증을 받는 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다.

또한 사증(D字签证)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과 같은 취업의 자유를 누려 취업사증, 취업허가 등이 필요치 않게 된다.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자는 출입국 시에도 사증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출입국 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영구거류증 예시



4.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발급받은 영구거류증만 유효기간 5년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이다. 유효기간의 만료, 내용의 변경,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연장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이 상실되지 않는 한, 1개월 이내에 연장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5. 영구거류자격의 취소

(1) 중국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준 경우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9조에서는 영구거류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준 경우이다.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면 국가 안전에 위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행한 때에는 영구거류자격을 취소한다. 단순히 행정법률위반과 같은 경미한 법률위반을 하였다고 바로 영구거류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위해를 주는 범죄행위 등과 국가의 안전과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형사범죄를 행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조치와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의한 강제퇴거조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출입국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벌이고 후자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종류 중 하나이다. 중국 형법에서는 형벌의 한 종류로 강제퇴거(강제출국)을 두고 있다. 강제퇴거는 다른 형벌과 병과할 수 있고 단독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영구거류자격을 기취한 자가 강제퇴거처분 또는 강제퇴거처벌을 받은 경우, 그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인지 아니면 형법위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강제퇴거처분 또는 강제퇴거처벌을 받게 되면 영구거류자격은 취소된다.

(3) 허위의 정보로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술한 영주자격취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기적 행위로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한다.

(4) 거주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에 미달하였을 경우

영주심사허가관리방법 제20조에서는 영구거류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중국에서 누적 체류기간인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거주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廳)·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년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음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영구거류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총 누적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6 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I.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강제조치

1. 중국의 행정강제 제도

2011년 6월 30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이하, 행정강제법)⁷⁰⁾ 제2조에서는 행정강제를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중에 위법행위의 제지, 증거훼손의 방지, 위해발생의 방지, 위험확대의 통제 등을 위해 자연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 임시적 제한을 하거나 또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의 재산에 대해 임시적 통제를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강제조치는 (1) 자연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 (2)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대하여 봉인하는 것, (3) 재물의 압류, 예금·송금의 동결 등을 말한다. 반면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이행의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의 행정강제와 비교할

70)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9호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때,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유사하고 행정강제집행은 행정강제집행과 유사한 개념이다.

행정강제조치는 보통 행정성, 임시성, 보조성, 물리성(직접성)이라는 법률적 특성 또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성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목적으로 행정관리과정에서 실시하는 행정권이라는 뜻이고 임시성은 행정강제조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는 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보조성은 행정강제조치가 행정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위법행위를 제지하기에는 급박한 상황에 행해진다는 점을 의미하고 물리성은 당사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행정권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행정명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그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강제조치

출입국관리법 제6장에서 개별조항에 규정된 행정강제는 현장검문(当场盘问), 계속신문(继续盘问), 구류조사(勾留审查), 활동범위 제한(限制活动范围), 강제퇴거(강제출국)조치(遣送出境措施)이고 모두 행정강제조치에 해당된다. 다만 현장검문은 신체자의 임시적 제한을 동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관리조치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현장검문을 제외한 다른 행정강제는 상술한 행정성, 임시성, 보조성, 물리성의 법적 특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행정강제조치에 속하고 각 행정강제조치별로 그 요건과 행정강제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구류조사는 행정처벌로서의 구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시되는 신체자유를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출입국관리법에서만 인정되는 독특한 제도이고 우리의 피의자 유치와 유사할 것이나 유치기한이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구속수사에 오히려 근접해 있다.

이러한 행정강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심사기관이다. 출입국관리는 출입국심사, 출입국증서의 발급, 국내 외국인의 체류·거류 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사무를 담당하지만 출입국심사와 외국국 출입국관리는 공안부(출입국관리국)가 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안부 산하의 출입국심사소는 성시급(省市级)에 현재 총 9개 성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샤먼, 하이커우, 산터우)에 설치되어 있고 공안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9개 성시 이외의 도시에서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도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현장검문·계속신문

현장검문은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과 유사한 것으로 인민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검문과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피검문인에게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검문인은 검문을 거절할 수 없다.⁷¹⁾ 현장검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민경찰은 범죄혐의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현장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현장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신문은 인민경찰법 제9조에 의하면 현장검문과 검사를 하였고 법정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7월에 공포된 “공안기관 계속신문 적용규정(公安机关适用继续盘问规定)”(이하, 계속신문규정)⁷²⁾에서

71)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제9조.

72) 공안부령 제75호(公安部令第75号)

는 계속신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계속신문은公安기관의 인민경찰이 사회치안질서유지를 위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장검문 및 검사 후에 범죄혐의를 배제할 수 없고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알았을 때에는 公安기간에 동행하여 계속하여 신문을 진행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법정사유는 (1) 피해자와 증인이 혐의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알리거나 또는 혐의인을 지목하는 경우, (2) 치안관리 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3) 치안관리 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고 신원이 불명한 경우, (4) 휴대한 물품이 치안관리에 위반되거나 또는 범죄의 장물인 경우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계속신문의 법정사유는 이와는 다르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서의 현장검문을 하였으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속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 출입국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및 불법취업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이다.

계속신문이 당사자를 公安기관(수사관서)에 동행한다는 점에서 성질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속한다. 계속신문규정에 의하면 公安기관 파출소가 계속신문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을 질 것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公安기관 또는 출입국심사기관이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계속신문의 절차는 인민경찰법과 계속신문규정에 관련규정이 있다. 첫째, 신문시간은 公安기관에 도착한 이후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시간 이내에 그 범죄혐의를 확정적으로 증명 또는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진실한 성명, 주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죄혐의를 확정적으로 증명 또는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둘째, 계속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공안기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속신문규정에서는 신문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승인을 하는 기관이 다르다. 12시간까지의 계속신문은 공안파출소책임자(公安派出所负责人)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24시간까지의 계속신문 연장은 공안분국(公安分局)의 당직책임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8시간까지의 계속신문 연장의 경우에는 공안분국의 주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셋째, 계속신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가족 또는 단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문인의 신원이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속신문 기간 신원을 확인한 후 그 가족 또는 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계속신문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피신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된 시간 내에 구류 또는 그 밖의 강제조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신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4. 소 환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이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3항). 소환(传唤)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가 공안기관에 와서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2조에서는 소환을 소환과 강제소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환은 강제소환과 대비되는 임의소환이고 소환증을 사용하는 소환,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인에 대한 구두소환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근거를 피소환인에게 고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소환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소환을 할 수 있다. 강제소환 시에는 수갑, 포승 등 구속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인에 대해서 공안기관의 소환 후에 즉시 신문조사를 하여야 하고 신문조사의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복잡

하고 행정구류처벌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조사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즉시 소환을 한 이유와 장소를 피소환인 가족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소환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이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할 때에는 치안관리처벌법 관련규정에 따라 소환한다. 즉 치안관리법에 따라 소환장 소환과 구두소환, 강제소환은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심사기관은 혐의인에 대해 소환을 하여야 한다.

5. 구류조사

(1) 의 의

구류조사(拘留审查)는 공안기관이 법정사유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단기간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의해 현장검문 또는 계속신문을 한 후에도 혐의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동법 제60조에 공안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2) 구류조사의 요건 및 절차

구류조사의 전제는 당사자의 혐의가 있어 불법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구류조사의 피의자를 구금하는 행정강제조치에 속한다. 그 요건은 첫째, 당사자가 제59조의 규정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장검문 또는 계속신문 후에도 혐의를 해소할 수 없어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다.

구류조사를 하는 경우 엄격한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구류조사결정서를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정식의 행정강제조치를 행사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고 24시간 내에 신문을 개시하여야 한다. 구류조사의 최

장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구류조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상급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의 승인을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조사 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된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3항).

구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류조사가 부적절함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구류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구류조사의 법정기한을 만료한 후에 강제퇴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구류조사는 당연히 종료한다.

(3) 구류소

구류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즉시 구류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류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구류조사를 받는 외국인은 해당 공안기관의 치안구류소에 유치된다. 치안구류소는 “치안구류소조례(治安拘留所条例)”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치안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금하는 장소이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구류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치안관리법 상의 구류처분과는 달리 최종처분이 아니라 아직 조사과정에 있는 경우이므로 구류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구류소에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나 구류조사를 위해 특별히 구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의 측면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구류소에서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활동범위의 제한

활동범위제한(限制活动范围)은 구류조사를 적용하여야 할 사안이나 구류조사를 하기에 부적합한 법정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내려지는 행정강제조치이다. 여기서 부적합한 법정사유란 구류조사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의 영아

를 수유해야 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인 경우, 구류조사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이다.⁷³⁾ 이 네 가지 사유는 당사자의 신체적 사유로 구류조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이다. 또한 구금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활동범위제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행정강제조치로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면서公安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公安기관이 한정된 구역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다만 활동범위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가 계속신문 또는 강제소환에 비하여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범위제한은 출입국검사조례 제 15조에서도 일정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소가 그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公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지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감시거주(监视居住)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형사소송법에의 감시거주와 다른 개념임에도 용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활동범위제한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公安기관 행정안전 처리절차 규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에서는 감시거주의 기한을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대폭 축소하여 60일까지로 제한하였다.

요컨대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활동범위제한조치는 구류조사의 대체성 조치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는 일정구역을 임의로 이

73) 公安기관계속신문 적용규정(公安机关适用继续盘问规定) 제10조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특정사유가 존재하면 계속신문을 4시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公安기관계속신문 적용규정 제10조 对符合本规定第八条所列条件, 同时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员, 可以适用继续盘问, 但必须在带至公安机关之时起的四小时以内盘问完毕, 且不得送入候问室:

- (一) 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不满一周岁婴儿的妇女;
- (二) 不满十六周岁的未成年人;
- (三) 已满七十周岁的老年人。

탈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이 기간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행정강제조치이다. 다만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공안기관이 외국인 활동 범위를 제한한 경우, 활동범위 제한 결정서를 제시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은 지정된 기간 내 공안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결정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거류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출입국관리조례 제30조).

7. 송환출국

(1) 의 의

송환출국(遣送出境)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등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을 떠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서는 불법입국,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구류조사, 거주감시 또는 송환출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안기관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 제191조에서는 불법입국, 불법거류행위를 처벌한 후에 직접 송환출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입국과 불법거류에 한해서 송환출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비(三非, 불법입국·불법거류·불법취업) 문제 중에서 불법취업을 포괄하기 어려웠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면 불법취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 1항에 규정된 송환출국사유는 (1) 기한 내 출국에 처해졌으면서도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불법거류·불법취업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규·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 밖의 경외인원이 앞에 열거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송환시킬 수 있다.

(2) 유사개념과의 비교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강제출국, 송환출국, 기한 내 출국으로 외국인의 강제적 출국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출국(驱逐出境)은 범죄행위자를 국외로 추방하는 형벌 또는 행정벌이다. 중국 형법 제35조에서는 강제출국이라는 표제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출국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⁴⁾ 즉 형법에 제35조가 적용되어 강제출국형(刑)을 받으면 형벌의 집행으로서 중국에서 추방된다.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의해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행정법 상의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 2항의 의해 기한 내 출국 또는 강제출국에 처할 수 있다.⁷⁵⁾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한 강제출국은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경고, 과태료, 행정구류, 허가증취소와 같은 행정벌에 처하면서 강제출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강제출국은 행정벌이다. 기한 내 출국은 지정된 기한 내에서 출국을 의미하고 강제출국은 즉시 출국을 의미한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정황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부는 강제출국을 명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출국은 치안관리처벌법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심각하나

74) 중국 형법 제35조 【驱逐出境】 对于犯罪的外国人，可以独立适用或者附加适用驱逐出境。

75)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 治安管理处罚的种类分为：

- (一) 警告；
- (二) 罚款；
- (三) 行政拘留；
- (四) 吊销公安机关发放的许可证。

对违反治安管理的外国人，可以附加适用限期出境或者驱逐出境。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릴 수 있는 행정벌이다.

송환출국은 주로 불법입국과 불법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내려지는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송환출국은 기한 내 출국과 강제출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한 내 출국과 강제출국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입국권 또는 거주권의 박탈이며 법적 속성은 행정벌 또는 형벌이지만 송환출국은 당사자가 아직 입국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그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에 내려지는 조치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강제조치의 일종이다.

(3) 송환출국의 효과 및 절차

송환출국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입국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속성상 행정강제조치이고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조례에 의해 미래의 입국신청할 권리는 일정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다. 즉 송환출국된 경우 송환출국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 입국이 불허된다. 따라서 송환출국에 처하게 된 외국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입국이 불허되는데 그 결정을 내린 기관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출입국관리조례 제31조).

송환출국절차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고 1992년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부, 외교부, 사법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공포한 “외국인출국을 강제하는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关于强制外国人出境的执行办法的规定)”과 출입국관리조례에서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

송환출국의 집행기관은 현지公安기관이다.公安기관이 송환출국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송환출국결정서에 의해 집행을 실시한다. 송환출

국은 즉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송환출국이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 즉시 집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소에 유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면 기상이나 당사자의 건강문제로 인해 즉시 송환출국이 어려울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송환소(송환대기소)에 유치시키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송환출국을 실시한다(출입국관리조례 제29조 3항).

송환출국의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외사민경(外事民警)를 파견하여 압송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압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압송이 불필요한 때에는 외국인이 실제로 출국할 때 외사민경을 파견하여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송환출국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송환출국될 경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비용부담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불법취업의 경우, 불법으로 고용한 단체·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에 대한 보증 조치(신원보증)를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8.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불복

당사자가 계속신문, 구류조사,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 등의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4조 1항).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정(재결)은 최종결정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원행정강제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환조사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 밖의 경외인원(홍콩, 마카오, 대만)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

여 신청하는 행정재심에 대해서도 동법 제64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호적이 있는 사람은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강제조치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II. 행정처벌

1. 행정처벌의 결정기관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에 의하면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의 직권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행정강제조치이다. 따라서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만이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심사소이다. 중국 공안기관출입국관리 행정체계는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 체계와 출입국심사기관 체계로 나뉜다. 전자는 현지의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고 업무상 상급 출입국관리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후자는 편제상 변경무경부대(边防武警部队)에 속하고 중앙 공안부(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직접적 명령을 받는다. 출입국심사기관은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불법출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는다. 경고처분 또는 5천위안 이하 과태료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한다. 행정처벌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벌, 즉 경고처분 또는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의 하위부서인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수권하고 있다.

2.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벌의 종류는 경고, 과태료, 불법소득·불법재산의 몰수, 영업정지명령, 허가증 또는 영업집조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행정구류,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그 밖의 행

정처별로 구분된다. 이 중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경고, 과태료, 불법소득의 몰수, 불법재산의 몰수, 행정구류, 강제출국 등의 처벌이다.

구법(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비해 신출입국관리법은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조정하였다. 80년대에 제정되었던 구법의 과태료의 액수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백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기관이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6조). 행정처벌법 상의 행정처벌의 결정절차는 간이절차, 일반절차, 청문절차로 나뉜다. 이 중 간이절차는 경고 이하의 처벌과 액수가 낮은 과태료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행정처벌법 제30조에 의하면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자연인에 대하여 5백 위안 이하,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1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은 현장에서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행정처벌법의 특별법으로서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제86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연인에 대한 처분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조직에 대해서도 5백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만 현장처벌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처벌도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처벌법의 현장처벌에 관한 관련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처벌결정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로 지정은행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고정된 거주지가 없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거나 출입항에서 지정은행에 벌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각 위반행위별 행정처벌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서술하지는 않고 간단히 표로 정리한다.

[표 3-6] 출입국관리법 상의 행정처벌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출입국증서를 위·변조, 편취하여 출입국하는 행위	제71조	① 1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 가능	자연인 또는 교통운송수단
타인의 출입국증서를 본인의 증서로 사칭하여 출입국하는 행위	제71조		
출입국심사를 회피하는 행위	제71조		
자연인이 타인의 불법출입국을 방조한 행위	제72조 1항	① 2천 위안 이상의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 가능,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자연인
단위가 타인의 불법출입국을 방조한 행위	제72조 2항	1만 위안 이상의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단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은 제 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단위와 단위의 책임자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자연인이 사증, 체류·거류증 등 출입국 관련 증서의 부정발급한 행위	제73조 1항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 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가능.	자연인
단위가 사증, 체류·거류증 등 출입국 관련 증서의 부정발급한 행위	제73조 2항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제73조 1항에 따라 처벌.	단위와 단위의 책임자
자연인이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초청서류 및 기타 사증을 발급하는 행위	제74조 1항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초청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한다.	자연인
단위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초청서류 및 기타 사증을 발급하는 행위	제74조 2항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모두 몰수하며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하며 그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제 74조 1항에 따라 처벌.	단위와 단위의 책임자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에 대한 심사를 거부행위	제75조	경고처분,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가능.	외국인
거류증 검사를 거부행위.			외국인

제 6 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외국인 출생등록, 사망신고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			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			외국인
중국 국내의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국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중국 국내의 외국인
숙박업소 아닌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숙박업소가 외국인 숙박등록 하지 않은 경우	제76조 2항(치안관리처벌법 제56조)		숙박업소
숙박업소가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하지 않을 경우	제76조 2항	① 경고 처분.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	숙박업소
허가없이 외국인 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제77조 1항	① 즉시 퇴거를 명한다.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③ 외국인이 불법 확보한 문자	외국인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기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및 그 밖의 물건은 몰수 또는 폐기하고 이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이 결정한 기간 내 이전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77조 2항	① 경고처분 및 강제이전 조치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책임자를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외국인 및 외국기구
불법거류 행위	제78조 1항	①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총액 1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거류 매 1일당 5백 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외국인
보호자나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만 16세 이하 외국인이 불법거주 하는 경우	제78조 2항	경고처분, 1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병과 가능	보호자와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이 있는 자
자연인이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의 수용 또는 은닉행위	제79조 1항	①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②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	자연인
자연인이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			

제 6 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인의 검사 회피에 대한 방조행위			
자연인이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위법하게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행위			
단위가 제79조 1항의 행위를 한 경우	제79조 2항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 몰수,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와 단위의 책임자
불법취업행위	제80조 1항	①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	외국인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행위	제80조 2항	총액 5만위안의 과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을 받은 사람 매1인당 5천 위안,	개인
		총액 10만 위안의 과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을 받은 사람 매1인당 5천 위안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단위
외국인 불법고용 행위	제80조 3항	총액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 매1	사용자

제 3 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인당 1만위안의 과태료,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 몰수	
체류·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또는 중국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국내에 체류·거류가 부적합할 경우	제81조 1항	기한 내 출국	외국인
출입항 제한구역의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82조 1항	① 경고처분,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가능. ②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하 10일 구류 병과 가능.	자연인
외국인 선원 및 동행가족이 임시 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상륙한 경우			외국인 선원 및 그 동행가족
선내증서 없이 외국 선박에 승·하선한 경우			자연인
허가 없이 출입국 하거나 출입국 항구를 변경하는 행위	제83조 1항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승무원·승객·화물·물품 등 정보를 허위 신고하거나 출입국심사를 거부하는 행위			

행위유형	적용법조	행정처벌	처벌대상
출입국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승객, 화물,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태우고 출입국을 하는 행위	제83조 2항	매1인당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합법적인 사전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교통운송수단
중국선박이나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외국선박을 연결하는 행위	제84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과 항로에 따라 항행하지 않은 행위			
출입국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외개방항 이외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3. 출입국관리직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분

출입국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다. “(1) 법률과 행정법을 위반하여 규정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증이나 외국인체류·거주증 등 출입

국증서를 발부하는 경우, (2) 법률과 행정법을 위반하여 규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통운송수단을 심사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게 한 경우, (3) 출입국 심사 과정 중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4) 법에 근거하여 수취한 비용과 몰수한 벌금이나 위법소득 및 재물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을 경우, (5) 몰수하거나 압수한 현금·물품 또는 수취한 비용을 착복, 침점, 횡령할 경우, (6)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행위 등 법정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를 할 경우.”

여기서 처분(处分)이란 공무원법 상의 처분을 의미한다. 공무원법 상의 처분은 징계수준의 경중에 따라 경고(警告), 징계기록처분(记过), 중징계기록처분(记大过), 강등처분(降级), 직위해제(撤职), 파면(开除)으로 나뉘어진다.⁷⁶⁾ 경고는 주의를 주어 다시 행정 상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질책성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징계기록처분, 중징계기록처분은 공무원의 행위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 일정정도 손실을 주었으나 강등처분을 하기에는 과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기록에 남기는 처분을 말한다. 강등처분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는 현재 직급보다 한단계 낮은 직급으로 강등하나 최저직급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기록처분으로 대체한다.

직위해제는 행정상의 위법행위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 중대한 손실을 주어 계속하여 원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처분이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직급을 높일 수 없고 보수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파면은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면 이외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에 반성을 하며 기율위반행위

76) 윤상윤, “중국의 공직자 개인정보 및 재산 신고제도에 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 연구 제12권 3호(통권 32호), 2014, 284면.

가 재발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이 만료 후 원처분결정기관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파면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강등 및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는 원직급과 원직무를 회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 7 절 국적제도

I. 출입국관리와 국적 제도

현재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는 2012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管理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가 적용된다.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중국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와 거류의 관리,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심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公民)’과 ‘외국인’의 개념에 대하여 제8장 부칙 제89조에서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도 출입국관리제도에 대한 유관 법률이 된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국적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II. 국적법

1980년 9월 10일 제정된 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중국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 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중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⁷⁷⁾ 이는 중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외국 국적취득 후에는 국

적재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국적회복절차에 따른 중국 국적 취득만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신분으로 중국에 장기 거주 하고자 한다면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제14조 내지 동법 실시세칙(实施细则) 제18조, [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적의 취득·상실·회복을 국적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하여(제2조) 다민족 일국적 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중국적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출생으로 인한 중국 국적 취득 사유를 밝히고 있다. 부모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불명의 경우,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제6조). 이는 무국적자 내지 국적불명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귀화 요건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i) 중국인의 근친속⁷⁸⁾이거나, ii)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iii) 기

7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이나 국적재취득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10조와 제14조에서는 외국 국적의 포기기간과 국적 상실에 따른 일정 기간 내의 국적 재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복수 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78) 다만, ‘근친속’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법률 해석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 상속법 제10조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범위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 부나 모가 같은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법률상의 형제자매 등을 모두 형제자매로 보고, 친부모 내지 양부모,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계모 등을 부모로 본다. 또한 자녀의 범위에 있어서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 혼외의 자녀, 양자녀, 부양관계에 있는 법률상의 자녀를 자녀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민법총칙에 관한 해석」 제12조에서는 근친속을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

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신청을 통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신청에는 공안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외국국적은 포기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 영주권자인 중국 국민의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되어(제9조), 별도의 국적포기 절차가 없어서 실제로는 중국 여권과 국적취득국의 여권을 함께 소지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국적 포기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의 부재는 출입국관리제도 실무상 일정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i) 외국인의 근친속이거나, ii) 외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iii)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안부의 허가를 얻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제11조). 다만, 국가 공무원과 현역 군인은 중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제12조). 국적법 제13조 이하에서는 중국 국적회복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⁷⁹⁾

Ⅲ. 국적법 관련 규정

국적법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는 중국 국적법 관련 규정들을 법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모, 손자녀, 외손자녀로 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형사소송법 제82조의 6에서는 ‘근친속’을 배우자, 부모, 자녀, 부나 모가 같은 형제자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친속’의 정의와 범위가 각 법률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적법 상의 ‘근친속’에 대한 일정한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79) 김명아, “중국국적법상 국적회복절차”, 『최신외국법제』 2010-08, 한국법제연구원, 2010. 11, 49~50면 참고.

[표] 중국 국적 관련 법규의 구성

법 규	제정 기관	법 규 명	관련 내용	비 고	
상 위 법 규	법 률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 적 법	이중국적금지	제3조
				외국 국적취득시 중국국적 상실	제9조
				중국 국적회복시 외국국적 상실	제13조
				국적 취득·회복·상실의 신청 및 절차	제14조 ~ 제16조
			출입국관리법	장기거주 또는 영주권의 취득	제31조
				영주권 관리 기관	제32조
			홍콩특별행정 구역기본법	외교부 산하의 관련기관 설치	제13조
			마카오특별행 정구역기본법	외교부 산하의 관련기관 설치	제13조
	법 률 해 석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특별행정구 역에서의 '중국국적법' 실시 문제에 관한 해석	국적변경과 관련 기관	제5조 제6조
			마카오특별행 정구역에서의 '중국 국적법' 실시 문제에 관한 해석	국적변경과 관련 기관	제3조 제4조 제5조

	분류	제정 기관	법 규 명	관련 내용	비 고
하위법규	행정법규	국무원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영주권의 취득	제18조
	부문규장	공안부 외교부	중국 국민의 외국 여권 불법소지에 관한 문제의 통지	이중국적금지에 따른 외국여권의 불법적 소지 문제	
		공안부 외교부	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 ⁸⁰⁾	외국인 영주권 심사·허가 절차	2004년 시행
		공안부	국적법의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시행초안	국적회복 절차	
		공안부 (출입국관리처)	신판 국적 증서의 사용에 관한 통지	국적 증서의 발급	
	지방성규장	하이난성 공안청 출입국관리국	외국인 화교 국적회복 수속의 처리에 관한 통지	화교 국적회복 절차	
		장쑤성 재정청/ 공안청/중국은행 장쑤성분점	공안 출입국 증명서 발급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적회복 신청 수속 비용	

분류	제정 기관	법 규 명	관련 내용	비 고
	장쑤성 성정부	공안계통 행정사업성 비용수익 목록과 관련한 통지	국적회복 신청 수속 비용	
	하이커우시 공안부	비자 관련 인지의 사용에 관한 통지	수속 관련 비용	
		공안기관 비자 관련 업무규범	수속 관련 비용	

IV. 영주권의 취득

1. 천인계획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고급인력인 중국인 해외유학생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¹⁾

중국정부는 해외유학중인 총 1000여명의 인재를 귀국시키겠다는 목표로 동 계획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인재를 불러들였다.

80) 공안부·외교부가 마련한「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公安部、外交部第74号令)」은 2003년 12월 13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04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 방법은 외국국적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하여 영구거류(영주) 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최근 해외 인재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news.xinhuanet.com/2014-06/02/c_1110955275 .htm](http://news.xinhuanet.com/2014-06/02/c_1110955275.htm)).

81) ‘천인계획’은 해외 유명대학의 석·박사 등의 귀국 시에 거주비와 연구비를 지원 하는 한편, 가족의 취업도 함께 지원한다(<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34>).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안부, 외교부, 국가외국전문가국판공실 등 주요기관은 천인계획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외 고급 인재들에게 국내체류 및 비자업무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중앙인재업무 조정팀에서 수행하는 천인계획은 각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로써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해외인재 본인과 가족의 비자업무와 체류에 관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절차 외에도 신청자가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⁸²⁾

2. 「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

「외국인에 대한 중국 영주권 심사허가 관리방법」은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국 거류 자격 심사기준과 심사허가 과정, 심사허가 권한, 자격취소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방법에서는 중국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중국에서 거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중국 출입국 시에도 비자 수속을 받을 필요없이 여권과 영주권 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방법에 따른 영주권은 중국 경제, 과학 기술발전에 대한 공헌자, 사회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나 기업의 임직원, 중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청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82)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34>

V. 국적의 회복

국적법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국적회복 처리절차와 기관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다만, 그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정법규나 실시세칙과 같은 상세한 하위규정이 부재하여 근거규정이나 처리기간, 비용, 요구되는 증명자료 등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시·현급의 공안국이 공시하는 내용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⁸³⁾

83) 김명아, 앞의 글, 51면; 김명아, “중국 국적회복절차 규정을 통하여 본 중국 국적법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 52~54면 참고.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1. 출입국관리기관의 조직과 구성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公安부와 외교부가 각 업무범위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출입국 심사 업무 담당기관은 출입국심사기관으로, 현정부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公安기관 및 출입국관리기구는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 업무를 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公安부는 국무원 산하 행정부서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공안전관리 즉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公安부에 설치된 출입국관리국⁸⁴⁾은 중국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중국국민의 홍콩·마카오, 대만 왕래, 외국인의 입출국과 거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公安부 출입국관리국은 전국의公安 출입국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⁸⁵⁾ 公安청·국은 출입국관리국·처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公安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 대외개방 항구에는 국경출입국사무소를 두도록하여 국경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2014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셴젠(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厦门), 하이커우(海口), 산터우(汕头) 등 9개 도시에 국경출입국관리 총사무소가 있으며,公安부의 직속기관이 된다.⁸⁶⁾

84) <http://www.mps.gov.cn/n16/n84147/>

85)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에 31개 출입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권택성, ‘실무연구 : 중국 출입국정책 연구’, 『법조』제60권 5호, 2011. 5, 259~260면).

86) <http://www.mps.gov.cn/n16/n84147/n84165/1291532.html>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는 중국의 공안부 소속 출입국관리국과 유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 된다.

2. 국민의 출국금지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며, 이러한 국적은 각각 국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출국금지사유는 5가지이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i)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ii)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iv)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v) 그 밖에 앞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기간 제한 없이 출국금지사유를 9가지로 밝히고 있다. 즉, i)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ii) 출입국관리심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iii) 형벌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iv)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v)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 인민법원으로부터 출국을 금지 당한 경우, vi)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vii) 불법출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으

로 인하여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여 해당 국가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viii) 국가안전 및 이익을 해칠 우려의 소지가 있어 국무원 주관부서(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 ix)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출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출국을 금지한다(不准出境).’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도 인민법원의 출국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출국이 금지되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또한, 외국 또는 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여 출국금지규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이 금지된다.

3.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한국과 중국 모두 외국인의 입국을 위하여서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증업무의 담당부처는 외교부가 되고, 출입국관리 담당부처는公安부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승무원이나 크루즈 관광승객, 난민,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륙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입국과 상륙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승무원의 경우에는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6조 제1호의 경우와 같이 C자 사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C자 사증은 승무, 항공, 항공운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선박 선원 및 그의 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수업에 종사하는 차량 운전기사에게 발급한다. 이러한 C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외국운수회사의 보증

서류 또는 중국 소관부처의 초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7조).

또한,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서는 i) 외국 선원 및 그 동행 가족이 정박 소재도시에 임시 상륙하는 경우, ii) 법 제22조 제3항의 환승입국자가 출입국항을 떠나는 경우, iii) 불가항력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 외국인인 출입국 심사기관에 임시입국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사증과 거류증

한국은 사증과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사증에는 체류자격까지 표시되거나 입국허가시 체류자격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다(법 제10조). 중국은 법률상 체류자격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사증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이 바로 결정되며, 18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경우에는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증이 거류증으로 대체되어 거류증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체류자격을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3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제7조에서 사증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증을 비취업자격과 취업가능 자격으로 크게 구분하고, 취업가능 자격을 세분화하여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취업사증을 Z자 사증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체류증 또는 거류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체류증과 거류증을 분리하고 있다. 다만, 180일 미만 체류의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체류와 거류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단기체류의

경우에는 주숙등기를 제외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장기의 거류의 경우 거류증을 발급받아 장기체류자의 관리에 엄격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등록제도를 두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반면, 중국의 거류증은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입국 후 30일 내에 사증의 종류에 맞는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거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Z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한 후에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법취업의 관리의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5. 외국인의 취업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18조). 즉,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취업활동만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1조와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劳部发(1996)29号)⁸⁷⁾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우선 취업류 사증(Z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을 하거나 또는 사증변경을 하여야 하고 입국 후 또는 사증변경 후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취업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취업류 사증을 소지하고 외국인 취업(허가)증 및 취업거류증의 두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87) http://www.hrssgz.gov.cn/gzfeb/zxfg_zhl/200501/t20050119_4745.htm

6. 영주자격

우리나라에서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을 단계별로 구분할 때, 최상위에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법 시행령 별표 1), 영주(F-5) 체류자격을 받게 되면 중대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무제한 주어진므로 별도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주어지고 영주권자에게는 없다.

중국의 경우, 영구거류(영주)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일정한 공헌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일정한 공헌이란 직접투자에 의한 공헌, 고급직무에 종사에 의한 공헌, 영주권자와의 혼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영구거류자격을 갖는 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5년 또는 10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경과 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취득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5년 또는 10년을 영주권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의 운용 목적 상 영주권 취득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체 인정되지 않고 영주권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영주권이 주어진 이후에도 최소 누적 체류기간(매년 3개월 이상, 5년 누적체류기간 1년 이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강력한 영주자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표]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는 국적법에 따라 결정.	「국적법」 제2조 내지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국민)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보유 여부는 국적법에 따라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중국에서는 ‘공민(公民)’이라고 하며, 대만(中華民國) 동포의 경우 여행증(旅行证)을 발급하여 출입국허가를 받음. 홍콩·마카오 주민의 경우에는 통행증(通行证)을 이용.(제3장 제3절 II 참조)
국민의 출국 금지	국민의 출금금지 사유는 총 5가지임. ※ 출국금지 사유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법 제4조 제1항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는 6가지임.	법 제12조	중국의 경우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도 인민법원이 출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때에는 출국이 금지되며, 외국에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으로 중국으로 송환된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아니한 사람에 관해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의2에 병역법 위반 자, 국세포탈 혐의 세무 조사 받고 있는 자, 공 금횡령·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 감사 받 고 있는 자 등 구체적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있음.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경우 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음.
외국인 의 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있어야 함.	법 제7조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유효 한 여권과 재외공관이 발 급한 사증이 있어야 함.	법 제24조 제4조	중국의 사증사무의 책임담당 부서는 외교부이고 출입국관 리 담당부서는 공안부임. 한국의 경우 사증발급의 권 한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이를 외교부 소속인 재외공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외국인의 의 상륙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 상륙허가는 승무원이나 크루즈 관광객, 난민,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입국과 상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 승무원의 경우에는 C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외국 선원 및 그 동행 가족이 정박 소재 도시에 임시 상륙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임시 입국수속을 받도록 하고 있음.	법 제23조	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음(법 제8조). 따라서 사증사무와 출입국관리 책임담당부서는 법무임. 중국은 승무원의 경우 C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륙허가에 해당하는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임시입국제도를 이용하여 입국가능.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사증과 체류 자격	한국은 사증과 체류자격을 구분함. 사증에는 체류자격까지 표시되나 이는 예비적인 것이고 임국허가시 체류자격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짐.	법 제10조	중국은 법률상 체류자격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사증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이 곧바로 결정됨.		중국은 사증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이 주어지나 180일을 초과하는 체류의 경우에는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결과, 사증이 거류증으로 대체되고 거류증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됨.
사증 또는 체류 자격 종류	체류자격을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총 36가지로 구분함.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사증의 종류는 12가지이며, 상세항목에 따라 총 17가지로 세분화 됨.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제7조	한국은 비취업자격과 취업가능자격으로 크게 구분하고 취업가능자격도 상당히 세분화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국은 취업사증을 Z사증 하나만을 인정하며 취업활동범위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음.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사증면제	<p>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별도의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p>	<p>법 제7조 2항</p>	<p>사증면제협정에 적용되는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등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p>	<p>법 제22조</p>	<p>한국과 중국은 2013년 8월에 외교여권에 한해 사증면제를 하고 있음. 다른 국가에 비해 사증면제협정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도 국내에 영업을 둔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여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증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의 주요도시(9개도시 10개 공항)는 경쟁적으로 72시간무사증경유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한국을 경유하던 환승객이 중국의 무사증경유가 가능한 도시에서 72시간 동안</p>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체류 기간의 상한	체류자격에 따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8조의 2(별표 1)	체류기간은 사증에 체류기 간을 정하나 180일 초과하 는 장기사증의 경우에는 거 거류증을 발급받을 때 거 류기간이 확정됨.	법 제29조, 제30조, 제34조	관광을 하고 환승을 할 유인 이 생겼다고 생각됨. 이에 환 승객 유치를 위한 한국의 대 응책 마련이 필요함. 중국의 경우 단기사증 일반 적으로 30일이고 장기사증은 거류증으로 변경되면서 확정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을 초과하지 않음. 한국의 경우 단기사증은 최 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장기 사증은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 내 어 개별적인 입국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으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며, 30일 단기사증(C-1, C-3, C-4)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총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음.</p> <p>또한, 장기사증의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입국시 사증에 주어진 체류기간이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보다 상당히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음.</p>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체류증	체류증 또는 거류증을 달리 구분하지 않음.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법 제31조	체류증과 거류증(180일 초과 체류)을 분리하고 있으나 180일 미만 체류의 경우 모두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체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법 제34조	중국은 체류와 거류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단기체류의 경우에는 주숙동기를 제외 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장기의 거류의 경우 거류증을 발급받아 장기체류자의 관리에 엄격을 기하고 있음.
거류증			거류증은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중에서 180일 초과외 장기사증을 소지한 자는 중국에 입국 후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함. 거류증은 복수사증의	법 제30조	중국의 거류증은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입국 후 30일 내에 사증의 종류에 맞는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거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Z자 사증을 받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역할을 하고 최장 5년의 거류증이 발급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거류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아 매년 거류증의 연장수속을 경료하여야 함.		급받아 입국 한 후에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법 취업 관리의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은 90일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은 영주자격자와 기타 등록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색깔을 달리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여 발급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색깔을 달리하고 있음.
외국인의 취업	취류하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	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우선 취업류 사증(Z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을	법 제41조, 외국인재 중국취업	한국의 경우 취업활동범위를 체류자격에 매우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음.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함. 체류자격 을 소지한 자는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취업활동 만을 할 수 있음.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p>		<p>하거나 또는 사증변경을 하여야 하고 입국 후 또는 사증변경 후에는 30일 이 내에 외국인 취업(허가)증 을 발급받은 후 취업서류 증을 신청하여야 함. 즉, 취업류 사증을 소지하고 외 국인 취업(허가)증 및 취업 서류증을 발급받아 두 가지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도록 함.</p>	<p>관리규정</p>	<p>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음. 다만 외국인취업허가증을 발 급받으면서 사용자(고용단위) 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 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자에게 고용된 이 상 사용자의 업무범위 내에 서는 업무활동에 대한 제한 은 없는 것으로 보임.</p>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출국 정지 사유	외국인이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법 제29조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사유는 총 4가지임.	법 제28조	중국의 외국인 출국정지사유 중에서 외국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출국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외국투자자의 이른바 비정상적 철수를 예방하기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재입국 허가	<p>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출국정지 할 수 있음.</p> <p>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 국민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이 체류기간 내에 출 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2010.11.16. 재입 국허가제도를 대폭 개 선하여 영주(F-5) 자격 소지자는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p>	<p>법 제30조, 시행규칙 제44조의2</p>	<p>재입국 허가제도가 없음. 다만 거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거류증의 체류기간 내에 자유롭게 재입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 또는 신규 사증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p>		<p>위해 새로 규정된 조항임. 세 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령으로 출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음.</p>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영주 자격 또는 영주권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을 단 계별로 구분한다면 최 상위에 있는 자격. 영주(F-5) 체류자격을 받게 되면 중대 범죄를 범한	법 제10조 및 제4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공직선거법	영구거류(영주)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일정한 공헌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일정한 공헌이란 직 접투자에 의한 공헌, 고급 직무에 종사에 의한 공헌,	법 47조 내지 49조, 외국인 재중국 영구거류 심사관리	영주권이 주어진 이후에도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최소 누적체류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누적체류기간은 매년 3 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 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무제한 주어진므로 별도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짐(피선거권은 없음).</p>	<p>제15조 제2항제3호</p>	<p>영주권자와의 혼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영구거류자격을 갖는 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구거류종의 유효기간(5년 또는 10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경과 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취득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일체 인정되지 않음.</p>	<p>방법</p>	<p>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 누적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소됨. 한국의 경우 강제퇴거 이외의 다른 영주권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음.</p>
강제 퇴거	<p>강제퇴거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사법절차와는 원칙적으로 구분. 형사</p>	<p>법 제46조. 법 제67조, 법 제68조.</p>	<p>중국의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송환출국과 강제출국이 있다. 강제출국은</p>	<p>출입국 관리법 제62조,</p>	<p>한국의 강제퇴거명령은 퇴거명령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p>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법에서 강제퇴거벌은 없으며,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벌 위반의 정도가 가볍거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고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음.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내란죄, 외환죄,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의 중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를 시키지 못함.</p>		<p>형벌의 일종인 강제출국(형법 제35조), 행정벌로서의 강제출국(치안관리법 제10조 2항)이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출국을 별도로 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한 내 출국명령도 있음. 영주거류권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고 강제출국 되면 영주거류권은 취소됨.</p>	<p>제81조. 형법 제35조, 치안관리 처벌법 제10조.</p>	<p>국의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송환출국과 강제출국의 차이점은 권리 박탈여부이다. 송환출국은 입국권, 거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이미 박탈당한 경우의 조치이고 강제출국은 취득한 입국권 또는 거주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기한내 출국은 우리의 출국명령과 유사함.</p>
숙박 등기	<p>숙박 관련 신고 의무 없음.</p>		<p>주숙등기는 중국의 대표적 인 체류자 관리제도로서</p>	<p>법 제39조</p>	<p>단기체류, 장기체류의 구분없이 숙박업소가 아닌 장소에</p>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한국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에 대해 별도의 체류관련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체류기간 내에 신고없이 자유롭게 체류지를 정할 수 있음.</p>		<p>숙박업소에 외국인인 체류하는 경우, 숙박업소가 주숙분기 의무가 있고, 숙박업소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은 본인 또는 숙박장소 제공자가 공안파출소에 주숙분기를 하여야 함.</p>		<p>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 또는 숙박장소의 제공자는 주숙분기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반면, 중국은 단기체류의 경우에도 입국 24시간 이내에 주숙분기를 하도록 하고, 18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장 5년 미만으로 하고 있음.</p>
교통 운송 수단	<p>법 제7장에서는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p>	<p>법 제69조 내지 제76조,</p>	<p>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검사에 대해서 신출입국관리법 제5장에서 신설하여 그</p>	<p>법 제50조 내지 제57조.</p>	<p>우리나라에서는 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입출항을 규제하는</p>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구분	한국		중국		비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항자적 선박·항공기·그 밖의 교통기관이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 다시 우리나라로 임항할 때에도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임항검색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출입항 예정일시와 출입항 예정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p> <p>법에서는 교통운송수단(교통기관)을 통해 입국하는 승무원, 외국인승객, 난민 등의 출입국관리에 대해서는 제3장</p>	<p>법 14조 내지 제16조의 2,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법.</p>	<p>간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던 국무원 행정법규인 「출입국변방검사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출입국관리법 제5장에서는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검사, 출입국절차, 감호, 선박의 임시승선, 선박의 연결,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금지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p>		<p>법률은 각 운송수단별로 별도의 법률로 규제함. 예를 들면 선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선박관련법이고 항공기는 항공법 등의 항공기 관련법에서 입출항신고 등을 통해 한국에 입출항하는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음.</p> <p>중국은 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출입국 심사에서 직원·여객·화물·물품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출입국관리법 제5장에서 정함으로써 출입국 절차 및 관</p>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2절 외국인의 상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리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의 경우 각 운송수단별로 소 관법률에서 선박 등 교통기 관의 관리와 출입국감독 질 차를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 여 감독권한이 더 강한 것으 로 판단됨.

제 2 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1. 한국과 중국의 국적법 관련 규정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법 제2조에서는 부모양계 혈통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중국도 국적법 제5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부모양계혈통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국국적은 취득되지 않아 복수국적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즉, 한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는 결과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출생지주의에 의해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미성년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지만 일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지 않아 국적선택제도는 중국에서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된다.⁸⁸⁾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인지신고를 통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별도의 국적 절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제3조). 중국의 경우 가족법상 인지제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해 실무상 인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는 국적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친자관계존부확인을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국적취득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88) 최영, '중국의 이중국적정책 논쟁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1, 65~83면과 엄해옥, '중국국적법에 대한 회고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 구상-중국의 인재유실과 한국의 제한적 복수국적법의 고찰로부터',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2, 35~49면에서는 중국의 이중국적정책 논쟁 과정과 국적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이중국적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을 통하여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일반귀화 요건만을 국적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다. 중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영구거류증을 포함하고 있어 영구거류증의 취득이 전제조건이 되며, 영구거류증 취득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에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적 취득에 앞서서 영주권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주권전치주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중국은 영구거류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회복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래의 [표]는 한국과 중국의 국적법 관련 규정을 간단히 비교한 표이다.

[표] 한국과 중국의 국적법 관련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부모양계혈통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음.	법 제2조	부모양계혈통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 음.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 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 보유하면, 중국국적을 취 득되지 않아 복수국적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	법 제5조, 법 제6조	한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 하는 결과 한국의 국적을 취득 하고 출생지주의에 의해 외국 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미 성년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 고 있으나 중국은 부모양계혈 통주의를 취하지만 일시적인 복수국적도 허용하지 않아 국 적선택제도는 중국에서 논리 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신고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 후 별 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통 해 국적을 취득하게 됨.	법 제3조	가족법상 인지제도는 인 정되지 않지만 부자관계 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해 실무상 인지를 인정하고		중국의 경우 친자관계존부확 인을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국적취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있음. 그러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는 국적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두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귀화에 의 한 국적취득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법 제4조 내지 제8조	중국에서는 일반귀화요건을 정하고 있음.	법 제7조, 제8조	중국에서는 일반귀화만을 정하고 있어 수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중국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영구거류증을 포함하고 있어 영구거류증을 먼저 취득하여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에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이 국적취득에 앞서서 영주권을 얻어야 함.

제 2 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국적회복	한국국민이었던 자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9조	중국국민(국민)이었던 자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13조	한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지 않고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귀화요건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중국에서 국적회복을 위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도 영구거류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거류증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거주의사를 확인하여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구거류증을 취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교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p>적회복신청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임.</p> <p>한국은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귀화에 비해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기가 쉽고, 국내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무소에서,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p>

제 2 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구분	한 국		중 국		비 교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외국인으로서 귀화, 인지,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 후 친적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국적을 1년 내에 포기하여야 함.	법 제10조	중국국적취득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즉시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중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안됨. 즉 중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함(지체없이) 또 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법 제8조	중국국적의 취득 후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알 수 없음. 다만 중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즉시 포기하지 않았다면 중국국적취득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때에 한 국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항은 국적회복허가신청 또는 국적재취득신청을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2. 한국과 중국의 난민법 관련 규정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난민법 제정 전에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독립된 법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부분적으로 난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모두 1982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관한 처리를 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도 인도차이나반도(주로 베트남난민)의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정한 바 있다.

중국은 난민협약에 이미 가입하였으나 난민협약의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서, 난민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2년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정시에 난민에 대한 체류·거류 가능성을 열어준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난민의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2014년 7월 2일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난민은 138명이고 410명이 난민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나,⁸⁹⁾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대

해서는 유엔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한국과 중국의 난민법 관련 규정을 비교한 표이다.

89) http://www.21ccom.net/articles/qsw/qgc/article_20140724109964.html

[표] 한국과 중국의 난민법 관련 내용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비교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난민	<p>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p> <p>난민법 제정 전에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독립된 법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부분적으로 난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p>	난민법	<p>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난민법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는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p>	법 제46조	<p>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난민에 관한 규정은 제46조, 한 개 조문에 불과함. 중국은 난민협약에 이미 가입하였으나 난민협약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름이 있음. 종래로부터 조약직접적용공정설과 조약직접적용부정설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 난민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봄.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모</p>

제 2 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구분	한국		중국		비교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음.		두 1982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관한 처리를 하고 있음.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도 인도차이나반도(주로 베트남난민)의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정한 바 있음. 2014년 7월 2일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난민은 138명이고 410명이 난민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함.90)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유엔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국은 난민인정 신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제 4 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구분	한국		중국		비교
	내용	법적 근거	내용	법적 근거	
					8,819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인정자는 438명,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체류를 인정한 인도적 체류자는 668명임.

90) http://www.21ccom.net/articles/qqsww/qgqg/article_20140724109964.html

제 3 절 시사점

1. 행정강제조치의 규범화와 인권존중

2012년 제정된 중국 출입국관리법은 최근 중국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불법입국(非法入境), 불법체류(非法居住), 불법취업(非法就业) 등의 3대 불법출입국행위(3非)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고,⁹¹⁾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⁹²⁾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장 조사 및 송환에서는 일반행정관리조치인 현장검문(当场盘问)과 함께 우리나라의 행정상 즉시강제에 유사한 행정강제조치를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계속신문(继续盘问), 소환(传唤), 구류조사(拘留审查), 활동범위 제한(限制活动范围), 강제퇴거조치(遣送出境措施) 등이다.

(1) 현장검문 및 계속신문

현장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⁹³⁾⁹⁴⁾과 유사한 제도로써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서도

91) 중국 출입국관리법 상의 3대 불법출입국행위는 행정불법으로서 이러한 행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벌로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중국 형법 제6장 제3절 밀출입국범죄 제318조에서 제322조와 제415조의 규정에 따른 출입국관리 위반 범죄는 ‘밀출입경(偷越国)’으로 분류하여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출입국 관련 형사법제도에 관하여서는, 김한균·김창준·정군남,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25면 이하를 참조.

92) 信春鹰 主编,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 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2. 7, 1页; 信春鹰 主编,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释义』, 法律出版社, 2012.9, 1~5页;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行政法室 编著,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 释义及实用指南』,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2. 7, 23~26页.

9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현장검문과 계속신문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⁹⁵⁾ 제9조에 규정된 절차⁹⁶⁾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과

-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94)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상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외국인은 제시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경찰 신원확인조치로서의 불심검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여권제시 요구와는 다른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홍재, ‘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학회, 2009.3, 151~171면을 참조.
- 95) http://www.gov.cn/ziliao/flfg/2005-08/05/content_20891.htm
- 96) 「인민경찰법」 제9조
- ① 사회치안질서 유지·보호를 위하여公安기관의 인민경찰은 불법범죄의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검문·검사를 할 수 있다. 검문과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公安기관에 동행할 수 있고,公安기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신문을 할 수 있다.
 - 1.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
 - 2. 현행범 용의자
 - 3. 혐의가 있는 자로서 신분이 불명확한 자
 - 4. 휴대한 물품에 장물의 가능성이 있는 자
 - ② 피신문자의 억류시간은公安기관 동행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금 이상公安기관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견주어 볼 수 있다.

다만, 인민경찰법 제9조에서는 계속신문은 현장검문과 검사를 하여, i)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 ii) 현행범 용의자, iii) 혐의가 있는 자로서 신분이 불명확한 자, iv) 휴대한 물품에 장물의 가능성이 있는 자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안기관으로 동행요구를 하여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신문을 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현장검문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서는 출입국관리 위반에 대한 현장검문만을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위반에 대한 현장검문 사항은 i) 불법 출입국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ii)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 iii) 외국인이 불법거류 및 불법취업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iv)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 된다.

(2) 소 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신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계속신문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즉시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신문을 허가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피신문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③ 계속신문을 통해 공안기관이 피신문인을 법에 따라 구류 또는 기타의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기간 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피신문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7조에서는 이러한 동향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통해 법 제46조의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용의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와 같은 현장검문 내지 계속신문 권한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은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항에서의 ‘소환(传唤)’과 유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⁹⁷⁾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82조⁹⁸⁾에 따르면 소환(传唤)과 강제소환(强制传唤)으로 나누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소환(强制传唤)의 정의와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치안관리처벌법 및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97) http://www.gov.cn/flfg/2005-08/29/content_27130.htm

98) 「치안관리처벌법」 제82조

치안관리 위반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公安기관 조사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하도록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자가 현행범인 경우, 인민경찰은 공무수행증서(신분증 등)를 제시하여 구두 소환할 수 있다. 단, 신문기록을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公安기관은 소환 이유를 피소환인에게 적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강제소환 할 수 있다.

수 없고,公安部 부문규장인 「공안기관 행정안건처리 절차규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 제53조 제3항에서 “치안관리·소방안전관리·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용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및 법률에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기타 불법용의자에 대하여, 공안파출소·현급이상 공안업무부서·출입국관리사무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강제소환할 수 있다. 강제송환시에 수갑, 포승 등 구속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안기관 행정안건처리 절차규정」제1조에서는 공안행정 안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공안 행정안건 처리 중의 이행책무를 정확하게 보장하며, 공민·법인·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등 유관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3개 법률 중 ‘강제소환’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뿐이다. 즉, 「공안기관 행정안건처리 절차규정」제53조 제3항의 ‘강제소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82조의 규정 외에는 근거가 없으며, ‘수갑’, ‘포승’ 등에 의한 인신을 구속하는 행정강제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각 부처에서 제정할 수 있는 부문규장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안기관 행정안건처리 절차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Baidu 등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강제소환(强制传唤)’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입력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각 성 공안기관의 행정강제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에서만 공식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⁹⁹⁾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

32조¹⁰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中华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 在中国境内的外国人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는 규정에 반하는 중요한 위헌적 요소라 할 것이다.

(3) 구류조사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구류조사(拘留审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3절 제51조 이하의 ‘보호’ 조치와 유사하다.

즉,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59조의 현장검문 내지 계속신문의 대상인 경우 현장검문 내지 계속신문을 통하여서도 혐의가 해소되지 않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류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구류조사 결정서를 발급하고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야 하며, 구류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구류조사를 중단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29조는 공안기관은 필요에 따라 송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60조에 따라 외국인을 구류조사 하여야 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외국인을 구류소 또는 송환소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나

99)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소환 시에 법에 따라 수갑, 포승 등 구속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强制传唤时,可以依法使用手铐、警绳等约束性警械)으로 알려져 있어서([헤이룽장성 인터넷 행정허가 절차 및 정무 서비스센터(黑龙江省政务信息化管理服务中心)] - [시작화면(首页)] - [정무공개(政务公开)] - [정부정보공개목록(政府信息公开目录)] - [성직할부서정보(省直部门信息)] - [성공안청(省公安厅)] - [행정권력(行政权力)] - [행정강제(行政强制)] - [강제소환(强制传唤)] - [업무수행절차(办理程序)](<http://www.hlj.gov.cn/gkml/system/2008/12/11/000227569.shtml>)), 이는 강제조치에 대한 법률 불명확성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 第三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 在中国境内的外国人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

中华人民共和国对于因为政治原因要求避难的外国人, 可以给予受庇护的权利。

당사자의 건강문제로 인해 송환출국 혹은 강제출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류소나 송환소에 유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항에서 보호명령서를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 보호된 외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24시간 이내’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 시간이 짧은 것으로 자칫 오인할 소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보호가 해제되고,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류조사기간은 최대 20일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구류조사결정서를 발급받고’ 24시간 이내에 구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구류조사결정서 발급’에 대한 기한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구류조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상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의 허가를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구류조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서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3항 후단에서는 국적 및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조사 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하여 국적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이나 난민의 경우에는 국적 및 신원이 확인될 때 까지 무기한 구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또한 불법체류자 내지 난민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4) 활동범위 제한 및 강제퇴거조치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1조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임신 중 또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수유하는 경우, 만16세 미만이거나 만70세 이상인 경우, 구류조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에 있어서 구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결정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공안기관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정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거류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활동범위 제한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적 및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 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될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내지 난민의 경우에는 실제 활동범위 제한 기간이 60일 이상이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한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해당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와 유사한 송환출국(遣送出境)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피송환자는 송환된 날로부터 최단 1년에서 최장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이 정해진다. 또한,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32조에서는 외국인 송환출국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체의 비용은 송환 대상자인 외국인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인이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자인 경우 불법고용을 한 단체나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법취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체류·거류에 대한 보증을 한 단체 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¹⁰¹⁾

한편, 중국 출입국관리법 상에는 제62조에서 강제퇴거조치 대상으로 ‘기한 내 출국 처분을 받고도 규정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제62조 이하의 강제퇴거와 같이 양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33조는 외국인이 지정된 기한 내 출국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기관은 출입국 사증을 말소 또는 몰수하고, 이를 위한 체류수속 보완 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출국기한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출국기한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출국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있어서 강제퇴거조치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6절 제62조 이하에서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송환출국의 과정에서 송환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난민신청자에 대한 송환예외나 송환출국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 송환대상국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송환대상자 구류기간 제한이나 난민보호 내지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인도주의적 접근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101) 노재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4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9, 236~246면에서는 “중국에서도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관태료와 벌금, 징역 뿐만 아니라 공공계약 수주자격박탈,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본국송환비용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에 대해 그 불법체류자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 제32조의 규정은 일정 부분 이미 법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 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학춘·고준기(2013)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OECD나 ILO 등 국제사회는 불법체류자들 역시 사회적 약자로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를 이유로 정부가 이들의 인권보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¹⁰²⁾ 이러한 불법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행정강제조치에 대하여 인권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현안문제라고 본다.¹⁰³⁾

행정강제조치 대상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에서는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의4에서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권 보호에 더욱 유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 국민의 권익과 출입국관리제도의 양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양국 출입국관리 소관부처간 더욱 긴밀한 협조와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2) 이학춘·고준기,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노동法論叢』 제27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4, 301면.

103) 출입국관리법상 인권 보호 관련 문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이근우, ‘보호인가 구금인가?-출입국관리법상 강제처분 비판’, 『비교형사법연구』 14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479~508면과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현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2, 221~248면 등을 참조.

2.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간 이동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 및 외국인고용 정책

중국은 2008년 12월 마련된 「중앙인재취업조정팀의 해외고급인력유치 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中央人才工作协调小组关于实施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的意见)」에서의 천인계획(千人计划)을 통하여 중국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에 있어서도 고급인재를 유치하고,¹⁰⁴⁾ 외국인 고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¹⁰⁵⁾

최근 중국의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사판공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베이징시 외국국적 인력 고용 강화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北京市外籍人员聘用工作的通知)」(京人社外发[2014]122号)¹⁰⁶⁾에서는 베이징에서의 외국인 취업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¹⁰⁷⁾ 동 통지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외국 국적 인력이 베이징에서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i) 신체 건강한 자로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ii) 학사학위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고, 외국인 교원은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어학교원 제외), 학사학위상이 아닌 자의 경우, 베이징에서 긴급하고 급박한 수요를 가진 핵심 기술공예 연구개발 직무를 담당하는 고급 기능직 인재로서 외국의 기술자격인증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iii) 고용기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제여행증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iv) 취업허가서와 취업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04) <http://www.1000plan.org/qrjh/section/2?m=rerd>

105) http://www.gov.cn/xinwen/2014-05/31/content_2691388.htm

106) http://www.bjld.gov.cn/xwzx/zxfbfg/201409/t20140915_36453.htm

107) ‘외국국적 인원 북경 근무 요건’([MK China 뉴스레터]-(381번)[제359호 뉴스레터] 2014.10.20. 검색(<https://www.mkchina.com:1026/ch/le.html>))

종사하는 업무는 취업허가에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업무여야 한다. 또한, 외국어 교원을 고용하는 단체에서는 ‘외국인 전문가 고용 단체 자격 인가(聘请外国专家单位资格认可)’를 취득하여야 하고, ‘외국인 전문가 고용단체 자격 인가증(聘请外国专家单位资格认可证书)’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한편, 사회보장보험 및 보수·복지·근로안전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취업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중국의 외국인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우수인재의 유치와 합법적 근로계약의 체결 유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절차 및 요건의 강화 과정에서 중국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가 될 수 있어서 향후 한층 주의가 요구된다.¹⁰⁸⁾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 정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양국 출입국관리제도의 정합성을 요구하기 위하여서는 출입국관리 소관부처간 협의 외에도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부문의 협상에서 MODE3(상업적 주재) 및 MODE4(자연인의 이동)과 투자, 노동 등에 관한 상세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양상을 감안할 때, 한-중 양국간 상품 무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서

108) 구지영,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칭다오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제40권, 2011. 7, 421~457면에서는 중국 칭다오 한인 사회형성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인이 중국 이주에 대한 현황과 원인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선택적 투자유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과정과 한국기업의 입지 변화를 잘 분석하고 있는 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해외인력고용정책에 따른 출입국관리제도의 한국인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스산업의 발전¹⁰⁹⁾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보완적인 시장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부문의 협상과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협상은 더욱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소개한 「베이징시 외국국적 인력 고용 강화 업무에 관한 통지」에서는 학사학위 이상이 아닌 자의 경우, 베이징에서 긴급하고 급박한 수요를 가진 핵심기술공예 연구개발 직무를 담당하는 고급 기능직 인재로서 ‘외국의 기술자격인증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도 자격의 상호인정(MRA)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MODE4를 중심으로 한·중·일 FTA와 인력이동을 연구한 최영렬(2010)의 견해¹¹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정책과 중국의 서비스 분야 정책을 고려하여 한-중간 상호인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관하여 연구한 김범준(2007)의 논문에서 “MODE4에서 개방이 확대된다면 숙련기술노동자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미숙련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제

109) 한-중 간 관광산업과 사증 면제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이원식(2008)의 논문에서는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시행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 발생 등 사회적 고려요인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엄격한 출입국심사와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및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국 프로그램 운용 및 지속적 단속 등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국인 단기방문객에 대한 전^口녀적인 사증 완화보다는 한중간 교류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 항공자유화 일정과 연계한 사증오나화 제도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원식·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유인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제6권 제4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08. 12, 172~182면). 향후 각 서비스 산업별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중 FTA 효율성 극대화과 양국간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0) 최영렬, 『한·중·일 FTA와 인력이동-MODE4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11, 25~29면 참고.

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양산하게 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상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을 기반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인 공정무역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우리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충분히 적극적 설득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¹¹¹⁾은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중 FTA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¹¹²⁾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¹¹³⁾ 이러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외국인고용제도의 실험적인 운용¹¹⁴⁾과 출입국관리의 제도적 완비를 통한 시범적 운용이 가능하겠다.

3. 난민 보호

1951년과 1967년에 UN이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량난민의 출현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⁵⁾

111) 김범준,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연구: GATS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10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3, 109면.

112) 광의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는 기존에 WTO 가입과 함께 중국에서 운용한 협의의 경제특구 외에도, 최근 운용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산둥반도 남색경제구(한·중·일 블록경제 시험구), 전자상거래 시험구, 국경경제협력지역 등이 포함된다.

113) 예를 들어, 우리나라 측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구상되고 있는 한-중 경협 시범단지와 중국 측에서는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7대 핵심도시 내의 시범지역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다.

114) 중국 경제특구의 임금·고용 법제와 실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임을출,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 조건 비교-임금·고용 법제와 실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11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7, 1면~23면을 참조.

115) 信春鷹 主编,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 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2. 7, 1,

중국은 198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위의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서도 난민 문제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중국 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정을 통해 폐지된 종전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15조에서는 정치적인 원인으로 피난을 요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중국 거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국인의 중국 내 임시거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이러한 난민의 임시거류허가에 관한 사항 외에 ‘난민의 지위’를 심사하는 정부 담당자의 조직구성과 직책,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¹¹⁶⁾ 우리나라와 같이 난민인정 심사시에 난민 신청자에게 필요한 통역 내지 관련 자료의 접근권,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인적사항 미공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 난민심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는 경우,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한국의 경우 30일 이내) 내에 관계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난민위원회 등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난민인정 절차와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115면.

116) 赵向华, ‘从2012年《出入境管理法》第46条谈我国难民立法中的若干问题’, 『出入境管理法与国际移民』(刘国福·刘宗坤 主编), 法律出版社, 2013.6, 138~149页.

2014년 7월 2일 현재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38명에 달하고, 410명이 난민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¹¹⁷⁾ 그러나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북한주민의 경우,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유엔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형법 제322조에서는 국경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국경을 몰래 넘은 경우, 사안이 중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보호관리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¹¹⁸⁾ 따라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중국으로 불법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국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17) http://www.21ccom.net/articles/qqsww/qqgc/article_20140724109964.html

118) 김한균·김창준·정군남,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102면.

제 5 장 결 론

한국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으로의 입국을 통하여 중국에서 경제활동 및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를 통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국의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체류 안전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간 인력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된다.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구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들이 발견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입국과 상륙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승무원의 경우에는 C자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류증과 거류증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거류증의 경우에는 불법취업의 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영주자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중 최상위의 자격으로서 체류기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게 되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영구거류(영주)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일정한 공헌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이 주어진 이후에도 최소 누적 체류기간(매년 3개월 이상, 5년 누적체류기간 1년 이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제도 운용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주권 관리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퇴거 이외의 다른 영주권 취소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국적법에서는 중국 국적 취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영구거류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주권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운용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자이민제도 및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제도의 탄력적인 운용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영주권제도 운용 방식과 관리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 투자자, 특히 인접한 중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출입국관리제도라는 주요 정책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실무적인 방향성의 도출이 이후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논문]

- 노재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한국콘텐츠학회, 2014.9
- 김중세, ‘출입국관리법령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42, 한양법학회, 2013.5
- 김중세(JongSeKim), ‘연구논문 :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13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 이학춘, 고준기,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 :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7,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4
-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14(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2
- 이근우(KeunWooLee), ‘보호인가 구금인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처분 비판’, 『비교형사법연구』 14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 엄해옥, ‘중국국적법에 대한回顧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構想 : 중국의 인재유실과 한국의 제한적 복수국적법의 고찰로부터’, 『공법학연구』 13(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2

- 권택성(TaekSungKwon), ‘실무연구(實務研究) : 중국 출입국정책 연구’, 『법조』 60권 5호, 법조협회, 2011
- 구지영,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 칭다오(靑島)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7
- 장서연, 플로어 토론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한 문제점에 대하여”, 『저스티스』 122, 한국법학원, 2011.2
- 권대혁, ‘중국동포 장기불법체류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문제’, 『미드리』 3권 0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0
- 성홍재, ‘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 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한독사회과학회, 2009.3
- 이원식(WonSikLee) · 윤문길(MoonGilYoon), ‘방한 사증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유인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6권 4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08
- 임을출(EulChulLim),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 조건 비교 - 임금,고용 법제(法制)와 실제(實際)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7
- 김범준,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연구: GATS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10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3.

[서 적]

- 김한균 · 김창준 · 정군남,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사증발급편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체류관리편람』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11.
최영렬, 『한·중·일 FTA와 인력이동-MODE4를 중심으로』,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10.11.

[웹사이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 Website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자동출입국심사 SES(www.ses.go.kr)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국 문헌

赵向华, ‘从2012年《出入境管理法》第46条谈我国难民立法中的若干问题’,
『出入境管理法与国际移民』(刘国福·刘宗坤 主编), 法律出版
社, 2013.6.

国务院法制办公室政法司,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学院 编著, 『《中华
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释义』,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2.10.

刘国福, 刘宗坤 主编, 『出入境管理法与国际移民』, 法制出版社,

信春鹰 主编,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 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2. 7.

참 고 문 헌

信春鷹 主编,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释义』, 法律出版社, 2012.9.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行政法室 编著, 『中华人民共和国 出入境管理法 释义及实用指南』,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2. 7.

翁里, 沈敏鹭, ‘改革中国出入境管理体制刍议’, 广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2014年04期, 2014.

张君, 俞 皓, ‘强化出入境管制手段, 夯实出入境服务根基—以新《出入境管理法》实施为背景’,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13年04期, 2013.

李建国, ‘外籍当事人的处置与救济制度研究 -- 《出入境管理法》解读’, 公安研究 2013年 第12期(总第230期), 2013.

黄晟, ‘深化改革我国出入境管理体制—对新出入境管理法的浅见’, 法制博览(中旬刊) 2013年05期, 2013.

별첨 #1)¹⁾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법은 출입국²⁾관리 제도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교류 및 대외개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중국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와 거류의 관리,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심사시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① 국가는 중국국민 출입국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② 중국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중국 국내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반하고 사회의 공공이익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①公安부와 외교부는 각 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해외주재대사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기타 해외주재기관(이하, 해외 주재 사증발급기관이라 함)은 해외에서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업무를 맡는다. 출입국심사기관은 출입국 심사 업무를 맡는다. 현(縣)정부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公安기관 및 출입국관리기구는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 업무를 맡는다.

③公安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公安기관의 출입국관리기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거류 신청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1) 별첨된 중국 출입국관련 법규의 번역은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는다.
2) 역자 주- 원문에서는 출입경(出入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내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대륙(mainland)만을 가리킨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출입경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출입국으로 표시한다.

별첨 #1)

④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에 대해 업무조율을 강화해야 하며, 국무원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업무 역할 분담에 따라 법에 의해 그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제 5 조 국가는 출입국관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부처와 정보를 공유한다.

제 6 조 ① 국가는 대외개방 출입국항에 출입국심사기관을 설치한다.

② 중국국민, 외국인 및 교통기관은 반드시 대외개방 출입국항(港)을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가 승인한 곳에서 출입국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자와 교통기관은 반드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심사기관은 출입국항 제한지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안전과 출입국관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출입국심사기관은 출입국인원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출입국심사기관은 교통기관의 적재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① 공안부 및 외교부는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하는 사람의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② 해외 정부가 중국 국민의 사증발급, 출입국 관리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국정부 역시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입국관리의 책임부서 및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정한 규정 집행을 통해 출입국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중국 국민의 출입국

제 9 조 ① 중국 국민은 출입국 시 법에 따라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사증을 신청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중국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의 사증 혹은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정부와 방문국가 간에 상호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중국 국민이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 하거나 외국선박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선원신분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국민이 중국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을 오갈 경우 법에 따라 통행증을 수령해야 하며 이 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① 중국국민은 출입국 시 출입국심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심사를 받고 규정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출입국 할 수 있다.

② 조건에 부합하는 출입국항의 출입국심사기관은 중국국민의 출입국 전용통로를 마련하는 등 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중국국민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국을 금지한다.

- (1)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심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 (2) 형벌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피의자에 속하는 경우
- (3) 민사재판에 계류(係屬)중인 자로 인민법원으로부터 출국을 금지 당한 경우.
- (4)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불법출국, 체류, 취업으로 인해 기타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 송환되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5) 국가안전 및 이익을 해칠 우려의 소지가 있어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
- (6)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해외에서 정주하는 중국 국민이 귀국하여 정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에서 위

별첨 #1)

입한 기타 해외 주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 혹은 국내에 정주하는 가족이 정주예정지를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외교민사무부서에 신청 할 수 있다.

제14조 해외에 정주하는 중국국민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업무를 처리할 시에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의 출입국

제 1 절 사 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에 사증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①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일반사증으로 구분한다.

외교, 공무 사안으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하며 신분이 특수하여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우사증을 발급한다.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 범위와 발급 방법은 외교부가 정한다.

② 업무에 종사하거나 교육, 친지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유치 등의 비 외교, 공무사유로 인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반사증을 발급한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7조 사증 기재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성명, 성별, 출생일, 입국 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시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하고 면담을 해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때 중국 경내의 단체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초청장을 발급하는 단체나 개인은 초청장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① 인도적 차원으로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초청을 받고 긴급한 사업, 공사, 수리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긴급입국 사유가 있으며 출입국항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데 동의한 유관 주관부처의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이 비준한 사증 업무 처리 가능 출입국항에서 공안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하,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라 함)에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단체관광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신청한 출입국항에서 입국해야 한다.

④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하며, 사증에 명기된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거절한다.

- (1)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송환출국되어 아직도 입국금지 기간 내인 경우
 - (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 전염병에 걸린 경우
 - (3)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가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사증을 신청할 때 날조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 체류기간 소요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6) 사증발급기관이 사증발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 사증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증발급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 #1)

제22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면제할 수 있다.

- (1)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사증면제대상에 속하는 경우
-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 (3) 환승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여행 항공기, 선박,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과해 제3국이나 지역에 가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출입국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구역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 (4) 국무원이 사증면제에 관해 규정한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이 임시 입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임시 입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외국 선원 및 그 동행 가족이 정박 소재도시에 임시 상륙하는 경우
- (2) 이 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인원이 출입국항을 떠나야 하는 경우
- (3) 불가항력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임시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임시입국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입국 수속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당사자가 입국 시에 이용한 교통기관의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 출입국업무 대행업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출입국

제24조 외국인은 입국 시 출입국 심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증서,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증서를 제시하여 심사를 받고 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심사에 통과해야 입국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다.

- (1) 유효한 출입국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출입국 심사를 거부, 도피하는 경우

- (2) 이 법 제21조 제1항 제1번부터 제4번 내 규정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3) 입국 후 소지한 사증에서 명시된 종류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입국 금지를 규정한 기타 상황.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입국승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기관은 귀국하도록 명령하며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 송환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은 송환 대기기간에 지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27조 외국인은 출국 시 출입국 심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국증서를 제시하여 심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절차를 밟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출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국을 금지한다.

- (1) 형벌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람, 형사사건의 피고인 혹은 피의자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당사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송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민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자이므로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3)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4 장 외국인의 체류와 거류

제 1 절 체류와 거류

제29조 ①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증 소지자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② 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체류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연장신청을 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별첨 #1)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사유가 충분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③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①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居留證件)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시 본인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따른 체류자격 종류와 체류기간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한다.

③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며, 비취업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

제31조 ①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거류증 발급을 거부한다.

- (1) 소지한 사증종류가 외국인 거류증 발급 사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이 허위거나 날조된 경우
- (3) 규정에 따라 이에 맞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4)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외국인의 거류증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②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원인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를 거류로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은 구(區)가 포함된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허가를 거쳐 외국인 거류증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거류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거류기간 연장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외국인 거류증의 기재항목에는 소지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② 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의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변경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34조 ①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때 항구 소재도시를 떠나야 하거나 외국인 체류증서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체류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제35조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소지한 일반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의 훼손, 분실, 도난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 발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또는 거류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일반사증 연장, 교체 및 재발급 거부,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 발급거부, 거류기간 연장거부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3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시 체류 또는 거류 사유와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규정한 체류 또는 거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거류증을 소지하여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첨 #1)

②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인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류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① 외국인이 중국 경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업소는 ‘숙박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숙박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숙박업소 밖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에는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또는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가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제40조 ① 중국 경내에서 출생한 외국영아에 대해서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지 또는 거류지의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사망증명서를 소지하여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하고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을 말소시켜야 한다.

제41조 ①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2조 ①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서, 외국전문가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수요와 인력자원 수급상황에 비추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② 국무원 교육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외국 유학생의 학자금제도를 제정하여 외국 유학생의 일자리 범위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3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법 취업에 속한다.

- (1)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서류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 (2) 취업허가 범위를 벗어나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 (3) 외국 유학생이 학자금 마련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일자리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제44조 ①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의 거주지역과 외국기구의 사무실 설치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기한 내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허가 없이 외국인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45조 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외국인의 법을 위반한 입국·거류·취업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

제 2 절 영구거류(永久居留)

제47조 ①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기타 중국 경내 영구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고 공안부의 비준을 받아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의 중국 경내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규정한다.

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증을 지참하여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있다.

제49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부는 중국 경내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별첨 #1)

- (1)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 (2) 추방처분을 받은 경우
- (3) 거짓정보를 날조하여 중국 경내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4)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시간이 규정 기한에 미달한 경우
- (5) 중국 경내에서의 영구거류가 부적합한 기타 상황

제 5 장 교통기관의 입출항심사

제50조 ① 출입국 교통기관이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에는 입출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기관의 입국 심사는 최초로 도착한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며, 교통기관의 출국 심사는 마지막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출국 교통기관은 출국심사를 받은 후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입국 교통기관은 입국 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출입국 심사기관이 규정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 또는 물품의 선적 및 양륙을 할 수 없다.

제51조 교통기관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국 심사기관에 입국 및 출국 교통기관의 출입국항 도착과 출발 시간, 체류장소를 보고하고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교통기관 책임자, 교통기관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심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국 교통기관에 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운 경우 교통기관 책임자는 해당자의 귀환을 책임져야 한다.

제53조 출입국 심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 교통기관에 대하여 감호를 실시한다.

(1) 출국 교통기관은 출국 심사를 시작한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 교통기관은 입국 후부터 입국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 (2) 외국선박이 중국 하천에서 항행하는 기간
- (3) 감호를 실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4조 ① 물품적재 및 적하, 유지보수작업, 견학방문 등 사유로 인해 외국선박의 승선과 하선에 필요한 사람은 출입국 심사기관에 선내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중국선박과 외국선박 또는 외국선박 간에 연결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이나 교통기관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심사기관에 선박 연결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 ①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선박, 항공기는 규정 노선과 항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국 선박, 항공기는 대외개방 출입국항외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진입한 경우에는 즉시 부근의 출입국 심사기관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감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교통기관이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을 금지하며, 이미 출입국항에 진입한 경우에는 귀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입국 한 경우
- (2) 비준을 받지 않고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 (3) 출입국이 금지된 인원을 태운 혐의가 있어 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국가안전, 이익 또는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가 있어 심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출입국 심사기관의 관리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 ② 전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해결된 후 출입국 심사기관은 관련 교통기관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제57조 교통기관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출입국 심사기관에 등록(備案)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종사하는 인원은 소속업체에서 출입국 심사기관의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이 장에서 규정한 현장검문(當場訊問), 계속신문(繼續訊問), 구류조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출국조치는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심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①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현장 신문을 거쳐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속 신문할 수 있다.

- (1) 불법 출입국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
-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및 불법취업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현장검문과 계속신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③ 현(縣)정부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에서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인원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① 외국인이 해당 법률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현장 신문 또는 계속 신문을 진행한 후에도 여전히 혐의가 해소되지 않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류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류조사결정서를 발급하고 24시간 내에 신문하여야 한다. 구류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③ 구류조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상급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의 허가를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조사 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된다.

제61조 ① 외국인인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류 조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 (2) 임신 중이거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수유해야 하는 경우
- (3)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인 경우
- (4) 구류조사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②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인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公安 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지정 구역을 떠날 수 없다. 활동범위 제한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활동범위 제한기간은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62조 ① 외국인인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송환시킬 수 있다.

- (1) 기한 내 출국 처분을 받고도 규정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 (2) 입국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 (3) 불법 거류 및 취업한 기록이 있는 경우
- (4) 해당 법률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이 필요한 경우

② 그 밖의 경외인원이 전 항에서 열거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송환시킬 수 있다.

③ 피송환자는 송환된 날로부터 1~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제63조 구류조사를 받거나 송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류소나 송환장소에 구금시켜야 한다.

제64조 ① 외국인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계속 신문, 구류조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② 그 밖의 경외인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행정재심에 대해서는 전(前)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 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이 금지된 인원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 심사기관에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금지 상황이 해결된 경우, 결정기관은 출국, 입국 금지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출입국 심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첨 #1)

제66조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기관은 출입국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검사대상과 같은 성별의 출입국 심사인원 2명이 진행해야 한다.

제67조 ① 사증,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 등 출입국증서가 훼손·분실·도난당하거나 또는 발급 후 증서 소지자가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기관은 해당 출입국증서를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② 위조·변조·사취되거나 또는 증서 발급기관이 효력을 상실시킨 해당 출입국증서는 무효이다.

③ 공안기관은 전(前) 항의 규정사항에 해당되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출입국증서를 말소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제68조 ① 타인이 불법출입국하는 것을 조직, 운송, 방조하는데 사용된 교통기관 및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공안기관에서 압수한다.

② 검사를 통해 획득한 금지품, 국가 기밀문서·자료 및 출입국관리위반에 사용된 도구는 공안기관에서 압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 출입국사증 진위여부 심사는 사증 발급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공안기관 출입국사무소에서 검정한다.

제 7 장 법률적 책임

제70조 본장의 행정처벌은 본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심사소에서 결정한다. 경고처분 또는 5천위안 이하 과태료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한다.

제71조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1)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 사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한 경우
- (2) 타인의 사증을 도용하여 출입국을 한 경우

(3) 출입국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4) 기타 방법으로 불법 출입국하는 경우

제72조 ①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방조한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때에는 몰수한다.

② 단위(單位)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때에는 몰수하고 이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73조 ① 사증, 체류·거류증 등 출입국 관련 증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 2천위안 이상 5천위안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②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①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초청서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발급한 경우,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초청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한다.

②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모두 몰수하며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하며 그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중국 국민이 출국 후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송환된 경우, 출입국국경심사기관은 그 출입국증서를 몰수하고 출입국증서 발급기관은 송환된 날로부터 6개월에서 3년까지 출입국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76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별첨 #1)

-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경우
- (2)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할 경우.
- (3)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등록, 사망신고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 (4) 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 (5)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국증서를 도용한 경우
- (6) 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지 않은 경우

② 숙박업소가 외국인 숙박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7조 ① 외국인이 허가없이 외국인 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 즉시 퇴거를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한다. 외국인이 불법 확보한 문자기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및 그 밖의 물건은 몰수 또는 폐기하고 이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한다.

② 외국인 및 외국기구가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 이 전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 및 강제이전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고 책임자를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조치한다.

제78조 ①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총액 1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거류 매1일당 5백 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② 보호자나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만 16세 이하 외국인이 불법거주 할 경우, 보호자와 그 밖의 법정 보호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고 1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 ①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의 수용 혹은 은닉, 불법입국·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의 검사회피에 대한 방조 또는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위법하게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

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②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그 밖의 직접책임인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①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경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과태료를 병과한다.

②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총액 5만위안의 과태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을 받은 사람 매1인당 5천 위안, 단위에 대하여는 총액 10만위안의 과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선을 받은 사람 매1인당 5천 위안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③ 외국인을 불법고용할 경우, 총액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 매1인당 1만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제81조 ① 외국인이 체류·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또는 중국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국내에 체류·거류가 부적합할 경우 기한 내 출국을 명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안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公安부는 강제출국을 명할 수 있다.公安부의 결정을 최종결정으로 본다.

③ 강제출국된 외국인은 추방된 날부터 10년 내 재입국이 금지된다.

제82조 ①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명하고 2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1) 출입항 제한구역의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2) 외국인 선원 및 동행가족이 임시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상륙한 경우
- (3) 선내증서 없이 외국 선박에 승·하선한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위반하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하 10일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별첨 #1)

제83조 ① 교통기관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는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허가 없이 출입국 하거나 출입국 항구를 변경할 경우
- (2) 승무원·승객·화물·물품 등 정보를 허위 신고하거나 출입국심사를 거부할 경우
- (3) 출입국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승객, 화물, 물품을 운송할 경우

② 교통기관이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태우고 출입국을 한 경우, 매1인당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통기관 책임자가 합법적인 사전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 교통기관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중국선박이나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외국선박을 연결한 경우
- (2)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과 항로에 따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 (3) 출입국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외개방항 이외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제85조 출입국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 (1) 법률과 행정법을 위반하여 규정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증이나 외국인체류·거주증 등 출입국증서를 발부하는 경우
- (2) 법률과 행정법을 위반하여 규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통기관을 심사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게 한 경우
- (3) 출입국 심사 과정 중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 (4) 법에 근거하여 수취한 비용과 몰수한 벌금이나 위법소득 및 재물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을 경우
- (5) 몰수하거나 압수한 현금·물품 또는 수취한 비용을 착복, 불법점유, 횡령할 경우
- (6)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행위 등 법정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를 할 경우

제86조 출입국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5백 위안 이하 과태료는 출입국 사무소가 현장에서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87조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처벌결정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로 지정은행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고정된 거주지가 없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거나 출입항에서 지정은행에 벌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 칙

제89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출국(出境)’이란 중국내륙에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내륙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에 가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 ② ‘입국(入境)’이란 타국이나 타 지역에서 중국내륙에 오는 것을 말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에서 중국내륙으로 향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
- ③ ‘외국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90조 국무원의 승인 하에, 이웃국가와 국경을 같이 하는 성과 자치구는 중국과 관련국가와 체결한 변경관리협정에 따라 지방 법규,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양국 인접 지역 주민의 왕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 중국 주재 외교대표단기구, 영사관 등 재외공관 직원 및 특권과 사면권을 가진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체류·거류관리에 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92조 외국인이 사증, 체류·거류증 등 출입국증서를 신청하거나 기간연장·변경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증서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3조 본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국관리법’은 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첨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사증 발급과 외국인의 중국 국내 체류·거류 서비스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이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① 외국인 출입국서비스와 관리업무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와 관리의 통합·조율 및 협력을 강화한다.

②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와 관리업무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구역의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와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제 3 조公安부처는 국무원 유관부처와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와 관리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4 조 사증발급 관리와 외국인의 중국 거류 및 체류 관리 업무에서 외교부,公安부 등 국무원 부처는 해당 부처 사이트에서 출입국 사증 신청 접수 장소를 공지하여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률, 법규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2 장 사증의 종류와 발급

제 5 조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등 사증 범위와 발급 방법은 외교부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일반 사증을 발급할 경우, 사증에 한어 표음 문자로 표시한다.

(1) C자 사증은 승무, 항공, 항공운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선박 선원 및 그의 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사에게 발급한다.

별첨 #2)

- (2) D자 사증은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3) F자 사증은 교류, 방문, 시찰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 (4) G자 사증은 중국을 경유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5) J1자 사증은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언론기구의 외국 상주기자에게 발급한다. J2자 사증은 중국에서 단기 취재보도를 하는 외국기자들에게 발급한다.
 - (6) L자 사증은 입국 관광을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단체관광일 경우, 단체 L자 비자를 발급한다.
 - (7) M자 사증은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8) Q1자 사증은 가족방문을 하는 중국 국민의 가족이나 중국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족 및 위탁양육 등 사유로 인해 중국에서 거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Q2자 사증은 중국에서 단기 가족방문을 하는 중국국민의 친척이나 중국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 친척에게 발급한다.
 - (9) R자 사증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와 전문가에게 발급한다.
 - (10) S1자 사증은 장기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업무 유학 등 이유로 인해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 가족 혹은 기타 개인 사무로 인해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S2자 사증은 단기 친척방문을 하거나 업무, 유학 등 사유로 중국 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및 개인업무로 인해 중국에 거류하는 인원에게 발급한다.
 - (11) X1자 사증은 중국 국내에서 장기 유학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X2자 비자는 중국 국내에서 단기 유학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 (12)s Z자 사증은 중국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 제 7 조 ① 외국인인 사증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사증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1) C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외국운수회사의 담보서류 혹은 중국 경내의 유관부처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2) D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영주권신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F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경내에서 초청 측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4) G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타 국가나 지역으로 갈 때 이용하는 환승 비행기, 자동차, 선박의 확정된 날짜, 좌석 티켓을 제출해야 한다.
- (5) J1자 혹은 J2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주재 외국언론기구와 외국 기자 취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거치고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6) L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여행일정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여행일 경우, 여행사 초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7) M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 상업무역 협력사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8) Q1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가족방문을 위한 것이므로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있는 중국국민이나 영주권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초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 등 사유로 거류자격을 신청할 경우 위탁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2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있는 중국 국민이나 영주권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증빙 초청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9) R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정부의 유관부처에서 확인한 외국 고급인재와 전문가 유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10) S1자와 S2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요구에 따라 업무, 유학 등 사유로 중국국내에서 단기간 거류하는 외국인 증빙 초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중국국내에서 개인사무 처리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1) X1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모집업체 증빙 입학통지서와 주관부서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X2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모집업체 증빙 입학통지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2) Z자 사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승인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2)

② 사증발급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신청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① 외국인인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 (1)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려는 경우
- (2) 개인정보, 입국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입국금지, 추방기록이 있는 경우
- (4) 인터뷰가 필요한 기타 상황인 경우

② 해외주재 사증 발급기관의 사증 발급에 중국 내 유관부처와 기업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기업은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사증발급기관에서 사증 발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응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후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발급 기관은 사증발급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 3 장 체류 및 거류 관리

제10조 외국인인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사유의 변경, 입국 편의의 제공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새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단체비자로 입국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단체를 이탈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지방 현(縣)정부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의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국 경내의 외국인인 소지하고 있는 사증이 분실·훼손·도난 당했을 경우, 지체없이 체류지 지방 현(縣)정부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구 출입국관리기구에 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인 사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 또는 체류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본인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사증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외국인인 사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또는 체류증서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7일

을 초과하지 않는 수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인 사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또는 체류증서 신청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수속과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의 여권 혹은 그 밖의 국제여행사증이 사증발급으로 인해 보관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는 수리확인증에 의해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14조 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가 결정한 사증 체류기간 연장은 해당 입국시기에만 적용되며 사증의 입국차수와 입국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류 연장기한은 사증의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증의 체류기한을 연장한 후, 외국인은 사증에서 규정한 사유와 연장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제15조 거류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거류증은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 (2) 유학거류증은 중국 경내에서 장기 유학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 (3) 기자거류증은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언론기구의 외국 상주기자에게 발급한다.
- (4) 친지방문거류증은 가족친지방문을 위해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중국 국민의 가족이나 중국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혹은 양육 위탁 등을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 (5) 개인사무거류증은 장기간 가족친지 방문, 취업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부모·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그 밖의 개인사무로 인해 중국에서 거류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제16조 ① 외국인이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사증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거류 중인 현(縣)정부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하여 지문 등 생체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별첨 #2)

- (1) 취업거류증은 반드시 취업허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에서 필요한 외국고급인력과 전문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유학거류증은 모집업체에서 발급한 유학기한이 명시된 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3) 기자거류증은 유관부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심사 발급한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 (4) 친지방문거류증은 가족친지방문을 위해 중국 경내에 거류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사유와 관련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육위탁 등 원인으로 중국 경내에 거류하는 경우에는 위탁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개인사무거류증은 장기간 가족친지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 방문을 받는 사람의 거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하고, 개인사무의 처리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개인사무처리를 위해 중국 경내에 거류가 필요하다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증명서는 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그 밖의 국제여행증명서 혹은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사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① 외국인의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사무소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외국인이 거류증 연장·변경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자가 진행해야 하는 수속 및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1차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사증이 사증발급을 위해 보관돼 있는 경우, 수리확인증에 의해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제19조 ① 외국인이 사증과 거류증의 기한연장·변경발급·재발급이나 체류사증을 신청할 시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청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 가족,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 (1) 만16세 미만 혹은 만 60세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 (2)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 국내 체류·거류 기록에 이상이 없는 경우
 - (3) 초청한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필요한 비용에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
- ② 외국인의 거류증 신청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고급인재, 긴급히 필요한 전문가 및 전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초청 단위와 개인, 신청자 가족, 관련 서비스기관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제20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인터뷰, 전화심사, 현지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과 초청서 및 증명자료 발부 단위 혹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사증과 거류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을 승인하지 않으며 체류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1) 규정에 따른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신청과정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국내 체류, 거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 (4) 사증 발급 및 거류증의 연장·변경발급·재발급 또는 체류증 발급에 적합하지 않은 그 밖의 경우

제22조 ① 유학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학자금 마련을 위한 노동이나 인턴활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재 학교측의 동의를 거친 후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거류증에 학자금마련을 위한 노동 또는 인턴활동의 장소·기한 등 정보를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유학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거류증에 제22조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마련을 위한 노동 또는 인턴활동을 할 수 없다.

별첨 #2)

제23조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분실·훼손·도난 등의 이유로 유효한 여권, 국제여행사증을 소지하지 못하여 본국 주재 중국유관기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와 거류지에 현(縣)정부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기구에서 출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출입국 사증에 체류지를 명시한 외국인 혹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임시 입국 및 체류지를 제한한 외국인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간주한다.

- (1) 사증, 체류·거류증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 또는 거류할 경우
- (2) 사증 발급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해당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거류사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3) 외국인이 체류·거류 지정 지역을 벗어난 경우
- (4) 기타 불법체류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제26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유학생을 모집하는 단위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縣)정부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고용한 외국인이 이직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 (2) 모집한 유학생이 졸업, 수료, 대학수료, 퇴학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모집 단위를 떠난 경우
- (3) 고용한 외국인이나 모집한 외국인유학생이 출입국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용한 외국인이나 모집한 외국인유학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제27조 금융·교육·의료·통신 등 단체가 외국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외교·공무사유로 체류·거류증을 발급받을 경우 외교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4 장 조사와 송환

제29조 ① 공안기관이 필요에 따라 송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구류조사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외국인을 구류소 또는 송환소로 이송해야 한다.

③ 기상이나 당사자의 건강문제로 인해 송환출국 혹은 강제출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류소나 송환소에 유치시켜야 한다.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활동 범위를 제한한 경우, 활동범위 제한 결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은 지정된 기간 내 공안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결정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거류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된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송환출국할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① 외국인이 송환출국될 경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비용부담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불법 취업의 경우, 불법고용 단위·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에 대한 보증 조치를 한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② 외국인 송환출국은 현(縣)정부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국관리 심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3조 외국이 지정된 기한 내 출국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기관은 출입국사증을 말소 또는 몰수하고 그를 위해 체류수속을 보완 처리 하여야 하며 출국기한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출국기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① 외국인이 다음의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기관은 당사자가 소지한 사증, 체류·거류증 등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1) 사증과 거류, 체류신고증이 훼손·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2) 외국인을 기한부 출국, 송환 또는 추방시킬 때에 그 사증, 체류 또는 거류사증을 몰수·말소하지 않은 경우

(3) 기존 거류사유를 변경한 이후 지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

별첨 #2)

리기구에 신고하지 않았고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증·거류증의 발급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발급기관이 사증과 체류·거류증을 법률에 따라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효력상실을 선언하거나 또는 공고하여 효력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제35조 ① 외국인인 소지한 사증이나 체류·거류증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말소하거나 몰수한다.

(1) 사증 발급기관이 효력상실을 선언하였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을 경우

(2) 위조, 변조, 사기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불법 취득했을 경우

(3) 소지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송환·추방이 결정된 경우

② 말소나 몰수 결정을 내린 기관은 반드시 발급기관에 즉각 알려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36조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사증의 입국차수’는 사증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2) ‘사증의 입국 유효기간’은 사증 소지자가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발급기관이 명시하지 않는 한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유효하고 유효기한 만료 당일의 베이징 시간 24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사증의 체류기한’은 사증 소지자가 매회 입국 후 허가된 체류기간을 말하며 입국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4) ‘단기’는 중국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180일 포함) 것을 말한다.

(5) ‘장기’, ‘상주’는 중국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의 심시기한과 수리확인유효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 해외 주재 사증발급 기관은 외교부 승인을 받은 후 현지 유관부처에 외국인 사증 신청의 서류접수, 입력, 자문 등의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사증의 양식은 외교부와 공안부가 공동으로 정한다. 거류·체류증의 양식은 공안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에서 승인하고,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에서 공표하였으며, 1994년 7월 13일 및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 세칙’은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